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22년 8월

박사학위 논문

자치경찰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실증적 연구

-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 경찰관의 인식을 중심으로 -

조선대학교 대학원

공공행정학과

장 명 본

자치경찰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실증적 연구

-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 경찰관의 인식을 중심으로-

An Empirical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Local Police System

2022년 8월 26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공공행정학과

장 명 본

자치경찰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실증적 연구

-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 경찰관의 인식을 중심으로 -

지도교수 이 계 만

이 논문을 행정학 박사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22년 4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공공행정학과

장 명 본

장 명 본의 박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강인호	
위원	창원대학교 교수	이희근	
위원	세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홍주	
위원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성호	
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이계만	

2022년 6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목 차

(ABSTRACT)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목적	1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4

제2장 이론적 논의

제1절 자치경찰제의 의의	7
1. 자치경찰제의 개념	7
2. 자치경찰제의 분류	8
1) 자치경찰의 조직	8
2) 자치경찰의 인사	9
3) 자치경찰 사무	9
4) 자치경찰사무의 처리방법	10
5) 자치경찰의 이념	10
3. 자치경찰제의 도입 필요성	11
1) 지방분권의 완결	11
2) 지방자치단체의 종합행정 실현	11
3) 민생 기초질서 확립	12
4) 체감치안 개선	12
4. 자치경찰제의 도입 논의	13
제2절 자치경찰제의 모형	14

1. 지방정부 유형과 자치경찰 모형	14
1) 일반지방자치단체 모형	14
2) 특별지방자치단체 모형	15
3) 관선지방자치단체 모형	15
4) 특별지방행정기관 모형	16
2. 국가경찰과의 관계에서 본 자치경찰 모형	16
1) 자치경찰과 국가경찰 간의 권한과 권력관계로 본 분류	16
2) 조직 형태에 의한 분류	18
제3절 선진국 자치경찰제도 사례분석	19
1. 미국 자치경찰제	20
1) 조 직	20
2) 인 사	21
3) 사 무	21
4) 재 정	22
2. 영국 자치경찰제	22
1) 조 직	22
2) 인 사	23
3) 사 무	24
4) 재 정	24
3. 일본 자치경찰제	24
1) 조 직	24
2) 인 사	26
3) 사 무	27
4) 재 정	28
4. 선진국 자치경찰제의 시사점	29

제4절 자치경찰제의 선행연구 검토	30
1. 자치경찰제의 조직	30
1) 자치경찰위원회 위원구성의 문제	30
2) 국가경찰기관 일원화 및 자치경찰기관 조직구성 문제	32
3) 지역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한 자치경찰제 조직구성 문제	33
2. 자치경찰제의 인사	34
1) 자치경찰제의 책임자로서 시도지사의 인사권 부재	34
2)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인사권 강화	35
3) 경정이하의 자치경찰임용권 부재 문제	36
4)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기구에 전문인력 배치 필요	36
3. 자치경찰제의 사무	36
4. 자치경찰제의 재정	37
5. 자치경찰제 선행연구의 종합적 검토	38
제5절 자치경찰제의 전개과정	42
1. 김대중 정부	42
2. 노무현 정부	43
3. 이명박 정부	45
4. 박근혜 정부	46
5. 문재인 정부	47
1) 도입 논의	47
2) 사무분야 및 수행	48
3) 조직 및 인사	49
4) 재정 지원 및 예산 등	51

제3장 연구 설계

제1절 연구모형의 설정	52
1. 연구모형의 설정	52
2. 분석 항목의 설정	54
1) 제도 : 자치경찰제의 도입	54
2) 행위자 :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반응	56
3) 성과 및 결과 : 자치경찰제의 성과 및 만족도	57
4) 환류 : 자치경찰제 발전방향	58
제2절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60
1.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60
2.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집단유형 분류	61

제4장 분석결과 및 논의

제1절 기초분석결과	65
1. 제도 : 자치경찰제도 관련 분석결과	65
2. 행위자 : 자치경찰제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반응 분석결과 ...	69
3. 성과 : 자치경찰제도의 성과 및 만족도 관련 분석결과	74
4. 환류 : 자치경찰제도 발전방향 관련 분석결과	76
제2절 집단유형별 인식 특성에 대한 분석	81
1. 집단유형별 인식 특성	81
2. 분석항목간 상관성 분석	112

제5장 연구결과 요약 및 정책대안

제1절 연구결과 요약	115
제2절 정책제안	118
제3절 연구한계	121
참고문헌	122
부록 : 설문지	129

표 목차

<표 2-1> 일본 도쿄도 경시청 소속 경찰서 각 부서별 업무	28
<표 2-2> 선진국 자치경찰제의 비교	30
<표 2-3> 자치경찰제의 조직관련 선행연구	39
<표 2-4> 자치경찰제의 인사관련 선행연구	40
<표 2-5> 자치경찰제의 사무관련 선행연구	41
<표 2-6> 자치경찰제의 재정관련 선행연구	41
<표 2-7> 김대중 정부의 자치경찰제(안)	42
<표 2-8> 노무현 정부의 자치경찰제(안)	44
<표 2-9> 이명박 정부의 자치경찰제(안)	45
<표 2-10> 박근혜 정부의 자치경찰제(안)	46
<표 2-11> 경찰법상 자치경찰의 사무분야	48
<표 2-12> 자치경찰사무 중 수사분야	49
<표 3-1> 구제도주의와 신제도주의 비교	53
<표 3-2> 자치경찰제 조직·인사제도	54
<표 3-3> 자치경찰제 사무수준 및 세부사무별 인식	55
<표 3-4>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인식 항목	56
<표 3-5>, <표 3-5> 자치경찰제 조직·인사제도에 대한 경찰공무원 반응	57
<표 3-7> 자치경찰제의 성과 및 만족도	58
<표 3-8> 자치경찰제도 정착의 장애요인	59
<표 3-9> 자치경찰제도 정착의 필요요소	59
<표 3-10> 자치경찰제도 발전방향	60
<표 3-11> 설문지 배포 및 회수율	61
<표 3-12> 설문조사 지역 및 조직유형 개요	61
<표 3-13> 자치경찰제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분석방법	62
<표 3-14>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63
<표 3-15> 집단유형 분류	64
<표 4-1>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65
<표 4-2> 경찰공무원에 대한 인사권한	66
<표 4-3> 경찰조직에 대한 통제	66
<표 4-4> 자치경찰 사무수준	67
<표 4-5> 자치경찰 주요사무별 중요도	68
<표 4-6> 자치경찰 주요사무(생활안전)	68
<표 4-7> 자치경찰 주요사무(교통)	69

<표 4-8> 자치경찰 주요사무(약자보호)	69
<표 4-9> 자치경찰 운영에 대한 전반적 인식(조직 관점)	70
<표 4-10> 자치경찰 운영에 대한 전반적 인식(대외적 관계)	71
<표 4-11> 자치경찰 운영에 대한 전반적 인식(치안서비스)	72
<표 4-12> 자치경찰 조직·인사제도에 대한 인식(조직 관점)	73
<표 4-13> 자치경찰 조직·인사제도에 대한 인식(대외적 관계)	73
<표 4-14> 자치경찰 조직·인사제도에 대한 인식(치안서비스)	74
<표 4-15> 자치경찰제도 성과와 만족도(조직 관점)	74
<표 4-16> 자치경찰제도 성과와 만족도(대외적 관계)	75
<표 4-17> 자치경찰제도 성과와 만족도(치안서비스)	76
<표 4-18> 자치경찰제도 정착의 장애요인(조직 관점)	77
<표 4-19> 자치경찰제 정착의 장애요인(대외적 관계)	77
<표 4-20> 자치경찰제 정착의 필요요소(조직 관점)	78
<표 4-21> 자치경찰제 정착의 필요요소(대외적 관계)	79
<표 4-22> 자치경찰제 발전방향(조직 관점)	80
<표 4-23> 자치경찰제 발전방향(대외적 관계)	80
<표 4-24> 집단유형별 자치경찰위원회 조직에 대한 인식 차이분석	81
<표 4-25> 집단유형별 경찰공무원에 대한 인사권한에 대한 인식 차이분석	82
<표 4-26> 집단유형별 경찰조직에 대한 통제에 대한 인식 차이분석	83
<표 4-27> 집단유형별 자치경찰 사무수준 차이분석	84
<표 4-28> 집단유형별 자치경찰 주요사무별 중요도 차이분석	85
<표 4-29> 집단유형별 자치경찰 주요사무간 상대적 중요도 차이분석	86
<표 4-30> 집단유형별 자치경찰 주요사무(생활안전) 차이분석	87
<표 4-31> 집단유형별 자치경찰 주요사무(교통) 차이분석	89
<표 4-32> 집단유형별 자치경찰 주요사무(약자보호) 차이분석	89
<표 4-33> 집단유형별 자치경찰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조직 관점) 차이분석 ..	90
<표 4-34> 집단유형별 자치경찰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대외적 관계) 차이분석 ..	92
<표 4-35> 집단유형별 자치경찰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치안서비스) 차이분석 ·	94
<표 4-36> 집단유형별 자치경찰 조직·인사제도(조직 관점) 차이분석	96
<표 4-37> 집단유형별 자치경찰 조직·인사제도(대외적 관계) 차이분석	97
<표 4-38> 집단유형별 자치경찰 조직·인사제도(치안서비스) 차이분석	98
<표 4-39> 집단유형별 자치경찰제도 성과와 만족도(조직 관점) 차이분석	99
<표 4-40> 집단유형별 자치경찰제도 성과와 만족도(대외적 관계) 차이분석	100
<표 4-41> 집단유형별 자치경찰제도 성과와 만족도(치안서비스) 차이분석	102
<표 4-42> 집단유형별 자치경찰제도 정착의 장애요인(조직 관점) 차이분석	104
<표 4-43> 집단유형별 자치경찰제도 정착의 장애요인(대외적 관계) 차이분석	105

<표 4-44> 집단유형별 성공적인 자치경찰제도 정착의 가장 큰 장애요인 차이분석 106
 <표 4-45> 집단유형별 자치경찰제도 정착의 필요요소(조직 관점) 차이분석 107
 <표 4-46> 집단유형별 자치경찰제도 정착의 필요요소(대외적 관계) 차이분석 108
 <표 4-47> 집단유형별 자치경찰제도 발전방향(조직 관점) 차이분석 110
 <표 4-48> 집단유형별 자치경찰제도 발전방향(대외적 관계) 차이분석 111
 <표 4-49> 집단유형별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중점 수행활동 차이분석 112
 <표 4-50> “자치경찰제도”와 “자치경찰 운영 및 조직·인사제도에 대한 인식”간 관계 ... 113
 <표 4-51> “성과 및 만족도”와 “자치경찰 운영 및 조직·인사제도에 대한 인식”간 관계 ... 114
 <표 4-52> “자치경찰제도 성과 및 만족”과 “자치경찰제도 발전방향”간 관계 114

그림 목차

<그림 2-1> 미국의 자치경찰 조직도	20
<그림 2-2> 영국 자치경찰의 4원체제	23
<그림 2-3> 일본의 자치경찰제 조직	25
<그림 2-4> 일본의 도도부현 공안위원회 기능 및 사무	25
<그림 2-5> 사이타마현 공안위원회 구성 및 상호관계	27
<그림 2-6>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지휘체계도	33
<그림 2-7> 자치경찰의 특성과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경찰서 조직변화(안)	34
<그림 2-8>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 조직체계	49
<그림 2-9> 경찰법상의 경찰조직	50
<그림 3-1> 본 연구의 분석모형	53

ABSTRACT

An Empirical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Local Police System

Jang, Myeong Bon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craft alternative policies to develop and establish local police system which took effect since July 1, 2021. Based on data collected from survey, the research aims to analyze police officers' recognition on actual local police system management and explore the best alternative.

The main frame in this research is to subdivide into organizational perspective, police-public relations, and public peace service to identify the operation of local police system and analyze respondents' opinions by each analysis area to come up with alternative policies.

First off, the organizational perspective means internal relationship among the city and provinces' policy agencies and police stations, especially focusing on local police committee and the organization, personnel administration, finances, office works make part of it. Police-public relations refer to relationship among national police, political system, local residents as they're engaged with police organization publicly after the introduction of local police system. Public peace service includes public safety service which is closely related to local residents' lives under the local police system, traffic rules, traffic safety facility, transport service and traffic safety education, order maintenance for the large outdoor gatherings in the community, safety management, guard, and protection for vulnerable and disadvantaged such as women and teenagers.

Based on three analysis areas, this paper analyzes current recognition of

police officers on the local police system and suggests direction for future policy.

The police officers' recognition on the local police system is as follows.

First, many respondents recognize the city and provinces' local police committees have become authority from the organizational perspective and it turns out they don't have high preference in local police works. However, they recognize it's necessary to be financially supported by local government. But they have negative views of local police organization structure and operation in general. The predominance of this view is attributable to the system adoption in its early stage and it's required to establish active negotiation system for participation agents to execute the system.

Second, it's expected to see decentralization of police authority, improvement in the political neutrality in the police system, democratic control in the police administration, and higher police transparency as the local police system has been adopted. But it turns out police officers do not recognize such expected effect. And local police committee should make active efforts to promote local police system and develop policies to settle problems. In addition, the local police committee should set up communication system with police administrative services officers in a positive manner.

Third, the public peace service-related issues including eradication of local corruption, citizen's trust in the police and differentiation with national police service have been requested to the police continuously so far. It's expected to fix such problems after the local police system was adopted, but there is no significant change in the police officers' recognition.

Fourth, the police officers recognize that all obstacle factors in settling the local police system as suggested from the organizational perspective actually work. As the police officers have negative views on various issues arising from the public security administration such as overlapping command system and confusion, personnel administration issues in promotion and transfer, and confusion in work boundary caused by unclear task allotment between local and national police works, it's necessary to find ways of overcoming those issues

and ensuring efficient management.

Fifth, the response tendency in the police–public relations, especially related to improvement in communication with local residents and higher police transparency is negative. Also, the respondents are more likely to have negative views on the public peace service including improvement in the public peace service for local community, providing local public order policy, and integrated services connected to the local administration.

When it comes to limitation in this research, the survey was conducted targeting police officers in charge of autonomous affairs and public administrators only without considering citizens’ recognition although it’s been a year since the local police system was executed because of apparently insufficient recognition on the local police system among the general public who are subject to the public peace service, although the local police system was fully implemented since July 1, 2021—but the frame of local police system was actually not publicized enough and properly designed. Thus, this research has clear limitation as it only targets public peace service providers without taking the customers into account. Therefore, it’s required to carry out research on the recognition among the general public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local police system in future.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목적

2020년 12월 9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1990년대 지방자치제도의 실시와 더불어 지방자치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의 측면이 강조되면서 자치경찰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자치경찰제는 주민의 안전과 질서유지 등 경찰 본래의 기능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해결하는 치안행정의 지방분권화를 통해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그 동안 자치경찰제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모델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해 2005년에 「자치경찰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지만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되었고, 2008년에는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자치경찰제도의 도입을 명시하고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제시하는 등 도입 논의가 활발하였으나, 자치경찰의 설치단위, 국가경찰과의 권한배분, 자치경찰의 재원마련 등 자치경찰제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모델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해 도입이 지연되어왔다.

2020년 12월 9일 법안의 국회 통과로 2021년 6월 말까지 시범 실시를 거쳐 7월 1일부터 정식으로 자치경찰제도가 운영되었다. 그러나 ‘국가재정의 어려움’을 이유로 별도의 자치경찰조직을 설치함이 없이 기존 국가경찰조직에서 국가사무와 자치사무를 분리하면서 자치경찰은 소속은 그대로 둔 채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하는 ‘일원화 모델’을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일원화 모델은 코로나 19로 인한 재정적 문제, 일반시민에 대한 경찰활동의 혼란 우려 등을 고려한 방안이다(황문규, 2020b).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개혁 작업을 마무리해야 하는 당시 문제인 정부와 여당으로서는 그야말로 교육지책의 안이었으며, 그러한 상황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것이 전제가 되는 상황이라면 최선의 대안으로 평가될 수도 있다(박준희, 2020).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자치경찰제는 시행을 위한 법안 통과를 앞두고 반발이 많았다. 우선 일선 경찰관들은 경찰공무원 직장협의회(이하 직협)를 중심으로 전면 폐기할 것을 주장하였다.¹⁾ 일선 경찰관들이 가장 불만을 표시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전가로 인한 긴급신고 대응역량 약화 우려(34.1%), 위원회의 과도한 권한 및 중립성 훼손(22.5%), 신분·인사 불이익 방지 및 처우개선(14.7%), 지휘체계 혼선 등 도입모델 자체의 문제(11.02%) 등으로 집계되었다.²⁾ 학계와 시민단체에서도 비판이 많았다. ‘기존 경찰사무(호박)에 선만 그어 자치사무(수박)라고 이름붙인 것에 불과하다’³⁾라든지, ‘민주적 통제장치가 미비하다’⁴⁾라든지, ‘자치경찰(사무)은 있으나 자치경찰관은 없는 모델’(황문규, 2020a)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아울러 일반 국민들도 자치경찰제에 대해 이해도가 높지 않았다.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해 국민의 절반만이 찬성을 하고, 나머지 절반은 반대하거나 모른다고 응답하였다(박준희 외, 2020). 다른 논거로 반대하는 주장으로서 박준희 외(2020)는 일곱 가지 논거를 들어 자치경찰제 도입을 아예 반대하기도 하였다. 즉 형사사법체계로서 경찰활동의 특징, 정치체계와의 정합성 문제와 주요국 동향, 자치경찰 간 경쟁의 제한성, 균질·표준화된 치안과 신뢰·형평성 문제, 부패와 정치적 중립 문제, 기존 지방행정의 문제(특별사법경찰 및 소방 사례 등), 쏠림 현상과 경찰력 약화 가능성 등이 그 논거이다. 사실 국내 치안 상황은 2008년 이후 총 범죄 발생 건수와 발생 비율 모두 감소하는 추세이며, 일반인 대상 범죄 두려움 조사 결과도 계속 낮아지는 추세이다(김민영 외, 2018). 요컨대 범죄문제가 국가경찰에 의해 안정적으로 관리되어 오고 있으며, 한국의 치안관리능력은 성공적이라는 평가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치경찰제가 시행된 것이다.

자치경찰제도의 도입은 정부의 치안정책과 관련한 중대한 변화로써 비록 국정시책이며 정치적 결단에 의한 제도 도입이라 하더라도 이와 관련한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는 국민과 경찰관이다. 자치경찰제도 도입 목적은 대국민 치안서비스를 개선하거나, 권력 분산에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국민들에게 현재와 같은 수준의

1) 부산경찰 직장협의회 “자치경찰제 시행반대” (2020.08.18. 뉴스시스), 경찰 직장협의회 “자치경찰제 전환 법안 반대” (2020. 08.19., KBS), 경기남부경찰직장협의회 “자치경찰법 폐지하라” 촉구 (2020. 09.22., 한국일보), 경남경찰직장협의회 “자치경찰제 전면 수정해야” (2020.09.03., 경남도민일보), 강원경찰 직장협의회 “자치경찰제 줄속시행 철회” (2020.09.24., 춘천MBC), ‘일원화 자치경찰제’ 공청회, “최선의 대안”vs“폐기해야” (2020.11.16., 연합뉴스).
 2) 경찰청, 「자치경찰제 도입 관련 설명자료」 (2020.11) 중 현장의견 수렴 결과. 경찰청은 전국 경찰관서 내 직협을 대상으로(직협 미설치 관서는 경무·기획부서 대상으로) 8.28~9.1 8일간 의견을 조사함
 3) 새 자치경찰법안, 디테일 잘 살려야(2020.08.06., 세계일보, 이상훈 대전대 교수 기고문)
 4)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는 “민주화시대 권력기관 개혁은 견제와 균형 속 국민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국민과 함께 운영하는 기관을 만드는 것이 과제지만, 이번 개정안은 정말 실망스럽다”며 “경찰은 수사종결권도 확보하게 되고 수사권까지 가져갔지만 경찰 권력을 감시할 수 있는 어떤 제도 마련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치안서비스를 제공하여 민생치안에도 긍정적인 기여를 해야 한다. 그리고 자치경찰 제도는 도입 방식에 따라 경찰관들의 업무 범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며, 국가 직 소속이지만 자치경찰 사무를 위해 파견 또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무지 변경 등 인사 시스템의 변화 등 근로조건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자치경찰제도는 일선 경찰관들의 입직이나 입직 이후의 직장생활을 계획하는데 불확실성을 발생시킬 수 있고, 치안정책 전달체계의 말단에서 정책과 현장의 상호작용을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있으므로 이들의 자치경찰제도 인식이 그대로 대국민 치안서비스로 이어진다고 보면 효과적인 자치경찰제도의 운영을 위해서는 일선 경찰관들이 자치경찰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가지고 있는 인식을 확인하고, 이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자치경찰제도의 도입 이전에 조사한 선행 연구에 따르면 자치경찰제 도입 관련 설문에서 응답한 경찰관들의 인식은 매우 부정적이었다. 응답자의 계급별, 업무별, 근무기관별, 도시지역 또는 중소 郡 등 근무지역별 차이 없이 과반수 이상(60.9%)의 응답자들이 제도의 도입 형태를 막론하고 자치경찰제도의 ‘전국적 도입’을 반대하였고, 특히 자치경찰사무를 맡게 되는 생활안전·여성청소년계에 근무하는 경찰관들 중 70%가 자치경찰제도의 도입을 반대하였다. 또한 이들 중 최일선에 해당하는 경사 이하 계급의 경찰관들이 경위 이상 계급보다 자치경찰제도 도입에 반대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박준희 외, 2020). 자치경찰제도 도입을 전제로 하면 기초자치단체수준에서 도입되어야 한다는 의견보다 광역자치단체 수준에서 자치경찰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고, 자치경찰에 대한 국가경찰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평균적으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완전한 분리와 자치경찰 사무 예산에 대한 지자체 수립의 필요성을 높게 생각하는 경향을 보였다.

현행 시행되고 있는 자치경찰제도는 도입 이전부터 일선 경찰관들의 많은 우려 속에 시범 실시를 거쳐 2021년 7월부터 정식 시행되었지만, 제도의 이해관계자인 국민과 경찰관의 의견이 다각적으로 검토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우선 법안 통과 이전부터 전국지방분권협의회 등이 정부의 일원화 법안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반발하였고,⁵⁾ 사무 혼선·지방자치단체 업무 이관 등에 대하여 우려하는 일선 경찰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무 분장을 명확히 하고, 시도경찰자치위원회의 지휘·감독을 체계화하는 기준을 마련해 달라는 일선 경찰관들의 의견수렴 과

5) “전국지방분권협의회 공동성명, 자치경찰제 일원화는 자치분권 역행 반발”, 2020.11.26. 프레스존.

정이 미비하여 일선 경찰관들도 정부안에 대하여 반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일선 경찰관들의 우려사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경찰에 대한 지휘 감독으로 업무혼선·사무기피·업무과중 등에 높은 수준의 우려를 나타냈는데, 특히 국가와 수사, 자치경찰 간 협조부족 또는 상호 사무의 기피,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도지사의 자치경찰에 대한 개입 증가, 지방자치단체 간 경찰서비스의 불균형 야기, 같은 부서/과 안에서도 자치경찰 사무와 국가경찰 사무가 분리됨에 따라 업무 혼선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치경찰제에 대한 경찰관서장들의 인식에서는 국정과제인 자치경찰제 도입의 필요성은 대체로 공감하는 편이었고, 지역 맞춤형·주민 지향적 치안서비스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기대했던 이원화 모델이 아닌 일원화 모델이 시행됨에 따라 우려를 나타냈다. 이원화 모델을 통해 승진과 계급정년 폐지 등으로 인사적체 해소에 대한 기대감이 컸던 반면, 일원화 모델로 변경되면서 신분변동이나 근무여건 개선 없이 일선 현장의 업무만 과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았다. 또한 시·도지사 및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정치적 중립과 개입에 대한 우려가 가장 높았고, 지휘·감독권한에 따른 사건 지휘, 신고 체계 등 영향에 대해서도 상당한 수준에서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를 근거로 자치경찰제 본격 시행에 앞서 일원화 모델 도입에 따른 일선 경찰관들의 인식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대적 배경 하에서 지난 1년 동안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면서 경찰공무원들이 겪고 있는 고충은 무엇인지에 대한 원인을 진단하고, 자치경찰제의 운영과 관련한 조직, 인사, 사무 등에 대해서 경찰공무원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자치경찰 사무 가운데 어떠한 사무가 지역주민을 위한 사무인가에 대해 논의와 자치경찰 시행 이후 발생하고 있는 현장의 애로 사항과 문제점을 진단하여 향후 발전적인 자치경찰제의 운영을 위한 정책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 연구범위

본 연구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자치경찰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위한 정책 대안을 도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설문조사를 통해 획득된 자료를 토

대로 실제 자치경찰제에 참여하는 경찰공무원들이 자치경찰제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여 최적의 정책제언을 탐색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래서 신제도주의적 관점에서 제도(자치경찰제 조직·인사제도)가 행위자(조직·인사제도 변화에 따른 자치경찰 공무원의 반응)에 영향을 미치며, 행위자는 성과(조직·인사제도의 성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며, 자치경찰제 조직·인사제도의 성과는 자치경찰 조직·인사제도의 개편방향으로 환류(feed-back)한다고 설정하였다. 또한, 신제도주의 관점의 제도의 전개과정을 각 요소들의 조직 관점, 대외적인 관계, 치안서비스로 세분화해, 각 분석영역별로 응답자의 의견을 분석하여 정책제언을 제시했다.

조직 관점은 자치경찰위원회를 중심으로 시·도경찰청과 일선 경찰서의 내부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조직, 인사, 재정, 사무 등을 살펴보았다. 대외적 관계는 자치경찰제의 도입에 따른 경찰조직과 대외적인 관계에 있는 국가경찰, 정치조직, 지역주민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치안서비스는 자치경찰제 하에서 수행하고 있는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활안전서비스, 교통법규, 교통안전시설, 교통안전교육 등 교통서비스, 지역 내 다중운집행사 관련 혼잡질서유지 및 안전관리 등 경비, 여성,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보호서비스 등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제시된 3개의 분석영역을 중심으로 경찰공무원의 자치경찰제도와 관련한 현재 인식이 어떠한가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자치경찰제 도입배경과 도입과정, 이론 및 제도 비교분석, 해외사례, 입법 과정 등을 선행 연구를 통해 고찰하였다. 그리고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자치사무를 담당하는 행정공무원, 파견 경찰관 및 일선 경찰조직에서 자치경찰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들의 자치경찰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고,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 치안 현장에서 체감하는 자치경찰제 운영 실태와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향후 보완해야 할 정책 시사점들을 도출하였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문헌조사와 실증분석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우선 문헌조사를 통해 자치경찰제도와 관련한 선행연구와 제도들을 검토하였다. 선행연구 검토를 통한 이론적 논의를 통해 연구모형을 도출하였으며, 도출된 모형의 검증을 위해 설문자료를 활용하여 실증적 검증을 하였다. 본 연구의 모형분석을 위한 설문조사 조사지역은 광주

광역시(광주자치경찰위원회, 광주경찰청, 동부/북부/서부 경찰서), 전라북도(전라북도자치경찰위원회, 전라북도경찰청, 전주완산/정읍/부안 경찰서), 전라남도(전라남도자치경찰위원회, 전라남도경찰청, 광양/영광 경찰서)의 자치경찰위원회, 시·도 경찰청, 일선 경찰서 등을 대상으로 하였다. 각 지역별로 250부씩 총 750부를 우편 및 이메일(e-mail)로 발송하여 자기 기입 후 회수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수행하였다. 설문조사 기간은 2022년 3월 28일부터 4월 4일까지 8일간 진행되었으며, 총 75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605부(80.7%)가 회수되었으나, 설문응답의 신뢰성에 의문이 되는 7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597부를 분석에 활용했다. 최종으로 채택된 총 597부의 설문지를 활용하여 SPSS 21.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에 이용한 통계기법은 기술 통계분석, 교차분석,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활용하였다.

제2장 이론적 논의

제1절 자치경찰제의 의의

1. 자치경찰제의 개념

그리스어 Polis에 어원을 두고 있는 경찰(Police)이라는 용어는 16세기 왕의 칙령으로 공공질서를 유지한다는 의미에서 유래되었다. 이 시기는 아직 경찰과 행정의 기능이 미분화된 시기였다. 경찰개념은 17~18세기 행정, 외교, 군사, 사법 등에서 분리되어, 국가 및 지역 안의 사회질서, 사회의 공공복지 등 내무행정 전반을 총괄하는 의미로 전환되었다. 당시 법치 국가의 개념이 등장하면서 경찰의 개념은 치안 분야로 한정되었다. 현대 국가로 넘어오면서 경찰개념은 행정권으로는 법의 준수, 공공질서의 유지, 사법권으로는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지휘, 감독, 감시체계에서 사법경찰의 임무를 수행하는 공적 기관 전체를 의미하고 있다(안영훈·강기홍, 2008). 따라서 경찰의 개념은 국가마다 역사·사회·시대적 배경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으며, 그 개념을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어렵다. 즉 전반적으로 그 의미가 점차 넓게 해석되고 있다. 자치경찰제 역시 경찰개념의 다양화로 인해 그 개념적 논의가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다.

자치경찰의 개념은 학자들에 따라서 매우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개념을 정의하게 되면 자치경찰은 더욱더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다(표창원, 2005: 10). 자치경찰에 대한 개념은 크게 지방자치의 관점에서 논의되고 있는 견해와 경찰의 기능을 중심으로 경찰 자치적 관점에서 정의되는 견해로 양분될 수 있다. 전자의 관점에서 자치경찰제를 정의하는 학자들은 대체로 지방자치 혹은 행정학을 전공하는 학자들의 주장이다(양영철, 2021: 43). 대표적으로 안영훈(2007: 5)은 “자치경찰(municipal police, city police)이란 주민의 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지방정부 의회 또는 지방정부 장(長)의 책임 하에 자율적인 자치경찰 조직·인사·재정 수단을 갖고 관할구역 내에서 주민을 위한 공공(경찰)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 개념은 자율적인 행정행위를 통하여 지역주민에게 생활 중심의 경찰 서비스를 확보하고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 박진현(2000: 319)은 “자치경찰은 치안행정 업적에 단체장이 책임지며, 선거 때 주민의 필요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게 치안행정을 펼칠 수 있는 지방자치 이념의 진정한 구현을 위한 제도”

로 정의하여 자치경찰이 자치단체의 조직임을 강조하고 있다. 한건우(1999: 69)는 “지방자치경찰이란 일정한 지역 내의 경찰작용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찰”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경찰 기능을 중심으로 경찰 자치적 관점에서 자치경찰 개념을 정의하는 학자들은 다음과 같다. 이황우(1999: 5)는 “자치경찰은 지방분권의 정치사상에 따라 경찰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 하에 지역 주민의 의사에 기하여 치안 업무를 자주적으로 수행하는 제도”라고 정의하고 있다. 최종술 교수도 이와 비슷하게 정의하고 있다. 최종술(1999: 158)은 “자치경찰은 중앙정부로부터 부당한 간섭과 통제를 방지하여 자주성을 확보하고, 자치단체장으로부터의 정치적 이용 가능성을 배제하여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장으로부터 분리된 독립기관이어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2. 자치경찰제의 분류

이처럼 자치경찰제 개념에 대한 시각의 차이는 자치경찰 요소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양영철, 2021: 44-47).

1) 자치경찰의 조직

지방자치 관점에서 자치경찰을 보는 학자(이하 “전자”라고 한다)들은 자치경찰조직을 지방자치단체의 하나의 조직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학자들은 자치경찰조직은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기관이나 직속기관의 형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자치경찰을 경찰기능 가운데 하나의 유형으로 인식하는 학자(이하 “후자”라 한다)들은 자치경찰이 경찰조직의 하나이기 때문에, 자치경찰조직 운영에 지방자치단체의 형식적 관여를 인정하는 것일 뿐 그 조직은 국가경찰과 연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참여정부 당시 주장되었던 것처럼 자치경찰은 이원적 조직이 아닌, 국가경찰조직의 연장선상에서 일원적 조직이 될 수밖에 없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치경찰조직은 독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최기문, 2000: 32). 조직 형태와 관련한 학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주민 의사에 기초하고, 지방분권의 이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여 독자적으로 경찰조직을 설치·유지·운영하며, 이를 책임지는 제도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중앙정부의 통일적인 지휘체계가 아닌 지역주민에 의해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주민의 편의와 의사 등을 고려해 지역주민을 위해 펼치는 경찰제도라고 할 수 있다. 즉 자치경찰제를 기능의 배분과 분권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김홍주, 2019). 그리고 운영 주체는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로 그 주체가 기초단위, 광역단위 여부에 따라 ‘기초단위의 자치경찰제, 혹은 광역단위의 자치경찰제’로 구분되며, 또한 권한과 사무를 어느 정도 부여할 것인지에 따라 자치경찰제의 모형이 구분된다(황문규, 2018a).

2) 자치경찰의 인사

전자는 자치경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이기 때문에 자치경찰관 역시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되어야 하며, 그 책임자도 지방자치의 중요 원칙 가운데 하나인 자기 선임의 원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권한을 가지고 선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양영철, 2051: 361 ; 신봉기, 2006: 31). 반면에 후자는 이러한 주장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즉 자치경찰은 국가경찰의 한 분류이기 때문에 간부 공무원은 국가공무원이 되어야 하며, 특히 그 책임자는 국가경찰에 의해서 임명된 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그렇게 해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서로 연계가 되어 경찰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한다(이황우, 1995: 29).

3) 자치경찰의 사무

전자는 자치경찰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능력과 필요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경찰업무가 무엇이냐를 결정하고, 이 가운데서 지방자치단체의 능력, 즉 행·재정 능력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무에 한정하여 자치경찰 사무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참여정부 당시 논의되었던 안에 자치경찰 사무를 지역교통, 지역방범, 지역경비 등으로 한정할 이유도 이러한 사무가 현재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치경찰 사무화(化) 필요성이 시급한 사무이기 때문이었다(양영철, 2005: 356-358). 이와 반대로 후자는 자치경찰 사무를 국가경찰 사무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 국가경찰 사무의 일부를 이관할 수 없고, 단지 위임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자치경찰 사무의 고유 사무화를 반대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자치경찰 사무의 범위 결정은 국가경

찰과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약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제주자치경찰단의 근거 법률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에 자치경찰에 대하여 협약 규정을 명문화한 것도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양영철 2021: 46).

4) 자치경찰 사무의 처리 방법

전자는 자치경찰에 대한 사무를 사후 처리보다는 예방적 관점에서 바라본다. 이들은 자치경찰은 꼭 수사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이들은 심지어 상징적이라 할지라도 자치경찰의 총기 휴대를 반대한다(표창원, 2007). 반면에 후자는 자치경찰도 하나의 경찰이기에 총기 휴대를 비롯한 사법경찰관의 권한을 가지고 자치경찰 사무를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관처럼 일부 경우만 무기를 휴대할 수 있고, 제한적으로 수사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다. 예를 들면, 음주운전 적발 시 바로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국가경찰로 이관한다든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독자적으로 처리하지 않으며, 중·경상과 같이 형사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국가경찰로 이관하는 등, 이렇게 제한된 권한을 가진 경찰관은 무늬만 경찰관이라고 혹평하기도 한다(문성호, 2004: 2-17).

5) 자치경찰의 이념

전자는 민주성을 우선시한다. 지방자치의 최종 결정권은 주민에게 있다.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주인인 것이다. 따라서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정책 결정을 하거나 대표자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을 민주성이라 한다. 따라서 이들의 주장은 항시 자치경찰은 주민의 통제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치경찰은 주민이 직접 자치경찰을 통제하거나 주민이 뽑은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의 통제 속에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것이야말로 지방자치의 첫 번째 이념인 민주성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영국의 자치경찰제도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반면 후자는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한다. 자치경찰은 사법권을 집행하는 경찰의 일부이기에 공정한 법 집행을 위해 정치적 중립성이 준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를 위해 지방정치의 중심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하며,

설령 지방자치단체가 관여하더라도 간접적이거나 소극적인 관여에 그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이들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저해하는 어떠한 조직과 권한을 받아 드릴 수 없다는 것이다. 일본 자치경찰제도의 사례가 후자들의 주장에 속한다.

3. 자치경찰제의 도입 필요성

자치경찰 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논의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지역 실정에 적합한 다양한 치안 서비스를 주민에게 제공할 수 있고, 주민 참여에 의한 지역사회 밀착형 경찰 실현, 민주적 통제, 분권에 의한 효율적인 운영 등이다. 학자들이 논의하고 있는 자치경찰제의 도입 필요성을 상술하면 다음과 같다(양영철, 2021: 50-53).

1) 지방분권의 완결

자치경찰제도의 실현을 지방분권의 완결로 인식하는 입장이다.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려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자치경찰제 실시가 한국 지방자치를 완결시키는 지름길이고 전통적인 국가 권력기관의 중립화 혹은 분권화로의 정부 조직개편이라는 것이다(김만기·심익섭 외, 1998: 55). 즉 지방화시대에 따라 권력의 중앙 집중으로부터 지방분권의 이념을 달성하고, 지역의 특수한 사정에 맞는 경찰행정을 펼치기 위하여 경찰의 사무를 자치경찰화해야 한다는 것이다(김원중, 2004: 201). 최근에는 대의민주주의가 갖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강한 민주주의(strong democracy)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참여가 배제된 치안 행정은 지방자치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참여정부는 전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방분권화를 실천하는 중요과제의 하나로 자치경찰제도를 설정·추진하였던 것이며, 그 산물의 하나가 2006년 「제주특별법」에 반영되어 실시하고 있는 ‘제주자치경찰단’이다.

2) 지방자치단체의 종합행정 실현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는(「헌법」 제 117조 제①항) 종합행정실현단체이다. 이러한 종합행정의 구현을 위해서는 일반 행정적 수단에만 의존할 수 없다. 2021년 7월전까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자치

경찰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아 종합행정을 실천하는 데 필수적인 강제력을 확보하고 있지 못해, 종합행정의 실천력과 집행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졌다. 심지어 불법영업, 불법주차 단속공무원이 피의자에게 폭행까지 당하는 등 사례가 많았다. 자치경찰제도의 실시는 이러한 종합행정의 실천력, 집행력을 강화하여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종합적 기능을 수행할 여건을 조성해 줄 수 있다(양영철, 2021: 51-52).

3) 민생 기초질서 확립

교통과 생활안전을 비롯한 민생 기초질서가 위험한 수준에 있다. 각종 흉포한 범죄도 빈발하고 있다. 이러한 범죄양상은 중앙집권적 경찰제도의 부작용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양영철, 2021: 52). 이러한 부작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중앙집권적 경찰조직과 치안정책 등의 개선만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대다수의 선진국에서는 치안 행정에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정책 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지역사회경찰제(community policing system)를 도입하고 있다. 즉 지역의 치안 행정이 주민을 중심에 두고 실시하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자치경찰을 도입하면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과 관련된 5대 범죄는 국가경찰이 수행하고, 주민 생활과 관련된 교통, 생활안전은 자치경찰이 수행하고 있다.

4) 체감치안 개선

과거 「경찰법」(제2조)에서 지방경찰청은 시·도지사에게 속한다고 되어 있었다. 그리고 현행 법령(「국가 및 자치경찰법」 제28조)도 시·도에 시·도경찰청을 설치하게 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인 시·도와 시·도경찰청 사이에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두고 있다. 지역 치안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실시하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지방경찰은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치안 행정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명목에 불과할 뿐 실제로는 시·도경찰청은 중앙정부에 예속되어 있다. 지방경찰은 중앙경찰에 직·간접적인 지휘·감독 하에 있어 주민 참여와 통제가 미약하다. 그러나 모든 경찰이 지역 주민들의 통제 속에 있기는 불가능하다. 실제로 이러한 나라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분단이라는 현실 속에서 경찰은 치안뿐만 아니라 국가안보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어 중앙정부가 지휘하는 국가경찰이 필요하다. 다만 주민 생활,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집행력을 강화하고 주민들에게 치안 체감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주민의 통제를 받는 자치경찰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운영 방법은 지역 주민의 직·간접 통제 하에 두어야 한다는 점이 자치경찰제가 필요한 주요한 요인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과거 지역 치안에서 배제되었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치안의 한 축이 되는 수단이 될 것이고, 경찰도 지역 치안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게 되었다(양영철, 2021: 53).

4. 자치경찰제 도입 논의

현행 「경찰법」 제14조 제2항에 의하면 “지방경찰청은 시·도지사에게 소속하고 있을 뿐 시·도지사의 지방경찰사무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유명무실하고, 실제로는 지방경찰청장이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고 있어, 지역 특성에 따른 주민 위주의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행정 처분권을 가지고 있지만,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찰과의 협조체제 구축이나 자치경찰제 도입”이 필요하다(육동한 외, 2017: 조성호 외, 2020). 자치경찰제를 도입·운영함으로써 지역 치안 행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고, 지역 주민들과 자치경찰과의 밀접한 치안 행정 연계성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한 치안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조성호 외, 2020). 또한 자치경찰제는 지역 주민의 의사에 기초한 자율적, 개방적, 효율적인 지역 치안 행정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는 ‘맞춤형’ 경찰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지방자치의 본질적인 목적을 구현할 수 있으며, 자치경찰제 도입을 통해 국가경찰조직을 자치경찰조직으로 분산하고 이를 통해, 지방분권을 실현할 수가 있다(강인호, 2019). 자치행정과 치안 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주민이 통제하고 참여하는 경찰권의 행사가 강조되고 있다.

현재의 중앙집권적인 경찰체제는 미군정 시기의 시대적 상황을 고려한 치안 업무 효율성 강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자치경찰제 도입은 1948년 「정부조직법」 제정 시 경찰의 정치적 중립 확보를 위해 처음 논의되었으며,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도입논의가 다시 있었다. 1997년 12월 19일 당시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는 기자회견에서 자치경찰 창설을 약속한 후 정권교체기마다 자치경찰제 도입은 대선의 주요 공약으로 채택되었으나, 도입을 위한 입법으로는 이어지지 못했었다(안성호, 2018). 그 이후에는 2006년 7월 참여정부 시기에 제주특별자치도에 도입되었으며 향후 기초자치단체에서 도입할 것을 전제로 논의가 있었다.⁶⁾ 문재인 정부는 자치경찰제실시를 대통령의 주요 공약과제(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

제)로 제시하였고, 기초자치단체가 아닌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모델’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2018년 9월 11일 자치분권위원회는 자치경찰제의 도입 일정을 발표하였다. 법적 근거를 확보해 2019년 하반기부터 서울을 비롯한 제주, 세종 등 5개 지역에 시범실시하고 평가를 통해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전국적으로 확대·실시할 계획이었다.⁷⁾ 이러한 시대적 요구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는 2018년 11월 13일 광역단위의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발표하였다.

제2절 자치경찰제의 모형

자치경찰의 모형은 분류의 기준에 따라 다양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크게 3가지 관점에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지방정부의 유형과 관련한 분류이다. 자치경찰의 조직이 어떠한 지방정부의 유형에 속해 있는가에 따른 분류로, 기관 구성과 업무 성격에 따른 지방정부의 유형 분류를 통하여 자치경찰의 모형을 분류한다. 둘째, 국가경찰과의 관계에 따른 분류이다. 자치경찰은 국가경찰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대륙법 체계인 우리나라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과의 관계가 더욱 밀접하다. 국가경찰과의 권력적 관계에서 어느 정도의 자치권을 갖는지 그리고 조직 형태가 국가경찰조직과 일치하는지, 아니면 완전하게 독립되어 운영하고 있는지에 따른 분류이다. 셋째, 위 두 가지 분류를 종합한 절충형 모형 분류이다(양영철, 2021: 53-67).

1. 지방정부 유형과 자치경찰 모형

지방정부 유형에 따른 자치경찰의 모형으로, 여기에는 일반지방자치단체 모형, 특별지방자치단체 모형, 관선지방자치단체 모형, 특별지방행정기관 모형 등이 있다. 이를 상술하면 다음과 같다.

1) 일반지방자치단체 모형

-
- 6) 당시에 전국시·도지사 협의회(2005년 2월)는 광역단위의 자치경찰제를 자치경찰제의 바람직한 모형으로 제시했다.
 - 7) 2018년 11월 13일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관련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를 운영해,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은 파출소·지구대 경찰 인력을 자치경찰로 이관하는 것이었다. 한편 대통령직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인 김순은 교수는 2019년 5월 29일 경기도형 자치경찰 도입 방향 토론회 축사에서 5개 시범지역에서 8개 지역으로 확대·실시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기관 구성이 주민들이 선출한 대표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업무처리는 일반사무를 주로 처리하는 지방정부를 일반지방자치단체라고 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지방자치단체’ 혹은 ‘자치단체’라고 부르는 지방정부가 여기에 속한다. 여기서는 “자치경찰은 일반지방자치단체 내의 자치경찰조직이 일부 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참여정부 당시 제시된 안이 이러한 모형에 속한다. 물론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치경찰도 이 분류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양영철, 2021: 55).

2) 특별지방자치단체 모형

기관 구성은 일반지방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주민들이 선출한 대표자로 구성되어 있지만 처리하는 업무 성격은 일반적인 것이 아닌 특수적인 것을 말한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일종이지만 담당구역과 기능이 한정되어 있다(이달곤, 2004: 174-5). 일부 학자들이 주장하는 경찰자치 형태가 바로 특별지방자치단체인 것이다(이주희, 2003). 미국의 경우에 흔히 볼 수 있는 지방정부로서 경찰, 소방, 교육, 교도소, 항만, 공항 등이 있다. 영국의 자치경찰 모형이 이 분류에 속한다.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유형으로 자치경찰제도가 시행된다면 여기서는 “자치경찰제란 주민대표로 구성된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자치경찰사무만을 처리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양영철, 2021).

3) 관선지방자치단체 모형

과거 지방자치단체를 실시하기 전에 우리나라에서 실시되었던 지방정부 형태이다. 1991년 4월 지방의회와 1995년 7월 민선자치가 부활하기 전에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시·도지사를 비롯한 시장·군수·구청장은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는 임명직 공무원이었다. 각급의 의결기관은 시·도의회는 내무부가, 시·군·구의회는 해당 시·도지사가 대행하였다. 또한 일정 직급 이상의 고위직 공무원은 국가공무원으로 보하였다. 자치단체가 이렇게 일반적인 업무를 처리하나 책임자는 중앙정부에서 임명하여 운영하는 정부를 관선자치단체라고 한다. 여기서 자치경찰제도가 도입된다면 “자치경찰이란 국가가 임명한 공무원으로 구성된 자치단체 내의 조직이 경찰 사무 일부를 처리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조철욱, 2007: 122-3 ; 정진환, 2006: 105-15).

4) 특별지방행정기관 모형

조직책임자도 임명직이며 수행하는 업무도 중앙정부의 사무를 수행하는 중앙부처의 일선 지방 관서가 특별지방행정기관이다. 중앙정부가 지방에 있는 자신의 업무처리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은 보편화되어 있는데 과거 지방경찰청과 경찰서, 지방세무서, 지방관세청, 지방채신청, 지방해운항만청 등이다. 여기서 자치경찰은 “국가경찰의 일선지방조직이 경찰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이시철, 2006: 6)

2. 국가경찰과의 관계에서 본 자치경찰 모형

경찰제도는 그 국가가 형성하고 있는 일반행정제도, 국민의 전통적 가치관이나 정서, 교통통신의 발달 정도, 치안 상태 등에 의하여 결정되고 유지된다(정진환, 1998: 478). 그래서 자치경찰 제도의 유형이 다양하다. 따라서 자치경찰은 국가경찰과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에 따라 성격이 차이가 있어 그 관계에 따른 모형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양영철, 2021: 59-67).

1)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의 권력과 권한관계로 본 분류

이 분류는 자치경찰의 활동에 국가경찰의 관여 정도를 보는 분류이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중앙집권적 요소가 강한 국가이기에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관여는 그 폭과 깊이가 넓다. 중앙정부는 이러한 관여 외에도 감사 등의 형태로 지방자치단체를 통제하고 있다(홍준현, 2003). 이러한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관여와 감독의 관계 정도와 수평적 협력관계를 변수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관계의 모형을 밝혀내고 있다. 자치경찰과 국가경찰과의 관계를 이러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관계를 적용하여 분류한 학자들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과의 관계를 종속적 관계, 병렬적 관계, 독립적 관계로 분류하고 있다(최중술, 2004).

(1) 종속적 관계

종속적 관계는 경찰의 모든 권한이 완전히 국가에 의해 독점되어 있는 체제이다.

즉 국가경찰 속에 자치경찰이 있는 경우이다. 국가경찰이 주(主)이며 자치경찰이 종속된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계는 모든 경찰권을 중앙정부가 행사하는 경우이다. 지방경찰은 국가경찰의 지시와 통제 하에 경찰 활동이 이루어진다. 자치경찰은 국가에 소속된 경찰로서 자치적 요소가 전혀 없거나, 있다고 해도 형식적인 경우의 경찰제도이다. 이러한 자치경찰제도를 가진 대표적인 나라가 일본이다. 그리고 이번 도입된 한국의 자치경찰 모형도 지방자치단체가 자치경찰위원회를 통하여 자치경찰 사무 조직과 운영에 관여할 수 있지만, 자치경찰조직이 시·도경찰청의 내부조직인 보조기관이라는 점과 자치경찰 사무 담당공무원의 신분과 인사권 등이 실제로 국가경찰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종속적 자치경찰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양영철, 2021: 60).

(2) 병렬적 자치경찰제(절충형 또는 혼합형)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이 서로 병존해 있는 경찰체제이다. 이 경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관계는 국가위임사무를 제외하고는 대등한 관계가 형성된다. 이러한 유형에서는 경찰 사무의 성격을 기준으로 사무가 구분된다. 즉 경찰 사무를 자치경찰 사무와 국가경찰 사무로 구분된다. 자치경찰 사무는 지방경찰이 수행하고 국가경찰 사무는 국가경찰이 수행하는 것이다. 국가경찰이 직접 수행하기가 어렵거나 비효율적인 사무는 자치경찰에 위임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이러한 위임사무에 대한 감독과 통제권은 국가경찰이 가진다. 즉, 국가위임사무에 대해서는 상·하관계가 형성되지만, 고유사무에 대해서는 독립적인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다. 대표적인 나라가 이탈리아·스페인 등이다(양영철, 2021: 61).

(3) 독립적 자치경찰제

이러한 유형은 말 그대로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이 완전히 분리·운영하는 경찰체제이다. 국가경찰은 중앙정부의 소속으로 자치경찰 사무로 분류된 사무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여도 할 수 없다. 자치경찰은 지방정부 소속으로 국가경찰의 관여 없이 자치경찰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고, 지방정부의 책임 하에 독자적으로 경찰업무를 수행한다. 일반적인 자치경찰 개념이다. 다만 자치경찰 조직을 독립된 위원회 형태로 운영하든지 아니면 지방정부의 직속 부서형태로 운영하든지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이다(양영철, 2021: 62).

2) 조직 형태에 의한 분류

이 분류는 국가경찰의 조직과 어느 정도 연계되어 있는가에 대한 분류이다. 즉, 국가경찰조직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느냐, 아니면 중복되어 있는가 혹은 국가경찰조직 안에 내부조직으로 있는가하는 분류이다. 앞서 분류한 국가경찰과의 관계에 의한 분류와는 다르다. 앞의 분류는 사무와 권력관계 측면에서 분류한 것이다. 권력과 사무에 의한 분류와 조직 형태에 의한 분류는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면, 앞에서 분류한 대로 종속적인 자치경찰이라고 해서 조직 형태가 일원적이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일본의 경우, 조직 형태는 일원적 형태이지만 국가경찰조직과 자치경찰조직은 일치한다. 국가공안위원회와 지방공안위원회가 같은 조직이며 그 조직 내에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이 함께 근무한다. 그렇다고 일본의 자치경찰제를 국가경찰의 종속 모형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따라서 조직 형태에 의한 자치경찰 분류와 국가 사무와 권력에 의한 자치경찰 분류는 다르다고 하겠다(양영철, 2021: 63-67).

(1) 이원론

자치경찰조직과 국가경찰조직이 완전히 다르다는 의미이다. 자치경찰조직 안에 국가경찰조직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또한 국가경찰관도 배치되어 있지 않다.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가 미국이다. 참여정부 시절 논의되었던 자치경찰 모델도 이원론이었다. 이 제도는 자치경찰이 자치단체의 조직임을 분명하게 하지만, 국가경찰을 비롯한 자치단체 간의 연계와 통일성 부족으로 오는 혼란과 비효율성이라는 단점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의 모형도 이원적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양영철, 2021: 63-64).

(2) 일원론

일본의 경우가 대표적으로 국가경찰조직 안에 자치경찰조직이 있는 것을 말한다. 별개로 조직되거나 운영되지 않고 한 조직 내에서 설치·운영된다. 일부 학자들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적당히 분권화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하여 일본의 경찰체제를 통합형 제도라고 부른다(이황우, 1995: 20). 그러나 일본의 자치경찰제는 조직 자체는 일원적이며, 또한 기능의 일부도 자치단체에 위임된 조직이다. 그

령다고 위임된 권한도 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소할(所轄)’, ‘관리(管理)’라는 이름으로 다시 자치단체가 국가경찰에게 재위탁 관리를 해 준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일본의 자치경찰은 하나의 조직에서 모든 경찰 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원론으로 분류된다. 2022년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주 특별자치도를 제외한 우리나라의 자치경찰 모형도 일원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일본과 다른 점은 일본의 지방공안위원회가 형식적인 위원회로 평가된다면 한국의 자치경찰위원회는 의결기관이고 실질적인 집행기관의 역할도 한다고 볼 수 있다(양영철, 2021: 66).

(3) 절충형

두 모형을 절충한 모형으로 자치경찰의 중요 업무에 대해서는 국가가 관여하지만, 집행적 업무는 자치단체에 이양한 모형이다. 영국의 자치경찰제도가 대표적인데 사전·사후통제를 중앙정부가 하지만 집행적 업무는 자치단체로 이양한 모형이다. 일단은 대부분의 경찰업무가 자치경찰로 이관되어 있고, 이관을 받은 지방정부가 독자적으로 자치경찰을 운영하고 있다. 다만 운영하는 과정에서 국가는 감독, 경찰 위원회는 의결, 지방경찰청장은 집행 등 각기 고유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견제와 균형을 맞추어 나가고 있는 것이다(경찰청, 2003: 147).

제3절 선진국 자치경찰제도 사례분석

본 연구는 자치경찰제의 사무, 조직·인사, 재정지원 및 예산 등이 핵심 연구분야이다. 이하에서는 선진국 중에서 우리나라처럼 광역단위의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고 있는 영국, 일본과 광역과 기초의 혼합 형태인 미국의 자치경찰제 조직·인사, 사무, 재정 분야를 중심으로 자치경찰제 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1. 미국의 자치경찰제

1) 조직

다양한 지방정부 구성 형태만큼이나 미국의 자치경찰제는 워낙 다양해서 일반화시켜 설명할 수가 없다. 일반적으로 연방제 국가인 미국에서 경찰은 행정단위에 따라 연방, 주, 자치경찰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연방정부는 헌법상 경찰권을 보장하고 있지 않으나, 헌법이 부여한 과세권, 주간(州間)통상 규제권 등의 행사를 위해 경찰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다 (조성호 외, 2018).

둘째, 주 정부는 연방수정헌법 제10조에 따라 경찰권을 보장받고 있으며, 주 정부는 경찰권을 직접 행사하거나 지방정부에 위임하여 각 지방정부(County·Municipal·Town·Township)가 경찰권을 행사하고 있다(경찰대학, 2001).

셋째, 미국의 자치경찰은 시 경찰(City Police), 보안관(County Sheriff), 타운 경찰(Town Police), 특별구 경찰(special district police) 등이 있다.

(그림 2-1) 미국의 자치경찰 조직도



자료 : 조성호 외(2018)에서 재인용.

2) 인사

지방정부의 인구 규모, 재정력 등에 따라 자치경찰제도는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다수의 지방정부는 경찰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치경찰 업무를 관리한다. 경찰위원회는 여러 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로 자치경찰 업무를 관리하며, 경찰위원회 위원은 시장 혹은 시의회가 임명한다. 로스앤젤레스 경찰청의 경우, 5명의 경찰위원회(Board of Police Commissioners) 위원이 자치경찰 관련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자치경찰관 정원, 총기사용방법, 치안정책 등은 시의회에서 최종 의결한다. 그리고 경찰청장(chief of police)은 경찰위원회에서 임명되며, 일반 경찰관을 임명하는 권한을 갖는다.

3) 사무

지방경찰의 사무는 일반목적 지방정부(general purpose government)와 특별지방정부(special district)로 나누어 구성된다.

첫째, 일반적으로 지방정부의 대표적인 사례인 시정부 경찰(City police)의 경우의 주된 임무는 지역사회의 질서유지, 범죄예방과 수사, 범인체포, 주법과 시 헌장(city charter)에 따라 개인의 생명·재산과 인권 보호, 기타 공공의 복리와 안전에 관한 임무를 수행한다(최길수, 2019). 아울러, 해당 지역의 약물, 알콜 및 기타 다양한 질서 위반행위, 빈민과 빈곤으로 인한 문제, 인종 문제와 인종차별 문제를 직접적으로 처리한다.

둘째, 카운티 지방정부(County Sheriff)의 사무는 카운티 관할구역의 치안 유지와 질서유지이다. 카운티 자치경찰업무는 교통지도·단속 등 교통사고를 주로 처리하며,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경우는 드물며(최길수, 2019), 또한 통신 지령센터(911 Center)나 외근 순찰 활동, 긴급 상황 업무, 유치장 관리 등을 담당한다. 카운티 지방정부의 치안책임자인 Sheriff는 법원의 집행관으로서 소장의 송달 및 영장의 집행, 배심원, 피고인의 소집, 재판비용의 징수, 카운티 교도소의 관리 및 사형집행과 재판의 증인이 되기도 한다. 남부와 서부의 여러 주에서는 조세의 징수, 상속인이 없는 재산의 관리인이 되기도 한다(조성호 외, 2018).

셋째, 일반적으로 농촌지방정부(Town·Township)의 자치경찰사무는 치안 유지와

지방법원의 민사소송에 관한 사법사무를 수행하며, 이외에도 세금 징수, 수감자의 감호 등을 수행한다. “타운경찰관이 타운 지방정부의 재정징수와 경찰 임무를 겸임하는 사례는 대개 뉴잉글랜드와 중부 여러 주에서 볼 수 있다”(조성호 외, 2018). 지방선거 시에는 타운 경찰서장의 권한으로 선거 지령 고시를 발하는 등 지방선거에 관한 사무도 관장한다(최길수, 2019). 타운 경찰의 장을 선거로 선출하는 경우, 경찰 사무에 비전문가인 일반인이 당선되기도 하여 비능률적이며 중대사건 처리능력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있다.

넷째, 특별지방정부의 자치경찰(Special District Police)은 특별지방정부(예: 공원·공항 등)에 설치·운영하여 특별지방정부의 관할구역 안의 경찰 활동을 수행한다(최길수, 2019).

4) 재정

자치경찰의 재정은 원칙적으로 해당 지방정부가 주로 부담하고 추가로 연방정부와 주 정부로부터 재정적(sin tax) 지원을 받는다. 연방정부로부터는 주로 범 집행 지원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뤄지며, 종종 지방정부의 자치경찰국이 연방정부에 프로그램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해 채택되면 예산을 지원받기도 한다. 주 정부는 지방정부에게 보조금을 차등적으로 지원하기도 한다. 지방정부의 재원은 지방세 또는 경찰세가 주 수입원이며, 세외수입으로서는 지역 주민의 기부금, 사용료와 수수료로 충당된다(양영철,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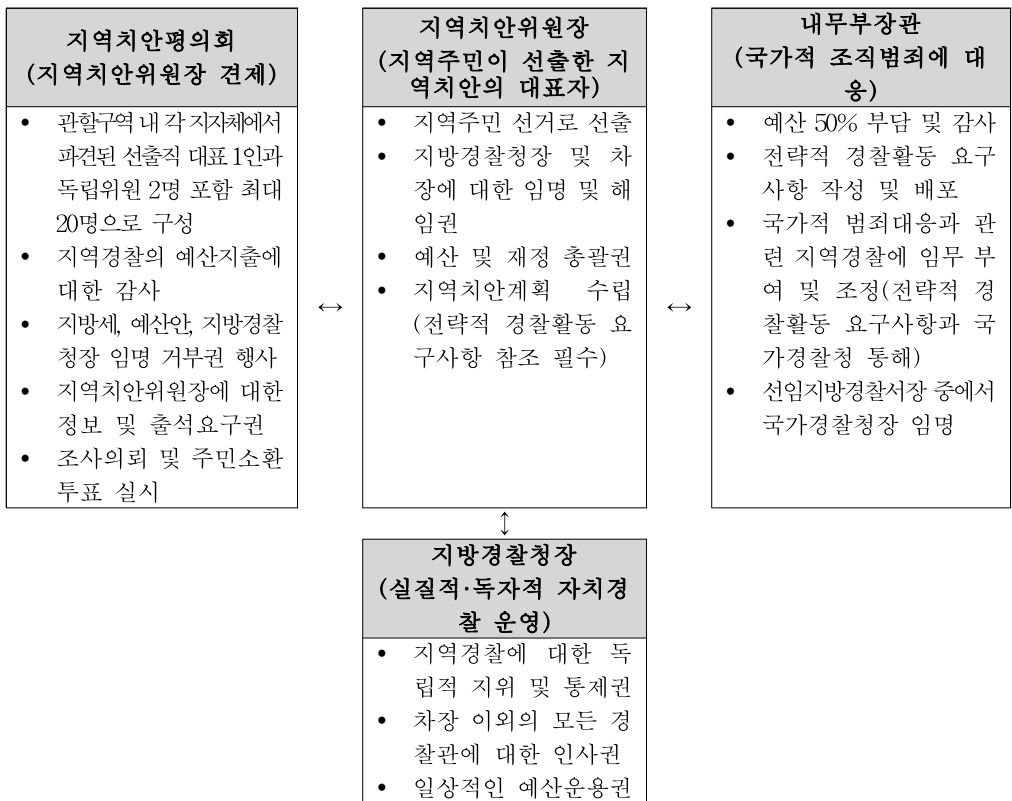
2. 영국의 자치경찰제

1) 조직

영국의 자치경찰제는 4원 체제(지역치안평의회, 지역치안위원장, 지방경찰청장, 내무부장관)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지역치안평의회는 관할구역 내 각 지방정부에서 파견된 선출직 대표 1인과 독립위원 2명을 포함 최대 20명으로 구성된다. 지역치안평의회는 지역경찰의 예산지출에 대한 감사, 지방세, 예산안, 지방경찰청장 임명 거부권 행사, 지역치안위원장에 대한 정보 및 출석 요구권, 조사의뢰 및 주민소환투표 실시에 대한 기능을 수행한다. 지역치안위원장 체제에서 지역치안위원장은 지역 주민의 선거로 선출되고, 선출직 지역치안위원장은 지방경찰청장 및 차장에 대한 임명 및 해임권, 예산 및 재정 총괄권, 지역치안계획 수립(전략적 경찰활동 요구사항

참조 필수)의 기능을 수행한다. 그리고 지방경찰청장 체제에서는 지방경찰청장이 지역경찰에 대한 독립적 지위 및 통제권을 행사하고, 차장 이외의 모든 경찰관에 대한 인사권, 일상적인 예산 운용권 기능 등을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내무부 장관 체제는 전략적 경찰활동 요구사항 작성 및 배포, 국가적 범죄대응과 관련 지역경찰에 임무 부여 및 조정(전략적 경찰활동 요구사항과 국가경찰청 통제) 업무를 수행한다. 그리고 지역 최고치안책임자는 선임지방경찰서장 중 내무부장관이 임명하여 지역 국가경찰청장직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한다(김학경 외, 2012; 최길수, 2019).

(그림 2-2) 영국 자치경찰의 4원 체제



자료 : 김학경 외(2012)의 논문에서 재인용.

2) 인사

지역치안위원장 체제에서는 지역치안위원장이 지방경찰청장과 차장의 임명 승인권과 해임 요구권을 갖는다. 이에 따라 지역치안위원장은 지방경찰청과 차장을 임명 및

해임할 수 있다. 지방경찰청장 체제에서는 지방경찰청장이 차장 이외의 모든 경찰의 임면권을 시행하고, 실질적·독자적 자치경찰을 운영한다. 그리고 내무부장관 체제에서는 내무부장관이 임명한 지역 최고책임자인 지역 국가경찰청장이 모든 인사권을 행사하다(김학경 외, 2012; 최길수, 2019).

3) 사무

‘The Police Service Statement of Common Purpose and Values’에 언급되어 있는 영국 자치경찰 사무는 수사, 생활안전, 교통, 경비 등이다. 그리고 자치경찰관은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 수사권을 행사한다. 다만 국가(주로 조직범죄) 또는 국제 범죄는 2013년에 신설된 내무부 산하의 국가경찰청(NCA)이 담당하고 있다(김학경 외, 2012; 최길수, 2019).

4) 재정

자치경찰 경비는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75%)과 지방세(25%)로 충당한다. 중앙정부의 예산 75%는 내무부 지원 경찰보조금 50%, 중앙정부의 지방정부 국고 보조금 중 25% 내외로 구성된다(박재희 외,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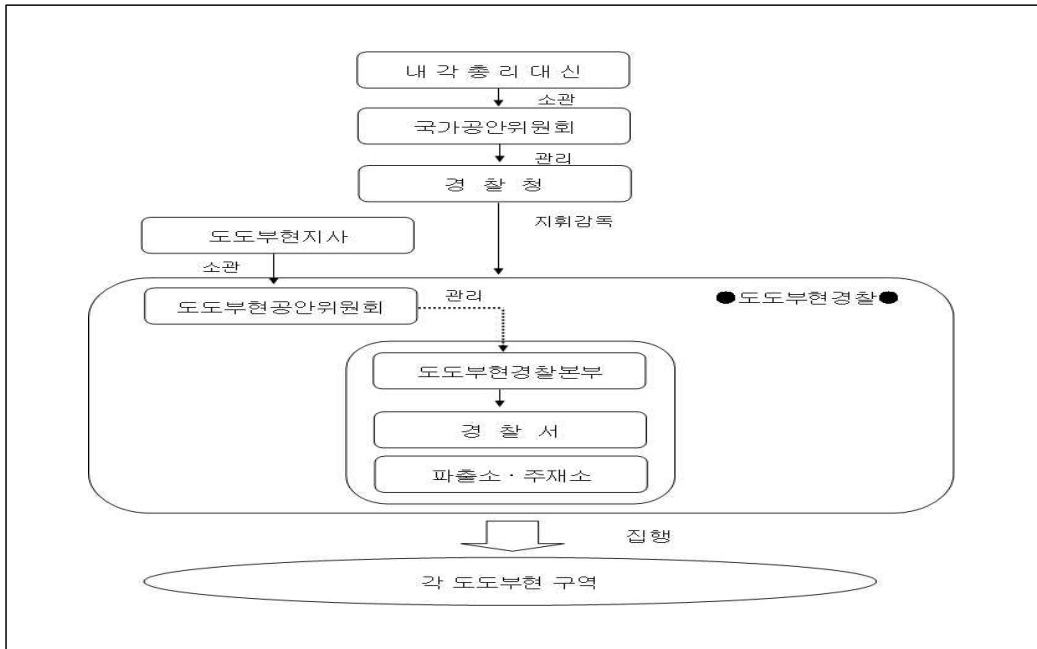
3. 일본의 자치경찰제

1) 조직

일본의 국가경찰조직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민주적 운영을 위해 내각총리 대신의 소관 하에 국가공안위원회이며, 자치경찰조직은 도·도·부·현 지사의 소관 하에 도·도·부·현 공안위원회이다(안성훈, 2019). 그리고 다시 도·도·부·현 경찰은 공안위원회와 경찰본부로 구성된다. 도·도·부·현 공안위원회는 법률이나 조례(條令)의 규정에 의해 도·도·부·현 지사가 소관한다. 도·도·부·현 경찰본부는 경찰서, 파출소·주재소를 관리한다. 도·도·부·현 공안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도·도·부·현 경찰 관리와 규칙을 제정하는 권한 행사이다. 규칙제정권은 권한에 속하는 업무에 관하여 법령 또는 조례의 특별위임에 근거해 제정한다. 이와 더불어 지방경찰관의 임명에 관한 동의권, 도·도·부·현 경찰관에 대한 징계 및

파면에 대한 권고권, 경찰조직의 세목에 관한 제정권, 경찰청 또는 다른 도·도·부·현 경찰에 대한 지원 요구권 등(경찰법상 임무 및 권한)이 있다. 또한 도로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 등, 풍속영업의 허가 및 정지·취소, 총포·도검류 허가 및 정지·취소 등의 권한(특별법에 따른 권한) 등이 있다(안성훈, 2019).

(그림 2-3) 일본의 자치경찰제 조직



자료 : 안성훈(2019)의 보고서에서 재인용.

(그림 2-4) 일본의 도·도·부·현 공안위원회의 기능 및 사무

- 도·도·부·현 경찰 관리
- 규칙제정권
- 지방경찰관의 임명에 관한 동의권
- 도·도·부·현 경찰관에 대한 징계 및 파면에 대한 권고권
- 경찰조직의 세목에 관한 제정권
- 경찰청 또는 다른 도·도·부·현 경찰에 대한 지원 요구권
- 도로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
- 풍속영업의 허가 및 정지·취소
- 총포·도검류 허가 및 정지·취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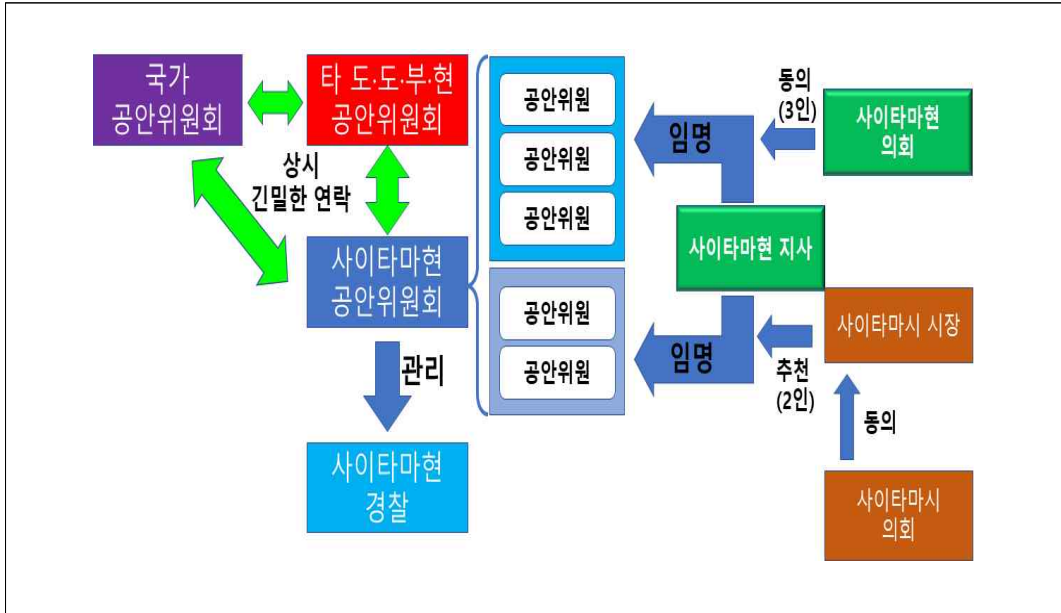
도·도·부·현 경찰본부는 도·도·부·현公安위원회에 관리를 받으며, 관할구역 내 경찰서와 파출소·주재소를 관리한다. 경찰본부의 장(長)은 도·도·부·현 경찰본부장이며, 경찰본부장은 公安위원회의 관리를 받아 경찰본부의 사무를 총괄한다. 이와 더불어 소속의 경찰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경시정(警視正, 우리의 경무관) 이상의 계급은 국가공안위원회가 임명권을 행사하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이며, 지방경찰관으로 불린다. 이 이외의 경찰직원은 지방경찰직원(지방공무원)으로 불리는 도·도·부·현의 공무원으로 분류된다(안성훈, 2019).

경찰본부의 내부조직은 정령(경찰법시행령)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각각의 도·도·부·현의 조례로 정해진다. 일반적으로 경찰본부는 경무부, 생활안전부, 형사부, 교통부, 경비부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각각의 도·도·부·현의 인구, 범죄발생현황 및 기타 사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 시 총무부, 지역부,公安부, 조직범죄 대책본부 등이 설치된다. 그리고 경찰본부의 하부조직으로 경찰서가 설치되어 있다. 경찰서는 도·도·부·현의 구역을 나누어 각 지역을 관할하며, 경찰서의 명칭, 지위 및 관할구역은 「경찰법」시행령 제5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도·도·부·현의 조례로 정해져 있다. 통상적으로 경찰서는 1개 또는 복수의 시·정·촌을 관할하지만, 특별구나 정령지정도시(政令指定都市), 중핵시(中核市) 등 인구와 면적이 넓은 시 구역에서는 복수의 경찰서를 설치하는 예도 많이 있다. 경찰서장은 도·도·부·현 경찰의 장, 방면본부장(方面本部長), 시경찰부장(市警察部長)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그 권한에 있어서는 관할구역 내의 경찰사무의 처리 및 소속경찰직원을 지휘·감독하며, 경찰서 내에는 국가공안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과를 설치하며, 각 경찰서는 규모·인원 차이는 있지만, 거의 동일한 과가 설치되어 있다(안성훈, 2019).

2) 인사

도·도·부·현 公安위원회 위원은 지사가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는데, 해당 지방의회의원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가운데서 임명된다(단: 직전 5년간 경찰 또는 검찰직을 수행하지 않은 사람). 그러나 지정도시의 경우 지정도시 시장이 시의회에서 추천한 위원(2인) 중에서 시의회 의장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며, 이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안성훈, 2019). 사이타마현의 경우, 5명의 위원 중 3명은 지사가 현 의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고, 나머지 2명은 지정시인 사이타마 市の 시장이 市 의회의 동의를 얻어 추천받은 사람을 현 지사가 임명한다(「경찰법」 제38조 제2항).

(그림 2-5) 사이타마현 공안위원회의 구성 및 상호관계



자료: 안성훈(2019)의 보고서에서 재인용.

도·도·부·현 경찰본부장은 「경찰법」 제50조에 따라 국가공안위원회가 도·도·부·현 공안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 즉 경찰본부장의 임면권은 자치단체장이 행사하지 않으며, 경찰본부장의 신분은 국가공무원으로서 경찰청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고 있다. 그리고 도·도·부·현 경찰직원 중 경시정(警視正) 이상 계급인 지방경무관은 「경찰법」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국가공무원으로 국가공안위원회가 도·도·부·현 공안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안성훈, 2019).

3) 사무

도·도·부·현의 각 구역 관할 경찰서의 서장은 경시청의 경시총감, 도·도·부·현 경찰본부의 경찰본부장, 홋카이도의 방면본부장 또는 지정도시의 시 경찰부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그 관할구역 안에서 <표 2-2>와 같은 경찰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경찰관을 지휘·감독한다. 일본 자치경찰 인력은 주로 교번(일본어로 코반, 交番)과 주재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관, 순찰차를 통해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관, 그리고 일부 검문소 경계임무를 담당하는 경찰관 등으로 구성된다. 교번(交番)은 동네의 소규모

생활안전센터이고, 마을안전을 지키는 지역치안 경찰활동은 좀 더 큰 규모인 주재소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이러한 조직구조로 인해 일본의 자치경찰 조직은 다른 나라에 비해 주민친화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찰관의 존재를 알리는 순찰활동은 전형적인 범죄예방과 지역 주민들에게 보안의 감각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지역사회 경찰관들에게 가장 중요한 임무이다. 예를 들면 교통법규 위반자와 비행 청소년에게 주의를 주고, 만취자나 미아를 돌보는 것이다. 주재소의 경찰관들은 일주일에 5일, 하루에 8시간 근무하나 주민들의 요청이 있으면 근무시간 외에도 응답의 무가 있다(안성훈, 2019).

<표 2-1> 일본 도쿄도 경시청 소속 경찰서 각 부서별 업무

부서명	업무내용
경무과	• 접수, 증명 등의 사무, 유실물·습득물 등의 취급, 기타 경찰서 내의 사무 전반
교통과	• 교통정리, 교통사고의 수사, 교통위반의 단속, 신호기나 표지의 설치·관리, 운전면허증, 차고증명 등의 사무
경비과	• 행사 등의 허가, 혼잡경계, 태풍 등 재해 구조활동, 집회시위 경비 등
지역과	• 순찰, 순회연락, 지리 안내, 습득물의 접수, 미아 등의 보호, 각종 상담의 수리 등 파출소 등을 중심으로 한 가두 활동
형사과	• 피해의 접수, 살인, 강도, 절도 등 범죄의 수사
생활안전과	• 소년사건이나 미아, 가출인 등 상담, 총포, 화약, 바, 파칭코 등의 허가, 공해수사
조직범죄 대책과	• 조직범죄(폭력단 등 국제범죄조직과 관련되는 범죄)의 단속, 권총·마약·각성제의 단속 등

자료 : 안성훈(2019)의 보고서에서 재인용.

4) 자치경찰제의 재정

자치경찰의 재정은 해당 도·도·부·현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실제로 도·도·부·현 경찰예산의 98%는 도·도·부·현의 재원이며, 2% 정도가 국고보조금으로 충당된다(양영철, 2021). 도·도·부·현 자치경찰 재정은 경찰용 차량과 헬리콥터 구입비, 경찰학교 등의 증·개축비, 중요범죄 수사비 등 도·도·부·현 자치경찰이 필요로 하는 경비 등으로 사용된다(안성훈, 2019).

4. 선진국 자치경찰제의 시사점

앞에서 살펴본 주요 선진국의 자치경찰제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선진국 자치경찰제의 조직의 경우, 주로 지역 경찰위원회(관리·감독)와 지역 경찰본부 형태로 이루어진다. 영국의 경우, 자치경찰의 관리·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 치안평의회와 집행기능을 수행하는 지방경찰청 구조이며, 일본도 자치경찰의 관리·감독기능을 수행하는 도·도·부·현 공안위원회와 집행기능을 수행하는 도·도·부·현 경찰본부와 경찰서·파출소·주재소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미국의 자치경찰은 (일반목적)지방정부(시 경찰, 카운티, 보안관, 타운, 타운십)와 특별 지방정부 경찰로 구성되어 있다.

둘째, 선진국 자치경찰제 인사의 경우, 지역 경찰본부의 장은 지역 경찰위원회의 추천 또는 지명을 통해 임명된다. 영국의 경우, 지방경찰청장과 차장은 지역 치안평의회에서 임명되며, 그 외 자치경찰은 지방경찰청장에 의해 임명된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 도·도·부·현 경찰본부장은 도·도·부·현 공안위원회가 국가공안위원회에 추천하여 임명되고, 그 외는 도·도·부·현 공안위원회가 임명한다. 그러나 미국의 자치경찰기관의 장은 지방정부 장, 혹은 지방정부의 장이 임명한 경찰위원회가 임명하거나 또는 지역주민이 직선으로 선출한다. 자치경찰조직 내의 인사는 자치경찰기관의 장이 행사한다.

셋째, 사무의 경우, 미국은 지방정부 수준별로 사무가 상이하지만, 기본적으로 시민의 생명·재산과 인권 보호, 약물·빈곤·인종차별 관련 범죄 처벌, 교통지도단속, 교통사고 처리, 그리고 지방법원의 민사소송에 관한 사법사무 등을 수행한다. 영국의 경우, 수사·생활안전·교통·경비 등의 사무를 수행하며, 일본의 경우는 지역 교통관리·집회 시위 관리·재해 구조 활동·살인·강도 범죄 등의 수사 등을 수행한다.

넷째, 재정의 경우, 미국은 원칙적으로 해당 지방정부가 주로 부담하고 추가로 연방정부와 주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다. 영국의 자치경찰 재원은 중앙정부가 지원금, 지방세 이양으로 구성된다. 일본자치경찰의 재정은 해당 도·도·부·현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추가적인 국가보조금으로 구성된다.

<표 2-2> 선진국 자치경찰제의 비교

구분	조직 측면	인사 측면	사무 측면	재정 측면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 경찰 - 주 경찰국·고속도로순찰대·주 경찰청·특별법 집행기관 지방경찰 - 시 경찰·보안관·치안관·검사관·특별지방정부 경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정부 장이 지역 경찰청장 임명 지역경찰청 내 인사는 지역 경찰청장에 의해 임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의 생명·재산과 인권 보호 약물·빈곤·인종차별 관련 범죄 처벌 교통지도단속, 교통 사고 처리 지방법원의 민사소송에 관한 사법사무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체부담 (일부 국가, 주 지원)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치안평의회 지방경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경찰청장과 차장은 지역치안평의회에서 임명 그 외 자치경찰은 지방경찰청장에 의해 임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사, 생활안전, 교통, 경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앙 정부 지원 지방세 재원 이양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도부현 공안위원회 도도부현 경찰본부 경찰서·파출소·주재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도부현 경찰본부장은 도도부현 공안위원회가 국가공안위원회에 추천하여 임명 그 외는 도도부현 공안위원회가 임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교통 집회시위 관리 재해구조활동 살인·강도 범죄 등의 수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도부현 지원금 국가보조금

제4절 자치경찰제의 선행연구 검토

1. 자치경찰제의 조직

1)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구성의 문제

이상훈(2022)은 “국가경찰위원회가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권을 갖는 것은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비대해진 경찰 권한을 이원화해 견제하는 한편, 지방분권을 보다 활성화하자는 지방자치제도의 근본 취지에도 역행한다”고 언급하였다. 현행 “국가경찰위원회는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에 각각 위원 1명에 대한 추천권을 행사하여 전국에 총 18명의 시도 자치경찰위원을 추천”하였고, 시도지사는 이를 법률에 따라 전원 임명하였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국가경찰위원회의 사무·권한에서 시도자치경찰 위원회 위원 추천권은 지방자치의 정신에 비추어 타당성이 결여되며, 자치경찰제의 취지에도 부합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삭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즉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구성에 있어서는 현재 7인을

기준으로 할 때, 자치단체의 한 축으로서 시도의회 추천(2명), 아동·청소년의 보호와 학교 안전 등 교육행정과의 연관성을 고려한 시도 교육감 추천(1명), 위원추천위원회 추천(2명)으로 구성하는 내용은 종래와 같이 하되, 국가경찰위원회의 추천 몫을 시도지사 지명 몫으로 전환하여 2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허경미(2021)는 일원화 모형의 문제점에 대하여 현재의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구성은 시·도의 자치권을 제한한다고 언급하였다. 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찰법」) 제20조는 위원은 시·도의회가 추천하는 2명, 국가경찰위원회가 추천하는 1명, 시·도 교육감이 추천하는 1명,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2명,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1명 등이 추천하여, 시·도지사가 임명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이중 국가경찰위원회의 추천권 제도는 중앙정부(국가경찰위원회)의 영향력을 강화시키며, 이에 따라 자치분권법상 자치경찰의 도입 취지를 약화시킨다고 언급하였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임용권은 모두 시·도지사가 갖되, 시·도지사 산하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시·도지사 산하 추천위원회의 구성은 지역사회의 경찰행정 분야 학계, 시민사회, 교육계, 시·도 의회의 추천 등의 전문가로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신현기(2021)는 일원화 모형의 문제점에 대하여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은 도의회 2명, 교육감 추천 1명, 추천위원위원회 추천 2명, 국가경찰위원회 추천 1명 등을 각각 추천되므로 결국 시·도지사의 실질적 인사권은 거의 없고 책임만 지는 한계에 보여준다고 언급하였다. 즉, 시·도지사는 경찰기관이 인사위원회를 통해 경찰 승진자를 결정해서 공문을 보내오면 단지 승진임명장만을 직인 찍어서 전달만 해주는 방식이라고 언급하였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현재 경찰법상의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권에 관하여 재개정하여 실질적으로 시·도지사 혹은 자치경찰위원회에 이른바 실질적인 조직 및 인사권이 제대로 부여되도록 하는 추가 개선이 요구된다고 언급하였다.

황문규(2020a)는 일원화 모형의 문제점에 대하여 시·도의회의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2명의 추천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시·도지사와 같은 정당 소속 의원들 또는 야당도 시·도지사와 정책 노선을 같이하는 의원들로 시·도의회가 구성될 경우, 시·도지사에게 대한 시·도 경찰위원회의 견제 기능이 유명무실화될 수 있다고 언급

하였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시도의회에서 추천하는 2명 중 1명은 시도지사가 속한 정당 이외의 정당에서 추천되도록 해야 하며, 또한 지역주민의 의견이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 1명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2) 국가경찰기관 일원화 및 자치경찰기관 조직 구성 문제

황문규(2020b)는 일원화 모형의 문제점에 대하여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시·도 경찰청장을 통하여 관할구역의” 자치경찰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 및 소속 경찰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지만, 자치경찰관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언급하였다. 즉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관만 있으므로, 자치경찰의 정체성 확보가 곤란하다고 언급하였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소속 경찰관(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지역경비 등)의 신분을 지방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의 신분을 지방직으로 하고, 국가경찰 부서로의 전·출입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하였다. “다만, 시행 초기에는 희망자에 한하여 실시하고, 신규 채용 시 지방직으로 채용하는 과도기적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홍성삼(2021)은 일원화 모형의 문제점에 대하여 현행 「경찰법」은 국가경찰의 지휘·감독을 받는 자치경찰제도의 형태로 운영되게 규정되어 있다고 언급하였다. 즉 현행 일원화 모형의 자치경찰제 상에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은 법조 문상으로는 분리되어 있지만, 실제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운영은 동법상에 명시되어있다고 언급하였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현행 자치경찰제의 일원화 제도를 이원화 제도로 개정하여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산하에 자치경찰본부, 자치경찰대(단), 지구대 및 파출소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림 2-6)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지휘체계도



자료 : 자치분권위원회 홈페이지(<https://pcad.go.kr>). 검색일 2022.06.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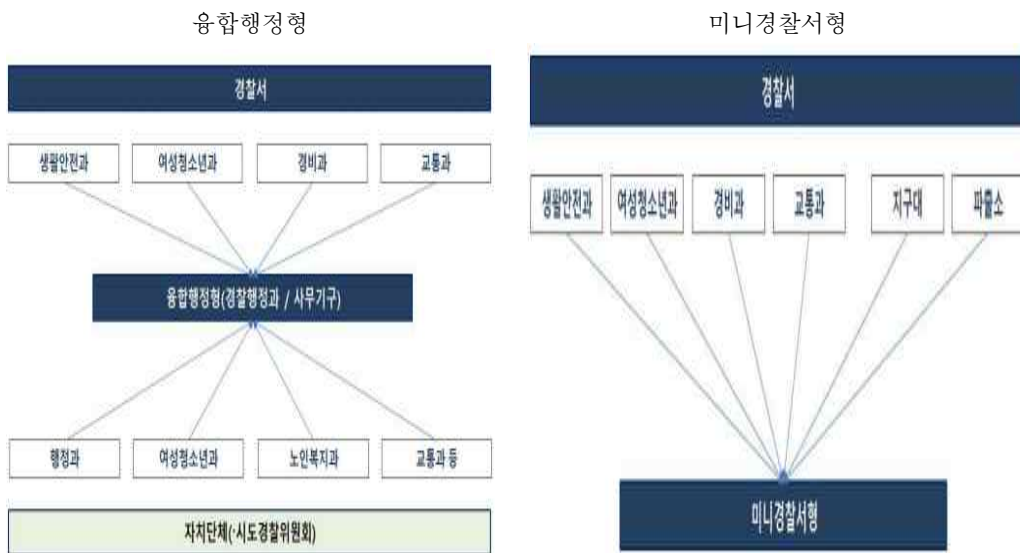
김원중(2021)은 일원화 모형의 문제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경찰조직과 운영권이 부여되지 않는 자치경찰제도 도입을 실행하려 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즉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한다고 하였으나, 경찰기관은 국가경찰기관이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어, 조직구성에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자치권에 의한 권한을 가지지 못하여 지방 자치경찰제도 상의 자치권에 반하는 결과를 가지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법률에서 그에 대한 구체적인 법집행에 대한 근거를” 확보해야 하며,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치경찰기관은 법집행에 대한 법적 근거로 법률에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즉, 자치경찰 사무에 관한 법의 명확성을 높이는 별도의 자치경찰법을 제정하여 자치경찰의 사무 및 조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특히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법의 명확성을 위해서 일원화된 「경찰법」 개정이 아니라 별도의 자치경찰법(안)을 마련하여 자치경찰제도와 사무 등을 정립하는 것이 법률유보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3)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한 자치경찰제 조직구성 문제

신원부(2020)는 일원화 모형의 문제점에 대하여 자치경찰의 특색과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없다고 언급하였다. 즉, 일원화 모형의 조직체계는 기존의 국가 경찰제를 크게 3개 사무(국가, 수사, 자치)로 구분한 모델로 자율성과 책임성 확보, 안전성과 명확성 증진, 협업성과 특수성 반영에 취약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첫째, 자치경찰과 지방행정이 연계된 융합행정기구 설치를 언급하였다. 즉 「경찰법」 개정안에도 시·도 경찰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둘 수 있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치단체 협업과도 관련성이 높은 자치단체 관련 부서와 경찰서 자치경찰 부서를 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부서를 사무기구 형태로 설치하거나 자치단체 내에 부서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자치경찰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현재의 경찰서 - 지구대·파출소” 조직구조를 미니경찰서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 즉, 미니경찰서는 경찰서의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경비 등의 사무를 맡을 필요가 있다.

(그림 2-7) 자치경찰의 특성과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경찰서 조직 변화(안)



자료 : 신원부(2021)의 논문에서 재인용.

2. 자치경찰제의 인사

1) 자치경찰제의 책임자로서 시·도지사의 인사권 부재

고승희 외(2020)는 일원화 모형의 문제점에 대해서 시·도지사에게는 자치경찰 사무의 관리책임은 있으나, 책임에 비하여 실질적 운영을 위한 인사권한이 부족하다고 주장하였다. 즉, 시·도경찰청의 임명은 경찰청장의 추천과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

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으며,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 임명권한도 경찰청장이 위임한 경우에만 가능하게 되어 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자치경찰의 제정 목적 및 자치분권, 경찰 권력의 분산과 지역 치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에게 인사권을 부여해야 하며, 시·도경찰청의 임명을 시·도지사의 추천과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변경하고 시·도 자치경찰 본부장과 경정 이하 자치경찰에 대한 인사권도 시·도지사에게 부여하는 동시에 시·도지사의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권을 확대하고 국가경찰위원회의 추천권을 축소하여 시·도지사의 권한 확대는 물론 국가경찰의 자치경찰 운영 개입 여지를 축소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2)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인사권 강화

이상훈(2022)은 일원화 모형의 문제점에 대해 현행 「경찰법」은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에 대한 인사권의 내용을 경찰청장과 협의하는 것은 시도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자치경찰 사무를 관장하는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시도 경찰청장과 경찰서장에 대한 인사권을 획기적으로 확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즉 시도경찰청장 임용과 관련한 경찰청장과의 협의권을 보다 실질적으로 하기 위하여 전국단위로 실시되는 시도 경찰청장 인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체적인 인사안 조정 단계부터 양측이 함께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서장에 대한 평가 역시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배점 비중을 높여서 실질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개선하여 이를 보다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고승희 외(2020)는 현행 일원화 모형의 문제점에 대해 경찰서장에 대한 시·도지사의 지휘·감독권이 부재하고 단지 경찰서장의 자치경찰 사무 평가를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에 부여하고 그 결과를 경찰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어, 경찰서장의 지휘·감독권한은 시·도경찰청장에게 있고 경찰서와 파출소도 지휘·감독권이 경찰서장과 시·도경찰청장에게 있다. 즉 실질적으로 자치경찰 사무를 관장하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어 현재의 구성 체계는 시·도지사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치안행정을 수행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게 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파출소까지 자치경찰 사무가 포괄적이고 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초자치단체에 이르는 경찰서, 파출소, 지구대 등에도 자치경찰의 사무

가 일관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경찰서장의 임명에서도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협의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등 경찰서 조직에서도 자치경찰 사무를 전담할 수 있는 조직과 근거 규정이 요구되며, 궁극적으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경찰서장이 수행하는 자치경찰 사무에 지휘·감독권을 부여하며,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경찰서장 임명에 관한 사항 협의하도록 하고, 경찰서에 자치경찰 소관사무 전담 부서와 규정을 명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3) 경정 이하의 자치경찰임용권 부재 문제

이재란 외(2021)는 일원화 모형의 문제점에 대하여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지구대장, 파출소장의 인사권은 국가공무원인 시·도청장 및 경찰서장에 있으므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의 인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언급하였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의 승진·임용권을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부여하고,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승진·임용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 경찰청 승진심사위원회의 기능을 이관받을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4)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기구에 전문인력 배치 필요

홍성삼(2021)은 일원화 모형의 문제점에 대하여 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담당 공무원을 두어야 하며, 담당 공무원이 배치되지 않는다면 위원회 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자치경찰위원회와 행정의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사무기구의 조직·정원·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도 조례로 정하며, 자치경찰위원회에 자치경찰 적정인원 배치를 통해 전문성과 현실 적합성을 높이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3. 자치경찰제의 사무

허경미(2021)는 일원화 모형의 문제점에 대하여 현행 「경찰법」은 「지방분권법」의 취지와는 다르게 자치경찰사무의 범위를 매우 강력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즉 현행 「경찰법」 제4조 제1항 제2호는 자치경찰사무를 정의하고 있으며⁸⁾ 제2항 및 제3항은 자치사무 중 수사사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 등

은 대통령령으로, 그 외의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조항은 자치사무에 대한 자치단체의 재량 범위를 매우 제한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자치경찰제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 자치행정권을 존중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를 제한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경찰사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그 외의 것은 자치경찰사무로 본다”라는 내용으로의 「경찰법」 제4조의 개정작업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남재성(2021)은 일원화 모형의 문제점에 대하여 기존 자치경찰사무에는 지역 내 안전사고 및 재해 재난 등으로부터의 주민 보호, 노숙인 주취자 행려병자에 대한 보호조치 관련 업무와 같은 주민친화적인 사무가 제외되어 지방분권에 입각한 자치경찰 사무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언급하였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자치경찰제의 근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각 광역시·도의 조례에 더욱 다양한 자치경찰의 사무가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하였다.

4. 자치경찰제의 재정

홍성삼(2021)은 일원화 모형의 문제점에 대해 현재 자치경찰은 국가경찰의 재원을 사용함에 따라 독립적으로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 즉 「경찰법」 제34조에서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이관 받은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 장비 등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의무를 부여하였지만, 자치경찰의 사무수행에 따르는 재정지원이 법령에 규정하고 있지 않아 원활한 사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분석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자치경찰 시행에 필요한 수준의 재정 여건이 상대적으로 낮은 시나 도에 대해서는 초기에 필요한 자치경찰 인력과 시설·장비 등 총규모를 자치단체 간 재정 여건과 규모를 비교하여 재정지원을 평가하고 조정해줄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황문규(2020a)는 일원화 모형의 문제점에 대하여 현행 「자치경찰법」은 자치경찰제 추진을 위한 자원 조달 등의 방안에 대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모호하다고

8) 자치경찰사무는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 지역 내 교통활동에 관한 사무,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 수사사무(학교폭력 등 소년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범죄, 교통사고 및 교통 관련 범죄, 「형법」 제245조에 따른 공연음란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따른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에 관한 범죄, 경범죄 및 기초질서 관련 범죄, 가출인 및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 아동등 관련 수색 및 범죄로 구성된다.

분석하였다. 특히 자치단체의 재정은 자치단체 간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이어서, 국가에서 재원을 지원하지 않는다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서는 자치경찰제를 순조롭게 도입·운영하기 어렵다고 언급하였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차후 개정안에서 자치경찰제 도입·운영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및 재정 불균형 완화를 위한 재정지원 방안 등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즉, 자치경찰제 재원은 지방소비세 확대·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 지방세입을 확충하는 방안과 「지방교부세법」 개정, 자치경찰교부세 신설 등 교부세를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 및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최길수(2019)는 일원화 모형의 문제점에 대하여 지역별 재정자립도의 큰 차이가 자치경찰의 서비스 차이로 연결될 우려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즉, 기존의 국가경찰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하는 자치경찰제가 자칫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수준의 차이로 인해 특정 지역의 경우에는 기존 국가경찰 시스템보다 치안 서비스 수준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국가 차원의 재원 조달 및 지원방안에 대하여 「경찰법」을 개정하여 구체적인 국가 차원의 재원 조달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즉 자치경찰제가 이원화 방안으로 확대 개편되면 매년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국가의 구체적인 자치경찰 재정 지원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이다.

5. 자치경찰제 선행연구의 종합적 검토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직 측면의 문제점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구성의 문제, 국가경찰기관 일원화 및 자치경찰기관 조직구성 문제,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한 자치경찰제 조직구성 문제로 분석되었다. 우선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구성의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추천권을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이양하는 것이다. 구체적 방안으로 국가경찰위원회 2명 추천권을 시·도지사 몫으로 전환(이상훈, 2022), 시도의회의 2명 추천권 중 1명을 시·도지사에게 전환(황문규, 2020), 모든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추천권을 시·도지사 몫으로 전환하고, 시도지사 산하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을 임용(허경미, 2021)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음으로, 국가경찰기관 일원화 및 자치경찰기관 조직구성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은 자치경찰의 지방직화 및 자치경찰사무 담당 국가직 공무원의 지방직화(황문규, 2020), 자치경찰본부 - 자치경찰대(단)-지구대와 파출소 신설을 통한 자치경찰조직 강화(홍성삼, 2021), 자치경찰조직에 대한 「경찰법」 개정 또는 「자치경찰법」 제정(김원중, 2021)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한 자치경찰제 조직구성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은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융합행정형 및 미니경찰서형 경찰서 도입(신원부,2020) 필요성을 주장한 내용들도 있었다.

<표 2-3> 자치경찰제 조직관련 선행연구

저자	문제점	개선방안
이상훈 (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구성의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경찰위원회 2명 추천권을 시도지사 몫으로 전환
허경미 (20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구성의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추천권을 시도지사 몫으로 함 • 시도지사 산하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을 임용
신현기 (20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구성의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지사의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추천권 강화
황문규 (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구성의 문제 • 국가경찰기관 일원화 및 자치경찰기관 조직구성권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의회의 2명 추천권 중 1명을 시도지사에게 전환 • 자치경찰의 지방직화 및 자치경찰사무 담당 국가직 공무원의 지방직화
홍성삼 (20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경찰기관 일원화 및 자치경찰기관 조직구성권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 자치경찰본부, ii) 자치경찰대(단), iii) 지구대와 파출소 신설을 통한 자치경찰조직 강화
김원중 (20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경찰기관 일원화 및 자치 경찰기관 조직구성권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경찰조직에 대한 경찰법 개정 또는 자치경찰법 제정
신원부 (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한 자치경찰제 조직구성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i) 융합행정형 및 ii) 미니경찰서형 경찰서 도입

둘째, 인사 측면의 문제점은 자치경찰제의 책임자로서의 시·도지사의 인사권 부재 문제,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인사권 강화, 경정 이하의 자치경찰임용권 부재 문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기구에 전문 인력배치 필요성 등이 제안되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우선 자치경찰제의 책임자로서의 시·도지사의 인사권 부재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은 시·도경찰청의 임명을 시·도지사의 추천과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변경, 시·도 자치경찰 본부장 인사권을 시도지사에게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고승희

외, 2020)이 있었다. 다음으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인사권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경찰서-파출소-지구대 중심으로 자치경찰사무 구조를 추진하고(고승희 외, 2020),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할 필요성을 주장(이상훈, 2022)하는 연구가 있었다. 다음으로, 경정 이하의 자치경찰임용권 부재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의 승진·임용권을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게 부여하는 동시에 기존의 경찰청 승진심사위원회의 기능도 시도자치경찰위원회로 이관(이재란 외, 2021)해야 한다는 연구결과도 있었다. 끝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기구에 전문 인력배치 필요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시·도 경찰청장에 의견을 반영하여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기구에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조례의 개정이 필요(홍성삼 2021)하다는 주장도 있었다.

<표 2-4> 자치경찰제의 인사관련 선행연구

저자	문제점	개선방안
고승희 외 (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치경찰제의 책임자로서의 시도지사의 인사권 부재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시도경찰청장 인사권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도경찰청의 임명을 시도지사의 추천과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변경 시도 자치경찰 본부장 인사권을 시도지사에게 부여 경찰서 - 파출소-지구대 중심의 자치경찰사무 구조 추진
이상훈 (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시도경찰청장 인사권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시도 경찰청청장과 경찰서장에 대한 인사권을 획기적으로 확대
이재란 외 (20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정 이하의 자치경찰임용권 부재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의 승진·임용권을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에 부여 기존 경찰청 승진심사위원회의 기능을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로 이관
홍성삼 (20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기구에 전문 인력 배치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도경찰청장에 의견을 반영하여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기구 전문 인력에 관한 조례 개정 필요

셋째, 사무 측면의 문제점으로는 자치경찰사무의 범위가 협소하다는 지적의 연구들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능한 한 국가경찰사무를 축소하고 자치경찰사무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허경미, 2021)이 있다. 다음으로 자치경찰 사무에 지역 안전사고 및 재해 재난 등으로부터의 주민 보호, 노숙인, 주취자, 행려병자에 대한 보호조치와 관련한 업무도 시·도 조례를 통해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남재성, 2021)도 있었다.

<표 2-5> 자치경찰제 사무관련 선행연구

저자	문제점	개선방안
허경미 (20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소적인 경찰 사무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경찰사무의 축소 • 자치경찰사무의 확대
남재성 (20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소적인 경찰 사무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경찰 사무 내 i) 지역 내 안전사고 및 재해 재난 등으로부터의 주민 보호, ii) 노숙인, 주취자, 행려병자에 대한 보호조치 관련 업무 추가

넷째, 재정의 문제점으로는 독립적인 자치경찰제 확립을 위해 재원을 마련할 필요성을 제안하는 연구들이 있었다. 이를 위한 해결방안으로 시·도의 재정환경이 서로 상이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예산 지원 필요성(홍성삼, 2021)을 주장하는 연구와 좀 더 구체적으로 지방소비세 확대, 국세의 지방세 이양, 지방교부세법 개정 및 자치경찰교부세 신설 필요성을 제안(황문규, 2020)하는 연구가 있었다. 끝으로, 「경찰법」 개정을 통한 구체적인 자치경찰 재원 마련책을 제안하는 주장(최길수, 2019)도 있었다.

<표 2-6> 자치경찰제의 재정 관련 선행연구

저자	문제점	개선방안
홍성삼 (20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립적인 자치경찰의 재원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의 재정환경에 따른 국가예산 지원 필요
황문규 (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립적인 자치경찰의 재원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소비세 확대·국세의 지방세 이양 • 지방교부세법 개정, 자치경찰교부세 신설
최길수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립적인 자치경찰의 재원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법 개정을 통한 구체적인 자치경찰 재원 마련

제5절 자치경찰제의 전개 과정

1. 김대중 정부

김대중 정부는 자치경찰제 도입 단위를 시·도인 광역자치단체로 규정하였다. 분야별로는 먼저 조직 측면에서 시·도인 광역자치단체에 시·도 경찰위원회(합의제 행정관청)를 설치하여 시·도 경찰청을 관리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에는 경찰서를 두어 시·도 경찰청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하였다. “다만, 중앙의 경찰청장은 광역자치단체에 설치되어 있는 시·도 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하도록 설계되었다. 경찰청 및 소속기관의 직원 전원과 경정(또는 총경) 이상의 경찰관은 국가공무원으로, 시·도 경찰청 공무원은 지방공무원으로 하되 상호교류가 가능하도록 명시”하였다(조성호, 2021: 13-14). 예산 측면에서 자치경찰제의 소요경비는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지만,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여, 국가가 임의적으로 지원하도록 하였다

<표 2-7> 김대중 정부의 자치경찰제(안)

쟁점	내용	
도입단위	• 광역자치단체	
사무범위	지방 (중앙)	• 명확한 구분 없음
조직	지방	• 시·도 경찰위원회 설치
	중앙	• 경찰위원회 설치
인사	지방	• 경정이하
	중앙	• 경찰청 소속직원 및 경정(또는 총경) 이상
재정확보	• 자치제 부담 원칙이나 재정자립도를 고려, 국가 지원(임의)	

자료 : 조성호 외(2018)에서 재인용.

김대중 정부는 자치경찰제 도입을 민주주의의 근간을 세우는 중요한 일로 여겨 강력하게 추진하였다. 그 당시 논의되었던 안의 특징을 보면 첫째, 도입 단위는 광역자치단체였으며, 자치경찰제 관리는 합의제 기관인 위원회 조직이었다. 둘째, 자치경찰제도는 국가경찰조직의 하나로 인식하여 형식은 분권화된 모습을 취하였지만, 집행은 국가

경찰이 주도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경찰청장 임명은 항상 국가경찰위원회나 경찰청장이 주도하고 있으며, 경찰서장을 비롯한 경정 이상 간부 경찰관들을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한 점 등이 국가경찰 주도의 자치경찰임을 보여주는 실례하고 할 수 있다(양영철, 2021: 171-172). 조직운영권 측면에서 보더라도 지방자치단체는 자치경찰의 운영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이라는 명분 속에 거의 배제되거나, 간접적인 관여만 할 수 있었다.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는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 선출권과 재정부담의 의무만 갖고 있을 뿐 그 밖의 조직 운영에 대한 권한은 철저하게 배제되어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되었다. 무소불위의 자치단체장과 이권 개입에만 관심 있는 지방의원들이 자치경찰에 개입하게 되면 정치적 중립을 유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정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의 개입을 원천적으로 막았던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정치적 중립성과 효율성에 중점을 둔 자치경찰안은 지방자치의 가장 큰 이념이라 할 수 있는 민주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김현소, 1998: 506). 김대중 정부시절의 자치경찰은 점진적 형태인 자치경찰로서 국가경찰의 틀 속에서 자치경찰의 요소를 가미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당시의 자치경찰 논의는 자치경찰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 공감을 높이는데 기여했으며, 노무현 정부에서 자치경찰제가 활발하게 논의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큰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노무현 정부

노무현 정부는 자치경찰제 도입 단위를 시·군·구인 기초자치단체로 규정하였다. 분야별로는 조직 측면에서 자치경찰 상호 간의 업무협조 등을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하에 심의·의결기관인 치안행정위원회를 두었으며, 기초자치단체에는 협의 및 자문기구로 시장·군수·구청장 소속하에 지역치안협의회를 설치토록 하였다. 사무 측면에서 자치경찰은 방범·지역교통·경비사무, 특별사법경찰 직무 총 17개 사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자치경찰의 업무범위 및 방법은 기초단체장과 경찰서장이 협약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자치경찰은 범죄를 발견하면 국가경찰에 인계만 할 뿐 수사권은 인정되지 않았다. 인사측면에서 경찰청 및 소속기관의 직원 전원과 경정(또는 총경)이상의 경찰관은 국가공무원으로, 시·도경찰청 공무원은 지방공무원으로 하되 상호교류가 가능하도록 명시하였다. 예산 측면에서 자치경찰제의 소요경비는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이지만,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여, 국가가 임의적으로 지원하도록 하였다.

<표 2-8> 노무현 정부의 자치경찰제(안)

쟁점	내용	
도입단위	• 기초자치단체	
사무범위	지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안전·지역교통·지역경비 • 지자체 소관 특별사법경찰을 두고, 구체적 사항은 기초단체장과 경찰서장이 협약으로 공표 • 수사권 없음(현행법 즉시 국가경찰에 인계)
	중앙	• 자치경찰 업무 이외의 기존 경찰기능 수행
조직	지방	• 자치경찰대 및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중앙	• 기존 조직 유지
인사	지방	• 자원에 의해 지방경찰공무원에 편입
	중앙	• 기존 인사체계 유지
재정확보	• 자치제 부담 원칙이나, 재정자립도를 고려 국가 지원(임의)	

자료 : 조성호 외(2018)의 연구에서 재인용.

노무현 정부 이전의 자치경찰제 추진 중심은 경찰청이었다. 따라서 자치경찰제 안은 국가경찰제 안에서 운영될 수밖에 없었다(허경미, 2003a: 258-268). 그러나 노무현 정부안은 이러한 경찰청과는 별개로 추진되었다. 그래서 이전 정부의 안보다 쟁점이 될 수밖에 없었다. 즉 자치경찰 도입 단위, 사무, 인사, 재정, 국가경찰과의 관계 등은 기존 정부의 안과는 반대라고 할 정도로 크게 차이가 났다(문성호, 2006; 최종술, 2001). 정치적 중립보다 민주성, 광역자치단체보다 기초자치단체, 의사결정기관의 2원제보다 단일제, 자치경찰공무원은 국가직보다 지방직, 자치경찰공무원의 임면권은 국가보다 자치단체장에게, 자치경찰제 설치의 의무가 아닌 선택제, 국가경찰과의 관계는 수직이 아닌 수평적 관계 등 전반적인 면에서 대비가 되었다(양영철, 2021: 181). 이러한 쟁점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도입 단위에 불만을 가진 광역자치단체인 시·도는 독자적인 법률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기도 하였다.⁹⁾

자치경찰제도는 노무현 정부에서 지방분권의 대표적인 정책 가운데 하나였다. 이 안은 2004년 9월 국정과제로 확정되었고, 2005년 11월 3일에는 「자치경찰법」으로 국회에 제출되었다. 그러나 국회로 법안이 이관된 후 국회에서 한 차례 형식적인 논의만 있었을 뿐 더 이상 진전이 없이 제17대 국회 만기(2008.5.29.)로 인하여 자동 소멸되었다. 비록 노무현 정부의 「자치경찰법」 안은 국회에서 폐기 처리되었지만, 노무현 정부안은 자치경찰제도의 시행을 알리는데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자치경찰제의 전국적인 도입에는 실패했지만 우리나라 최초로 제주특별자치

9)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자치경찰도입 시·도 공동안, 2004.8. (자치경찰법안, 대표발의 유기준 의원, 의안번호 3625, 2005.12.14.)

치도에 자치경찰제를 실시하는 쾌거를 불러왔다. 이 후 노무현 정부안은 이명박 정부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자치경찰제 안에서도 중심 내용이 되었다.

3. 이명박 정부

이명박 정부 역시 자치경찰제 도입 단위를 시·군·구인 기초자치단체로 규정하였다. 광역자치단체에는 '치안행정위원회'를 두어 기초단체의 자치경찰대 간 분쟁조정 및 광역 단체 간 업무 협의 조정을 하도록 하고, 기초자치단체에는 '자치경찰위원회'와 '자치경찰대'를 설치하도록 했다. 사무 측면에서 생활안전, 지역교통, 지역경비 등을 국가경찰과 공동사무로 하고, 특별사법경찰 사무(보건, 주·정차, 위생환경)를 수행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역할 분담에 있어서는 업무협약을 통해 시행하는 자치경찰제(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자치경찰은 범죄를 발견하면 국가경찰에 인계만 할 뿐 수사권은 인정되지 않았다. 인사측면에서 경찰청 및 소속기관의 직원 전원과 경정(또는 총경) 이상의 경찰관은 국가공무원으로, 시·도 경찰청 공무원은 지방공무원으로 하되 상호교류가 가능하도록 명시하였다. 예산측면에서 재정은 자치경찰을 설치한 기초단체는 필요한 경비를 범칙금 등으로 조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도록 하였다.

<표 2-9> 이명박 정부의 자치경찰제(안)

쟁점	내용	
도입단위	• 기초자치단체	
사무범위	지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안전·지역교통·지역경비 • 지자체 소관 특별사법경찰(보건·주정차·위생환경) • 수사권 없음(현행법 즉시 국가경찰에 인계)
	중앙	• 자치경찰 업무 이외의 기존 경찰기능 수행
조직	지방	• 자치경찰대 및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중앙	• 자치경찰 업무 이외의 기존 경찰기능 수행
인사	지방	• 기존 조직 유지
	중앙	• 자원에 의해 지방경찰공무원에 편입
재정확보	• 범칙금으로 마련, 국가 일부 지원(의무)	

자료 : 조성호 외(2018)의 연구에서 재인용.

4. 박근혜 정부

박근혜 정부 역시 자치경찰제 도입 단위를 기초자치단체로 규정하였다. 분야별로는 조직 측면에서 시·군·구에 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하고,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인사 교류, 분쟁조정 등을 위해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사무는 주민 밀착형 사무(방법·질서유지·교통소통 관리, 학교폭력·성폭력·가정폭력 등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 특별사법경찰 사무(식품·환경·공중위생·농축산물 분야, 지적재산권 침해·무면허 운수사업 단속)로 나누어 명시하였다. 인사측면에서 시·군·구에 자치경찰단을 설치하며, 자치경찰의 단장은 개방형 직위로 하고 규모에 따라 자치 총경 또는 자치 경정으로 임명하였다. 자치경찰단장의 경우는 광역자치단체에 단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후보 3명을 추천하면 기초자치단체장이 자치경찰단장을 임명하였다. 필요 예산은 지방소비세 규모를 확대하고 과태료의 징수 이관과 징수교부금제를 도입하고, 자치경찰의 단속 범칙금은 자치단체에 귀속시키는 등 국민에게 부담이 없도록 증세 없는 방안을 강구하였다.

<표 2-10> 박근혜 정부의 자치경찰제(안)

쟁점	내용	
도입단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자치단체 	
사무범위	지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법·질서유지·교통소통 관리 • 학교폭력·성폭력·가정폭력 등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 • 식품·환경·공중위생·농축산물 분야 • 지적재산권 침해·무면허 운수사업 단속 등
	중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경찰 업무 이외의 기존 경찰기능 수행
조직	지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경찰대 및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중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경찰 업무 이외의 기존 경찰기능 수행
인사	지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조직 유지
	중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에 의해 지방경찰공무원에 편입
재정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소비세 규모를 확대, 과태료의 징수 이관과 징수교부금제 도입 • 범칙금으로 자치단체에 귀속 	

자료 : 조성호 외(2018)의 연구에서 재인용.

5. 문재인 정부

1) 도입논의

문재인 정부의 자치경찰 도입과정은 검찰개혁으로 시작되었다. 즉 검찰개혁이 경찰개혁을 불러왔고, 경찰개혁은 자치경찰 실시를 요구하는 목표와 수단의 연계 현상(goal-means chain)이 발생한 것이다. 2020년 6월까지 문재인 정부의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공식적인 안은 이원화 모델이었다. ‘홍익표 안’이라고 불리던 이원화 모형은 제주자치경찰단에서 제주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이원화 모형을 확대 시범 시행을 계속하고 있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자치경찰제도 도입을 실질적으로 주도했던 기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자치경찰분과위원회, 경찰청, 시도지사협의회(이를 ‘4단체 협의회’라 부름)이다. 이원화 모형이 이들 4단체 협의회에서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원화 모형으로 전환된 이유는 크게 3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이를 상술하면 다음과 같다(양영철, 2021: 265-267).

첫째, 재정 부담이다. 당시 재정 상황이 코로나로 인하여 세수는 대폭 줄고, 세출은 많이 늘어나는 추세로 상당한 재정적자가 지속하고 있어, 이런 시기에 자치경찰의 이원화 모형 실시로 추가 소요가 예상되는 3조 5천억원은 당시 문재인 정부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둘째, 일선 기관의 혼란이다. 이원화는 새로운 조직에 새로운 사람들에 의하여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것이기에 일시적인 혼란이 불가피하였으며, 기존 국가경찰 조직과 경찰관이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게 된다면 일선 기관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되었다.

셋째, 이원화 모형의 도입으로 추가 발생하는 대대적인 경찰의 승진 인사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다. 43,000명의 자치경찰 요원이 국가기관에서 자치단체로 이관되게 되면 많은 자리가 생겨나고, 이로 인해 대대적인 경찰승진이 일어나는 것이 명약관화(明若觀火)했다. 당시 COVID-19로 다른 부처는 고군분투하는데 경찰만 잔치하는 듯이 보이면 국정운영에 큰 부담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여당은 2020년 7월 권력개혁을 위한 당·정·청 협의회에서 자치경찰제를 일원론 모형으로 변경하였다. 당·정·청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과도해진 경찰 권력을 분산하기 위해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로 했고, 별도의 자치경찰 조직을 신설하는 기존의 이원화 모형과 달리 광역단위 시·도 경찰청과 기초단위 경찰서 조직을 일원화하는 것이 골자였다. 일원화 모형을 채택·실시할 경우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준비를 최소화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어찌 보면 단순히 자치경찰제를 실시·시행하는데 만족했다고 할 수 있다.

2) 사무 분야 및 수행

국가경찰 사무는 경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자치경찰 사무 제외), 자치경찰 사무는 관할지역의 생활안전·교통·다중행사 관리·수사 등 경비로 구분되고, 자치경찰 사무의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규정하였다.

<표 2-11> 경찰법상 자치경찰의 사무 분야

구분	사무의 종류
생활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안정을 위한 순찰 및 시설의 운영 • 주민참여 방법활동의 지원 및 지도 • 안전사고 및 재해·재난 시 긴급구조 지원 •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업무 및 가정폭력·학교폭력 등 소년범죄·공연음란,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 등의 예방 • 지역 내 노숙인·주취자·행려병자에 대한 보호조치 관련업무 • 주민의 일상생활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 및 그 위반행위의 지도·단속, 다만 지자체 등 다른 행정청 사무 제외 • 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
교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지도·단속 • 교통안전시설 및 무인교통 단속용 장비의 심의·설치·관리 •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 및 홍보 • 주민참여 지역 교통활동의 지원 및 지도 • 통행 허가,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 긴급자동차의 지정 신청 등 각종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무
경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공청사에 대한 경비 • 지역축제 등 각종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자료 : 경찰법(2020).

국가·자치·수사사무는 각각 경찰청장·시·도 자치경찰위원회·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수행한다. 국가경찰 사무는 시·도경찰청장이 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수행하고, 자치경찰 사무는 시·도경찰청장이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이하에서는 시·도경찰위원회로 함)의 지휘·감독을 받아 수행한다. 국가경찰 사무와 자치경찰 사무 중 수사사무는 국가수사본부장이 지휘·감독을 하도록 한다.

<표 2-12> 자치경찰 사무 중 수사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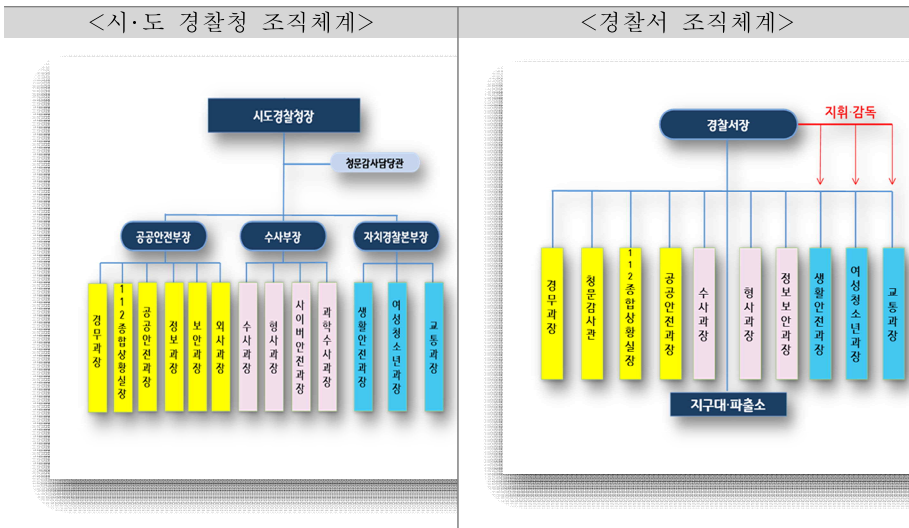
- 공연음란,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
- 가정폭력범죄, 아동학대 범죄,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
- 교통사고 및 교통관련 범죄
- 가출인·실종아동 등 관련 수색·수사
- 경범죄 및 기초질서 관련 범죄

자료 : 경찰법(2020).

3) 조직 및 인사

국가경찰 조직으로 경찰청을 두고, 시·도경찰청, 경찰서 등 일선 경찰기관을 지역적 분장 기관으로 구분한다. 그리고 경찰수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경찰청장 소속으로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한다. 또한 경찰사무의 지역적 분장을 위해 지방경찰청을 시·도 경찰청으로 변경한다. 즉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경찰청, 시·도경찰청 소속으로 경찰서를 설치하고, 지구대·파출소는 현재와 같이 경찰서장 소속으로 설치한다.

(그림 2-8) 시·도 경찰청 및 경찰서 조직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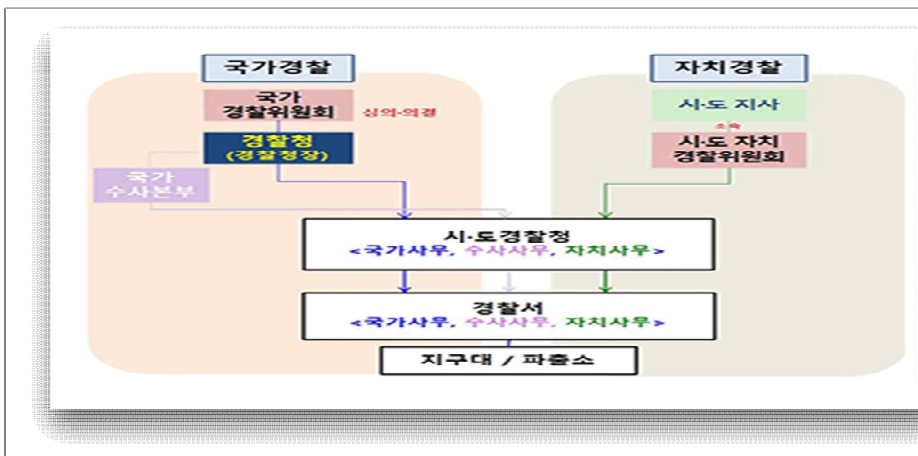
자료 : 조성호 외(2020)의 연구에서 재인용.

시·도 경찰청은 국가사무를 담당하는 공공안전부, 수사사무를 담당하는 수사부, 자치사무를 담당하는 자치경찰부로 나누어 조직된다. 세부적으로 국가사무 부서는 경무과,

청문감사관, 112종합상황실, 공공안전정보고 나뉘지고, 수사사무 부서는 수사과, 형사과로 나뉘고, 자치사무 부서는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과, 교통과로 나뉘진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경찰 조직은 시·도지사 소속으로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하여 자치경찰 사무를 관장한다.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위원장 및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하여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회 구성 방법으로는 시·도지사가 1명 지명, 시·도의회 2명, 국가 경찰위원회 1명, 시·도 교육감 1명, 위원 추천위원회 2명을 추천한다. 심의·의결사항은 자치경찰 사무 관련 예산, 장비 등 주요 정책 등이며, 자치경찰 사무와 관련된 중요 사건·사고 및 현안 점검, 자치경찰 사무에 관한 규칙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등이다. 또한 시도 경찰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한 사무기구를 설치하고, 관련법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시·도경찰청장 임명은 시·도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고 경찰청장이 추천, 행안부장관 제청 후,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였다. 지휘·감독체계로 국가경찰 사무는 경찰청장, 자치경찰 사무는 시·도경찰위원회, 수사사무는 국수본부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하였다. 그러나 경찰서장은 국가·자치경찰 사무 구분 없이, 시·도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무를 수행한다. 자치경찰 사무 경찰관의 신분은 국가직 유지하고, 현 계급과 같이 일원화된 계급 체계를 유지한다. 그리고 대통령령에 따라, 경찰청장이 임용권의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고, 시·도지사는 시·도경찰위원회, 시·도경찰청장에게 다시 위임이 가능하다(경찰청장으로부터 시·도지사, 그리고 시·도경찰위원회, 시·도경찰청장).

(그림 2-9) 경찰법상의 경찰조직



자료 : 대통령소속 자치분권 홈페이지. “<https://www.pcad.go.kr>” (2021.06.30. 접속).

4) 재정지원 및 예산 등

자치경찰 사무 관련 국가는 지자체가 이관 받은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장비 등 소요 비용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자치경찰의 예산은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 시·도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도지사가 수립한다.

제3장 연구 설계

제1절 연구모형의 설정

1. 연구모형의 설정

본 연구는 앞(제2장)에서 자치경찰제의 개념 및 필요성, 자치경찰제의 도입 논의 및 모형, 선진국 자치경찰제도 사례분석, 자치경찰제 선행연구 등을 살펴보았다. 현재까지 자치경찰제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자치경찰제 실태와 문제점 분석,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등 규범적인 수준에서 단순 나열식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부분적인 연구들이다. 그 이유는 자치경찰제 자체의 이론들이 빈약하고, 자치경찰제가 시행된 지 1년이 되지 않아 학자들의 연구 기회가 적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제도주의나 행태주의 이론에 근거하여, 자치경찰제의 실태와 문제점 분석, 개편방안을 위한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경찰공무원의 인식을 분석·평가하여 자치경찰제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편방안을 제시하는 실증적 연구가 시급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치경찰제 자체의 이론적 빈곤을 탈피하여,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현행 우리나라 자치경찰제의 실태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도입하기 위해 제도주의 이론을 차용하여 연구모형을 설정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제도주의를 살펴보면, 1880년대 이후 구제도주의는 제도(공식적 법령과 기구)에 대한 정태적 분석을 통하여 우선 현실 제도에 대한 단순 기술, 정부 시스템 전체를 기술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의 신제도주의는 제도(공식적 법령과 기구, 사회 내 공유 규범)를 통하여 정치·행정·사회현상을 설명하고, 제도와 행위자 간 상호작용을 분석하였다. 따라서 신제도주의는 공식적인 제도를 단순히 기술하는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제도가 행위자의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제도적 맥락 아래에 있는 행위자의 행위를 설명하는 수준까지 나아간다.

우선 신제도주의 이론에서의 제도는 공식적 법령과 기구 및 사회 내 공유 규범으로 정의된다(손정수, 2021). 예를 들어, 법령에 명시된 중앙정부의 조직 및 인사, 자치경찰의 조직 및 인사, 사무 등이 있다. 다음으로 행위자는 제도와 환경에 영향을 받는 객체이면서, 성과를 내는 주체로서 정의된다(김운권, 2005). 예를 들어, 법령에 정의된 중앙정부의 조직·인사 제도에 대한 경찰공무원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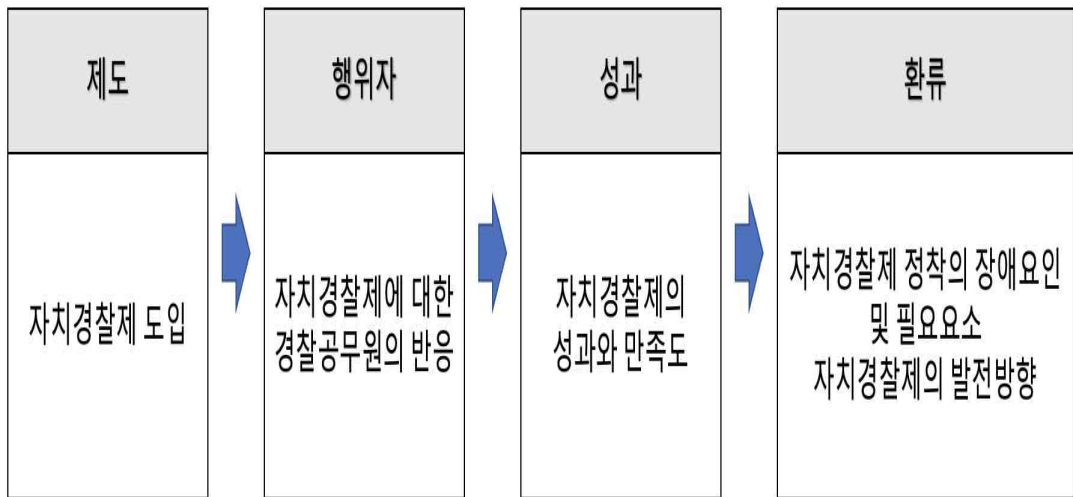
<표 3-1> 구제도주의와 신제도주의 비교

구분	구제도주의	신제도주의
시대	• 1880년대 이후	• 1980년대 이후
제도의 개념	• 공식적 법령과 기구	• 공식적 법령과 기구 및 사회 내 공유 규범
연구방식	• 현실의 제도에 대한 단순 기술 • 정부 시스템 전체를 기술	• 제도를 통한 정치·행정·사회현상을 설명 • 개별절차와 제도의 구성요소에 초점
제도의 형성	• 외생적 요인에 의해 결정	• 제도와 행위자 간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
제도 연구	• 존재하는 제도에 대한 정태적 분석	• 제도 발생과 변화 과정에 대한 동태적 분석

자료 : 손정수(2021)의 연구에서 재인용.

신제도주의는 제도의 형성과정을 제도와 행위자 간의 인과 작용이라고 정의하고 있다(손정수, 2021). 즉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자치경찰제도가 소속 공무원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제도(자치경찰제 도입)가 행위자에 영향(자치경찰제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반응)을 미치며, 행위자는 성과에 영향(자치경찰제의 성과와 만족도)을 미친다고 정의할 수 있다. 그리고 자치경찰제의 성과는 자치경찰제의 개편방향으로 환류된다. 여기에서는 자치경찰제의 환류로서 자치경찰제의 개편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인 자치경찰제 정착의 장애요인, 자치경찰제 정착의 필수요소, 자치경찰제 발전방향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그림 3-1) 본 연구의 분석모형



2. 분석항목의 설정

연구모형에서 제시한 제도(자치경찰제의 조직·인사, 사무), 행위자(자치경찰제 전반, 조직·인사, 대외적 관계, 치안서비스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반응), 성과(자치경찰제의 조직 관점, 대외적 관계, 치안서비스 관련 성과 및 만족도), 환류(자치경찰제의 장애요인, 정착의 필요요소, 발전방향)를 측정하기 위한 분석항목은 제2장에서 제시한 다양한 논의에 근거하여 구성하였다.

1) 제도 : 자치경찰제의 도입

자치경찰제도의 도입으로 경찰공무원들의 업무 범위가 영향을 받게 되며,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인사 시스템의 변화 등 근로조건 변화에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자치경찰제 조직·인사에 관한 자치경찰 담당 공무원의 인식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자치경찰위원회 조직과 경찰공무원에 대한 인사권한에 관한 인식을 항목으로 선정하였다.

자치경찰위원회 조직은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및 방식의 중립성,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다양성, 사회적 약자 대표성, 자치경찰 정책 수립 및 평가, 인사, 감사, 국가경찰과 조정 등 전문성을 선정하였다. 경찰공무원 인사권한은 시·도지사의 경찰공무원 인사권 강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경찰공무원 인사권 강화, 경찰조직에 대한 통제는 지방의회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 통제권 강화, 시민에 대한 통제장치 마련을 선정하였다.

<표 3-2> 자치경찰제 조직·인사제도

구분	주요내용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①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및 방식의 중립성 ②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다양성 ③ 사회적 약자 대표성 ④ 자치경찰 정책 수립 및 평가, 인사, 감사, 국가경찰과 조정 등 전문성
경찰공무원에 대한 인사권한	① 시·도지사의 경찰공무원 인사권 강화 ②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경찰공무원 인사권 강화
경찰조직에 대한 통제	① 지방의회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 통제권 강화 ② 시민에 대한 통제장치 마련

경찰사무는 크게 국가경찰 사무와 자치경찰 사무로 구분되며, 국가경찰 사무는 경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가 중심이며, 자치경찰사무는 관할 지역의 생활 안전·교통·다중행사 관리·수사 등 경비로 구분된다. 자치경찰제하에서 사무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가와 어떠한 중요한 사무의 영역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사무수준과 주요항목별 세부사무의 중요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표 3-3> 자치경찰제 사무수준 및 세부사무별 인식

구분		주요내용
사무수준		①창의/자율적인 치안업무 가능 ②자치경찰사무 범위 적정성 ③지방행정업무 전가 가능성 ④국가경찰과 효과적인 연계 ⑤지방행정과 효과적인 연계
주요 사무	생활안전	①생활안전 순찰 및 시설운영 ②주민참여 방법활동 지원 및 지도 ③안전사고 및 재난사고 긴급구조 ④사회질서유지 및 위반행위 지도단속 ⑤기타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사무
	교통	①교통법규 위반 지도단속 ②교통안전시설, 무인단속 장비 심의 관리 ③교통안전교육 및 홍보 ④주민참여 지역교통활동 지원 및 지도 ⑤통행허가,어린이통학버스,긴급자동차 등 허가 및 신고사무
	약자보호	①아동, 청소년, 노인, 여성 등 성폭력 예방활동

사무 수준은 창의/자율적인 치안업무 가능, 자치경찰사무 범위 적정성, 지방행정업무 전가 가능성, 국가경찰과 효과적인 연계, 지방행정과 효과적인 연계를 선정하였다. 주요사무는 생활안전사무와 관련하여 생활안전 순찰 및 시설운영, 주민참여 방법활동 지원 및 지도, 안전사고 및 재난사고 긴급구조, 사회질서유지 및 위반행위 지도단속, 기타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사무를 선정하였다.

교통사무와 관련하여 교통법규 위반 지도단속, 교통안전시설, 무인단속 장비 심의 관리, 교통안전교육 및 홍보, 주민참여 지역교통활동 지원 및 지도, 통행허가, 어린이통학버스, 긴급자동차 등 허가 및 신고사무를 선정하였다. 사회적 약자 보호 사무와 관련하여 아동, 청소년, 노인, 여성 등 성폭력 예방활동을 선정하였다.

2) 행위자 :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반응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분석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조직 관점, 대외적 관계, 치안서비스를 항목으로 선정하였다. 조직 관점은 시도자치경찰위의 새로운 권력기관화, 지자체 재정지원 별도 필요,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경찰의 선호도 증가를 선정하였다. 대외적 관계는 경찰권력 분산, 경찰의 정치적 중립 향상, 국가/자치경찰간 원활한 업무협조, 경찰행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지역주민간 의사소통 증진, 경찰의 투명성 강화를 선정하였다. 치안서비스는 지역사회 치안서비스 향상, 지역특색에 맞는 치안정책 제공, 지역 토착비리 근절효과, 지방행정과 연계된 종합서비스 제공, 시민의 경찰신뢰 향상, 기존 국가경찰서비스와 차별화를 선정하였다.

<표 3-4>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인식 항목

구분	주요내용
조직 관점	① 시도자치경찰위의 새로운 권력기관화 ② 지자체 재정지원 별도 필요 ③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경찰의 선호도 증가
대외적 관계	① 경찰권력 분산 ② 경찰의 정치적 중립 향상 ③ 국가/자치경찰간 원활한 업무협조 ④ 경찰행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⑤ 지역주민간 의사소통 증진 ⑥ 경찰의 투명성 강화
치안서비스	① 지역사회 치안서비스 향상 ② 지역특색에 맞는 치안정책 제공 ③ 지역 토착비리 근절효과 ④ 지방행정과 연계된 종합서비스 제공 ⑤ 시민의 경찰신뢰 향상 ⑥ 기존 국가경찰서비스와 차별화

그리고 자치경찰제의 조직·인사제도가 경찰공무원의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고자 한다. 즉, 새로이 도입된 자치경찰제 조직·인사제도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반응을 위협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우선 조직 관점에서 지휘체계 중

복 및 혼선, 시도자치경찰위의 개입 증가, 승진/전보 등 인사 혼란, 부서 내 자치/국가 사무 혼재로 업무혼선, 직원들의 자치사무 기피, 승진/전보 등 직원 줄서기 현상 발생, 지자체의 경찰에 대한 업무 이관을 선정하였다. 대외적 관계는 국가/자치경찰 간 업무 혼선, 국가/자치경찰 간 협조 부족, 지자체장의 개입 증가, 국가경찰청장의 자치경찰 개입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치안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 간 경찰서비스 불균형을 선정하였다.

<표 3-5> 자치경찰제 조직·인사제도에 대한 경찰공무원 반응

구분	주요내용
조직 관점	① 지휘체계 중복 및 혼선 ② 시도자치경찰위의 개입 증가 ③ 승진/전보 등 인사 혼란 ④ 부서 내 자치/국가 사무 혼재로 업무혼선 ⑤ 직원들의 자치사무 기피 ⑥ 승진/전보 등 직원 줄서기 현상 발생 ⑦ 지자체의 경찰에 대한 업무 이관

<표 3-6> 자치경찰제 조직·인사제도에 대한 경찰공무원 반응

구분	주요내용
대외적 관계	① 국가/자치경찰 간 업무 혼선 ② 국가/자치경찰 간 협조 부족 ③ 지자체장의 개입 증가 ④ 국가경찰청장의 자치경찰 개입
치안서비스	① 지방자치단체 간 경찰서비스 불균형

3) 성과 및 결과 : 자치경찰제의 성과 및 만족도

자치경찰제도 도입 목적은 대국민 치안서비스 개선을 위한 것으로 국민들에게 현재보다 더 높은 수준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조직 관점에서 자치경찰제의 성과 및 만족도를 분석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자치경찰제

업무수행의 성과와 자치경찰제 업무수행 만족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대외적 관계는 치안서비스 정치적 중립성 향상, 시민과의 유대 강화를 선정하였다. 치안서비스는 치안서비스 정합성 향상, 치안서비스 능률성 제고, 치안서비스 민주성 강화, 치안서비스 책임성 향상, 치안서비스 신속성 향상, 중대/긴급사건 발생 시 대응역량 강화, 지역주민의 치안만족도 향상 등 일곱 가지를 선정하였다.

<표 3-7> 자치경찰제의 성과 및 만족도

구분	주요내용
조직 관점	① 자치경찰제 업무수행 만족 ② 종합적 성과 높게 인식
대외적 관계	① 치안서비스 정치적 중립성 향상 ② 시민과의 유대 강화
치안서비스	① 치안서비스 정합성 향상 ② 치안서비스 능률성 제고 ③ 치안서비스 민주성 강화 ④ 치안서비스 책임성 향상 ⑤ 치안서비스 신속성 향상 ⑥ 중대/긴급사건 발생 시 대응역량 강화 ⑦ 지역주민의 치안만족도 향상

4) 환류 : 자치경찰제 발전방향

자치경찰제도의 발전을 논하기 위해서는 자치경찰제의 정착을 방해하는 장애요인에 대한 검토와 제도의 정착을 위해 필요한 요소에 대한 논의가 우선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실제적으로 자치경찰제도가 발전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착의 장애요인은 조직 관점에서 지방행정사무를 치안행정업무로 전가 가능성, 재정적 여건 미흡, 자치경찰위원회 전문성 부족, 자치경찰위원회 권한 제한 및 역할 불분명, 구성원의 인식부족 등 다섯 가지를 선정하였다. 대외적 관계에서 국가경찰신분으로 자치경찰사무 수행, 지방행정과 연계 미흡,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한계, 이전과 변화 없는 현장경찰의 가동시스템 등 네 가지를 선정하였다.

<표 3-8> 자치경찰제 정착의 장애요인

구분	주요내용
조직 관점	① 지방행정사무를 치안행정업무로 전가 가능성 ② 재정적 여건 미흡 ③ 자치경찰위원회 전문성 부족 ④ 자치경찰위원회 권한 제한 및 역할 불분명 ⑤ 구성원의 인식부족
대외적 관계	① 국가경찰신분으로 자치경찰사무 수행 ② 지방행정과 연계 미흡 ③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한계 ④ 이전과 변화 없는 현장경찰의 가동시스템

자치경찰 정착의 필요요소는 조직 관점에서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구성 다양성 강화, 자치경찰 인사, 평가 및 지휘감독 관계 재정립, 자치경찰사무 관련 체계화된 교육과정 및 교육기관 신설, 기초자치단체(경찰서)에도 자치경찰 도입,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예산의 지자체 수립, 자치경찰관의 지방직 공무원 전환 등 여섯 가지를 선정하였다. 대외적 관계에서 자치경찰에 대한 홍보, 국가/자치경찰의 명확한 업무기준, 지자체/자치경찰 간 인사교류를 선정하였다.

<표 3-9> 자치경찰제 정착의 필요요소

구분	주요내용
조직 관점	①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구성 다양성 강화 ② 자치경찰 인사, 평가 및 지휘감독 관계 재정립 ③ 자치경찰사무 관련 체계화된 교육과정 및 교육기관 신설 ④ 기초자치단체(경찰서)에도 자치경찰 도입 ⑤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예산의 지자체 수립 ⑥ 자치경찰관의 지방직 공무원 전환
대외적 관계	① 자치경찰에 대한 홍보 ② 국가/자치경찰의 명확한 업무기준 ③ 지자체/자치경찰 간 인사교류

자치경찰제 발전방향은 조직 관점에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인력 증가 필요,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경찰활동 정보 및 자료 충분성, 자치경찰채용 방식 다양화

필요, 자치경찰공무원 후생복지 강화 필요를 선정하였다. 대외적 관계에서 자치경찰위원회 실무협의회 운영 효과성, 자치경찰 예산사업까지 참여예산제 범위 확대를 선정하였다.

<표 3-10> 자치경찰제의 발전방향

구분	주요내용
조직 관점	①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인력 증가 필요 ②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경찰활동 정보 및 자료 충분성 ③ 자치경찰채용 방식 다양화 필요 ④ 자치경찰공무원 후생복지 강화 필요
대외적 관계	① 자치경찰위원회 실무협의회 운영 효과성 ② 자치경찰 예산사업까지 참여예산제 범위 확대

제2절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1.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1) 자료수집

본 연구의 모형분석을 위한 설문조사 조사지역은 광주광역시(광주자치경찰위원회, 광주경찰청, 동부/북부/서부 경찰서), 전라북도(전라북도자치경찰위원회, 전라북도경찰청, 전주완산/정읍/부안 경찰서), 전라남도(전라남도자치경찰위원회, 전라남도경찰청, 광양/영광 경찰서)의 자치경찰위원회, 시·도 경찰청, 일선 경찰서 등을 대상으로 하였다. 각 지역별로 250부씩 총 750부를 우편 및 이메일(e-mail)로 발송하여 자기 기입 후 회수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수행하였다.

설문조사 기간은 2022년 3월 28일부터 4월 4일까지 8일간 진행되었으며, 총 75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605부(80.7%)가 회수되었으나, 설문응답의 신뢰성에 의문이 되는 7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597부를 분석에 활용했다. 즉 광주광역시는 194명, 전라북도는 238명, 전라남도는 165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자치경찰위원회는 52명, 시·도 경찰청은 117명, 일선 경찰서는 428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표 3-11> 설문지 배포 및 회수율

구분	배포	회수	회수율
광주광역시	250	199	79.6
전라북도	250	240	96.0
전라남도	250	166	66.4
합계	750	605	80.7

<표 3-12> 설문조사 지역 및 조직유형 개요

구분	분석대상		자치경찰 위계					
			자치경찰위원회		시·도 경찰청		일선 경찰서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광주광역시	194	32.5	27	51.9	51	43.6	116	27.1
전라북도	238	39.9	14	26.9	28	23.9	196	45.8
전라남도	165	27.6	11	21.2	38	32.5	116	27.1
합계	597	100.0	52	100.0	117	100.0	42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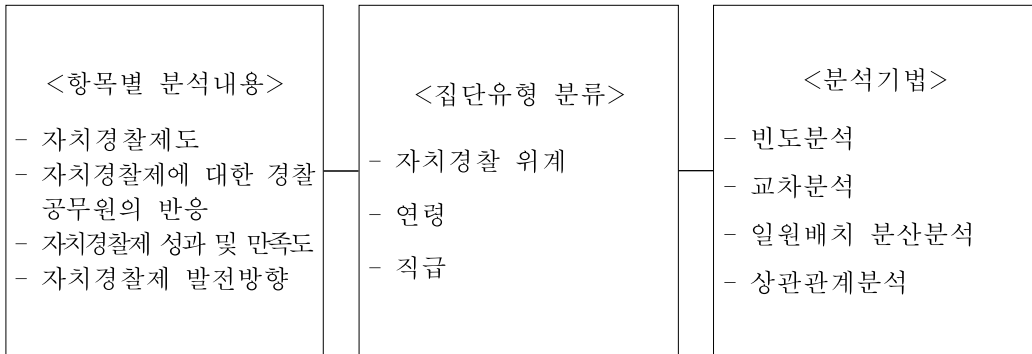
2) 분석방법

최종으로 채택된 총 597부의 설문지를 활용하여 SPSS 21.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에 이용한 통계기법은 기술 통계분석, 교차분석,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통계분석기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림 3-2)와 같다.

첫째, 각 분석항목별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빈도분석과 같은 기술 통계분석을 수행하였다. 둘째, 지역 유형과 자치경찰 위계와 같은 조직의 범주에 따른 유형과 경찰공무원 개인의 개인적 특성에 해당하는 연령, 직급에 따른 유형분류를 수행하였다. 셋째, 이들 유형별 분석항목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교차분석과 분산분석

(ANOVA)을 수행하였다. 넷째, 자치경찰제도 인식, 위협요인과 성과와 만족도 간의 관계, 자치경찰제도 인식, 유형요인과 조직구성 및 역할의 관계, 성과와 만족도, 조직구성 및 역할과 발전방향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 각 분석항목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수행한다.

<표 3-13> 자치경찰제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분석방법



2.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집단유형분류

1)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분석대상 응답자의 특성 중 자치경찰제 하에서 조직구성원으로서의 특성에 대해 살펴보면, 현재 신분이 경찰공무원 545명(91.3%), 자치단체 공무원 51명(8.7%)로 나타났다. 현재 근무지는 시·도 경찰청 본청 110명(20.3%), 일선경찰서 본서 214명(39.6%), 지구대/파출소 196명(36.2%),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 21명(3.9%)로 나타났다. 가장 오랫동안 수행한 업무로는 생활안전활동 283명(52.5%), 교통안전활동 86명(16.0%), 혼잡질서유지 등 경비 86명(16.0%), 사회적 약자보호활동 87명(16.1%), 기타(경무, 수사, 정보, 보안, 형사 등) 60명(11.1%)로 나타났다.

개인적인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면, 연령은 51-55세 132명(22.3%), 46-50세 126명(21.3%), 41-45세 124명(20.9%) 순으로 나타났으며, 학력은 대졸 404명(68.1%), 고졸 108명(18.2%), 전문대졸 61명(10.3%) 순으로 나타났다. 근무경력은 21-25년 145명(24.5%), 16년-20년 109명(18.4%), 26년 이상 102명(17.2%) 순으로 나타났다.

<표 3-14>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현재 신분	경찰공무원	545	91.3	연령	30세 이하	27	4.6	
	자치단체 공무원	52	8.7		31-35세	56	9.5	
	합계	597	100.0		36-40세	90	15.2	
현재 수행 사무	시도 경찰청 본청	114	21.4		41-45세	124	20.9	
	일선 경찰서	199	37.4		46-50세	126	21.3	
	경찰서 소속	192	36.1		51-55세	132	22.3	
	자치경찰위원회	27	5.1		56세 이상	37	6.3	
	합계	532	100.0		합계	592	100.0	
현재 근무지	시도 경찰청 본청	110	20.3		근무 경력	5년 이하	58	9.8
	일선경찰서 본서	214	39.6			6년-10년	93	15.7
	지구대/파출소	196	36.2			11년-15년	86	14.5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	21	3.9			16년-20년	109	18.4
	합계	541	100.0			21년-25년	145	24.5
가장 오래 수행 업무	생활안전활동	283	52.5			26년 이상	102	17.2
	교통안전활동	86	16.0			합계	593	100.0
	혼잡질서유지 등 경비	23	4.3	직급	경위이하	423	71.5	
	사회적 약자보호활동	87	16.1		경감	97	16.4	
	기타	60	11.1		경정	20	3.4	
합계	539	100.0	사무관이하		51	8.6		
학력	고졸	108	18.2		서기관이상	1	.2	
	전문대졸	61	10.3	합계	592	100.0		
	대졸	404	68.1					
	대학원졸	20	3.4					
	합계	593	100.0					

2) 집단유형 분류

집단유형별 특성은 조직의 구조적 특성에 따른 소속 지역과 자치경찰 위계, 개인적 특성에 따른 연령과 직급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소속 지역은 지역 간 경찰행정이 관행과 치안서비스의 수준 차이가 존재할 것으로 예상하여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도 재분류하였으며, 자치경찰 위계는 경찰행정 관련 조직, 사무, 인력, 예산 등에 자치경찰 위계별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여 자치경찰위원회, 시·도 경찰청, 일선 경찰서로 재분류하였다. 개인적 특성에 따라 연령은 40세 이하, 41세-50세, 51세 이상 등 3계층으로 재분류하였으며, 직급은 경위 이하, 경감/경정, 일반 공무원 등 3계층으로 재분류하였다.

<표 3-15> 집단유형 분류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지역	광주광역시	194	32.5	연령	40세 이하	173	29.2
	전라북도	238	39.9		41-50세	250	42.2
	전라남도	165	27.6		51세 이상	169	28.5
	합계	597	100.0		합계	592	100.0
위계	자치경찰위원회	52	8.7	직급	경위이하	423	71.5
	시/도경	117	19.6		경감/경정	117	19.8
	일선경찰서	428	71.7		일반공무원	52	8.8
	합계	597	100.0		합계	592	100.0

제4장 분석결과 및 논의

제1절 기초분석결과

1. 제도 : 자치경찰제도 관련 분석결과

1)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인식

자치경찰제도 중 자치경찰위원회 조직을 살펴본 결과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및 방식의 중립성”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26.4%, ‘그렇다’는 의견이 26.5%로 나타났다.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다양성”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25.9%, ‘그렇다’는 의견이 24.6%로 나타났다. “사회적 약자 대표성”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33.9%, ‘그렇다’는 의견이 21.3%로 나타났다. “자치경찰 정책 수립 및 평가, 인사, 감사, 국가경찰과 조정 등 전문성”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28.6%, ‘그렇다’는 의견이 27.8%로 나타났다. 이처럼 자치경찰 조직구성과 관련해서는 긍정적 견해와 부정적 견해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표 4-1> 참조).

<표 4-1>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	
	51	8.6	106	17.8	281	47.1	125	21.0	33	5.5	596	100.0
①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및 방식의 중립성	51	8.6	106	17.8	281	47.1	125	21.0	33	5.5	596	100.0
②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다양성	47	7.9	107	18.0	295	49.5	123	20.6	24	4.0	596	100.0
③ 사회적 약자 대표성	64	10.7	138	23.2	267	44.8	101	16.9	26	4.4	596	100.0
④ 자치경찰 정책 수립 및 평가, 인사, 감사, 국가경찰과 조정 등 전문성	57	9.6	113	19.0	260	43.6	133	22.3	33	5.5	596	100.0

자치경찰제도 중 자치경찰 경찰공무원에 대한 인사권한을 살펴본 결과 “시도지사의 경찰공무원 인사권 강화”에 대해서는 ‘필요하지 않음’ 의견이 53.4%, ‘필요함’ 의견이 18.1%로 나타났다.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경찰공무원 인사권 강화”에 대해서는 ‘필요하지 않음’ 의견이 47.0%, ‘필요함’ 의견이 23.6%로 나타났다. 시·도지사나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경찰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4-2> 참조). 선행연구들 가운데 시·도지사의 인사권 강화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연구가 많은데, 일선 현장에서는 이에 대해 부정적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아 향후 이에 대한 논의 혹은 설득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표 4-2> 경찰공무원에 대한 인사권한

구분	전혀 필요하지 않음(%)		필요하지 않음(%)		보통(%)		필요함(%)		매우 필요함(%)		합계(%)	
① 시도지사의 경찰공무원 인사권 강화	135	22.6	184	30.8	170	28.5	90	15.1	18	3.0	597	100.0
②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경찰공무원 인사권 강화	128	21.4	153	25.6	175	29.3	119	19.9	22	3.7	597	100.0

자치경찰제도 중 경찰조직에 대한 통제를 살펴본 결과 “지방의회의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통제권 강화”에 대해서는 ‘필요하지 않음’ 의견이 52.1%, ‘필요함’ 의견이 15.7%로 나타났다. “시민에 대한 통제장치 마련”에 대해서는 ‘필요하지 않음’ 의견이 30.2%, ‘필요함’ 의견이 30.3%로 나타났다(<표 4-3> 참조). 자치경찰의 통제와 관련하여 지방의회 등의 통제보다는 시민이 직접 통제하는 방식을 상대적으로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자치경찰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시민의 직접적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소통의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표 4-3> 경찰조직에 대한 통제

구분	전혀 필요하지 않음(%)		필요하지 않음(%)		보통(%)		필요함(%)		매우 필요함(%)		합계(%)	
① 지방의회의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통제권 강화	149	25.0	162	27.1	192	32.2	77	12.9	17	2.8	597	100.0
② 시민에 대한 통제장치 마련	80	13.4	100	16.8	235	39.4	151	25.3	30	5.0	596	100.0

2) 자치경찰 사무수준에 대한 인식

(1) 사무수준

자치경찰제도 중 자치경찰 사무수준을 살펴본 결과 “창의/자율적인 치안업무 가능”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43.9%, ‘그렇다’는 의견이 18.9%로 나타났다. “자치경찰사무 범위 적정성”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43.9%, ‘그렇다’는 의견이 14.3%로 나타났다. “지방행정업무 전가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23.4%, ‘그렇다’는 의견이 45.9%로 나타났다. “국가경찰과 효과적인 연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41.8%, ‘그렇다’는 의견이 14.5%로 나타났다. “지방행정과 효과적인 연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42.5%, ‘그렇다’는 의견이 16.5%로 나타났다(<표 4-4> 참조).

자치경찰의 사무와 관련하여 응답자들은 창의/자율적인 치안업무, 범위 적정성, 지방행정과의 연계 등에서 부정적인 인식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방행정업무의 전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인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치안업무 관련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창의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사무분장, 업무범위 등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표 4-4> 자치경찰 사무수준

구분	전혀 필요하지 않음(%)		필요하지 않음(%)		보통(%)		필요함(%)		매우 필요함(%)		합계(%)	
	78	13.1	183	30.8	221	37.2	101	17.0	11	1.9	594	100.0
① 창의/자율적인 치안업무 가능	78	13.1	183	30.8	221	37.2	101	17.0	11	1.9	594	100.0
② 자치경찰사무 범위 적정성	71	12.0	189	31.9	248	41.8	79	13.3	6	1.0	593	100.0
③ 지방행정업무 전가 가능성	37	6.2	102	17.2	182	30.7	202	34.1	70	11.8	593	100.0
④ 국가경찰과 효과적인 연계	72	12.1	176	29.7	259	43.7	76	12.8	10	1.7	593	100.0
⑤ 지방행정과 효과적인 연계	77	13.0	175	29.5	243	41.0	86	14.5	12	2.0	593	100.0

(2) 주요사무

자치경찰제도 중 자치경찰 주요사무를 살펴본 결과,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분야는 생활안전으로 39.4%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는 사회적 약자보호가 29.5%를 차지하였다. 주요사무에 대한 중요도를 살펴본 결과 “생활안전”에 대해서는 ‘중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11.3%, ‘중요하다’는 의견이 51.8%로 나타났다. “교통”에 대해서는 ‘중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12.1%, ‘중요하다’는 의견이 53.5%로 나타났다. “경비”에 대해서는 ‘중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17.6%, ‘중요하다’는 의견이 39.7%로 나타났다. “사회적 약자보호”에 대해서는 ‘중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13.1%, ‘중요하다’는 의견이 55.0%로 나타났다(<표 4-5> 참조).

<표 4-5> 자치경찰 주요사무별 중요도

구분	우선순위		전혀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음(%)		보통(%)		중요함(%)		매우 중요함(%)		합계(%)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① 생활안전	179	39.4	23	3.9	44	7.4	220	37.0	227	38.2	81	13.6	595	100.0
② 교통	116	25.6	21	3.5	51	8.6	204	34.3	240	40.4	78	13.1	594	100.0
③ 경비	25	5.5	33	5.5	72	12.1	254	42.7	197	33.1	39	6.6	595	100.0
④ 사회적 약자보호	134	29.5	25	4.2	53	8.9	190	31.9	238	39.9	90	15.1	596	100.0

주요사무 중 생활안전 분야의 세부사무별 중요도를 살펴본 결과 “생활안전 순찰 및 시설운영”에 대해서는 ‘중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9.7%, ‘중요하다’는 의견이 55.1%로 나타났다. “주민참여 방법활동 지원 및 지도”에 대해서는 ‘중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13.1%, ‘중요하다’는 의견이 47.1%로 나타났다. “안전사고 및 재난사고 긴급구조”에 대해서는 ‘중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11.2%, ‘중요하다’는 의견이 52.5%로 나타났다. “사회질서유지 및 위반행위 지도단속”에 대해서는 ‘중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11.0%, ‘중요하다’는 의견이 43.9%로 나타났다. “기타 지역주민의 생활안전 사무”에 대해서는 ‘중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12.2%, ‘중요하다’는 의견이 37.7%로 나타났다(<표 4-6> 참조).

<표 4-6> 자치경찰 주요사무(생활안전)

구분	전혀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음(%)		보통(%)		중요함(%)		매우 중요함(%)		합계(%)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① 생활안전 순찰 및 시설운영	11	1.8	47	7.9	210	35.2	271	45.4	58	9.7	597	100.0
② 주민참여 방법활동 지원 및 지도	17	2.9	61	10.2	237	39.8	235	39.4	46	7.7	596	100.0
③ 안전사고 및 재난사고 긴급구조	16	2.7	51	8.5	217	36.3	247	41.4	66	11.1	597	100.0
④ 사회질서유지 및 위반행위 지도단속	17	2.8	49	8.2	269	45.1	223	37.4	39	6.5	597	100.0
⑤ 기타 지역주민의 생활안전 사무	20	3.4	52	8.8	297	50.1	187	31.5	37	6.2	593	100.0

주요사무 중 교통 분야의 세부사무별 중요도를 살펴본 결과 “교통법규 위반 지도 단속”에 대해서는 ‘중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11.2%, ‘중요하다’는 의견이 48.3%로 나타났다. “교통안전시설, 무인단속 장비 심의 관리”에 대해서는 ‘중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9.9%, ‘중요하다’는 의견이 55.5%로 나타났다. “교통안전교육 및 홍보”에 대

해서는 ‘중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14.1%, ‘중요하다’는 의견이 44.5%로 나타났다. “주민참여 지역교통활동 지원 및 지도”에 대해서는 ‘중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14.6%, ‘중요하다’는 의견이 40.6%로 나타났다. “통행허가, 어린이통학버스, 긴급자동차 등 허가 및 신고사무”에 대해서는 ‘중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13.1%, ‘중요하다’는 의견이 42.0%로 나타났다(<표 4-7> 참조). 주요사무 중 약자보호 분야의 세부사무별 중요도를 살펴본 결과 “아동, 청소년, 노인, 여성 등 성폭력 예방활동”에 대해서는 ‘중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8.9%, ‘중요하다’는 의견이 60.6%로 나타났다(<표 4-8> 참조).

<표 4-7> 자치경찰 주요사무(교통)

구분	전혀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음(%)		보통(%)		중요함(%)		매우 중요함(%)		합계(%)	
① 교통법규 위반 지도단속	15	2.5	52	8.7	242	40.5	235	39.4	53	8.9	597	100.0
② 교통안전시설, 무인단속 장비 심의 관리	9	1.5	50	8.4	207	34.7	247	41.4	84	14.1	597	100.0
③ 교통안전교육 및 홍보	21	3.5	63	10.6	247	41.4	227	38.0	39	6.5	597	100.0
④ 주민참여 지역교통활동 지원 및 지도	24	4.0	63	10.6	267	44.8	204	34.2	38	6.4	596	100.0
⑤ 통행허가, 어린이통학버스, 긴급자동차 등 허가 및 신고사무	19	3.2	59	9.9	268	44.9	203	34.0	48	8.0	597	100.0

<표 4-8> 자치경찰 주요사무(약자보호)

구분	전혀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음(%)		보통(%)		중요함(%)		매우 중요함(%)		합계(%)	
① 아동, 청소년, 노인, 여성 등 성폭력 예방활동	17	2.9	36	6.0	182	30.5	252	42.3	109	18.3	596	100.0

2. 행위자 : 자치경찰제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반응 분석결과

1) 자치경찰 운영에 대한 전반적 인식

(1) 조직 관점

자치경찰 운영에 대한 전반적 인식 중 조직 관점을 살펴본 결과 “시도자치경찰위의 새로운 권력기관화”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21.9%, ‘그렇다’는 의견이 54.7%로 나타났다. “지자체 재정지원 별도 필요”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의

견이 6.4%, ‘그렇다’는 의견이 80.1%로 나타났다.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경찰의 선호도 증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58.9%, ‘그렇다’는 의견이 10.8%로 나타났다(<표 4-9> 참조). 조직 관점에서 많은 응답자들이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권력기관화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자치경찰사무에 대해서도 선호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자치경찰의 조직구성과 운영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정적 인식이 높았다. 이러한 인식이 지배적인 것은 아직 제도 도입 초창기로 제도 정착을 위한 참여주체 간의 적극적인 협의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표 4-9> 자치경찰 운영에 대한 전반적 인식(조직 관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① 시도자치경찰위의 새로운 권력기관화	41	6.9	89	15.0	139	23.4	220	37.0	105	17.7	594	100.0
② 지자체 재정지원 별도 필요	15	2.5	23	3.9	80	13.5	239	40.3	236	39.8	593	100.0
③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경찰의 선호도 증가	144	24.2	206	34.7	180	30.3	50	8.4	14	2.4	594	100.0

(2) 대외적 관계

자치경찰 운영에 대한 전반적 인식 중 대외적 관계를 살펴보면, “경찰권력 분산”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34.0%, ‘그렇다’는 의견이 35.0%로 나타났다. “경찰의 정치적 중립 향상”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50.9%, ‘그렇다’는 의견이 12.1%로 나타났다. “국가/자치경찰 간 원활한 업무협조”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42.2%, ‘그렇다’는 의견이 16.7%로 나타났다. “경찰행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33.8%, ‘그렇다’는 의견이 21.3%로 나타났다. “지역주민 간 의사소통 증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38.7%, ‘그렇다’는 의견이 23.0%로 나타났다. “경찰의 투명성 강화”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41.1%, ‘그렇다’는 의견이 15.3%로 나타났다(<표 IV-10> 참조).

자치경찰제의 도입으로 경찰 권력의 분산,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향상, 경찰행정의 민주적 통제, 경찰의 투명성 강화 등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일선 현장에서 자치경찰제도를 실제로 수행하고 있는 경찰공무원들의 인식을 살펴볼 때, 기대하고 있었던 자치경찰제 도입 효과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문제는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홍보 부족이 문제일수도 있으나, 제도를 운영하는 주체들

이 아직까지 체계적으로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일 수 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자치경찰위원회 등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자치경찰업무를 담당하는 일선 경찰관들과 보다 적극적인 소통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표 4-10> 자치경찰 운영에 대한 전반적 인식(대외적 관계)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① 경찰권력 분산	61	10.4	139	23.6	182	31.0	153	26.0	53	9.0	588	100.0
② 경찰의 정치적 중립 향상	108	18.2	194	32.7	220	37.0	56	9.4	16	2.7	594	100.0
③ 국가/자치경찰 간 원활한 업무협조	89	15.0	161	27.2	244	41.1	79	13.3	20	3.4	593	100.0
④ 경찰행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76	12.8	125	21.0	266	44.8	103	17.3	24	4.0	594	100.0
⑤ 지역주민 간 의사소통 증진	91	15.3	139	23.4	227	38.3	106	17.9	30	5.1	593	100.0
⑥ 경찰의 투명성 강화	108	18.2	136	22.9	259	43.6	73	12.3	18	3.0	594	100.0

(3) 치안서비스

자치경찰 운영에 대한 전반적 인식 중 치안서비스를 살펴본 결과 “지역사회 치안서비스 향상”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35.2%, ‘그렇다’는 의견이 27.4%로 나타났다. “지역특색에 맞는 치안정책 제공”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33.5%, ‘그렇다’는 의견이 32.3%로 나타났다. “지역 토착비리 근절효과”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60.8%, ‘그렇다’는 의견이 10.8%로 나타났다. “지방행정과 연계된 종합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34.6%, ‘그렇다’는 의견이 24.8%로 나타났다. “시민의 경찰신뢰 향상”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40.4%, ‘그렇다’는 의견이 16.9%로 나타났다. “기존 국가경찰서비스와 차별화”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51.6%, ‘그렇다’는 의견이 12.4%로 나타났다(<표 4-11> 참조). 즉 치안서비스와 관련하여 지역 토착비리 근절, 시민의 경찰신뢰, 국가경찰서비스와의 차별화 등과 같은 문제의 경우 경찰공무원들은 과거와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역주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경찰이 되기 위해 지역특색에 맞는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한 맞춤형 시책 발굴 등에 좀 더 많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표 4-11> 자치경찰 운영에 대한 전반적 인식(치안서비스)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① 지역사회 치안서비스 향상	77	13.0	132	22.2	222	37.4	138	23.2	25	4.2	594	100.0
② 지역특색에 맞는 치안정책 제공	59	9.9	140	23.6	203	34.2	163	27.4	29	4.9	594	100.0
③ 지역 토착비리 근절효과	149	25.1	212	35.7	169	28.5	44	7.4	20	3.4	594	100.0
④ 지방행정과 연계된 종합서비스 제공	73	12.4	131	22.2	240	40.6	119	20.1	28	4.7	591	100.0
⑤ 시민의 경찰신뢰 향상	82	13.8	158	26.6	253	42.7	81	13.7	19	3.2	593	100.0
⑥ 기존 국가경찰서비스와 차별화	109	18.4	197	33.2	214	36.0	59	9.9	15	2.5	594	100.0

2) 자치경찰 조직·인사제도에 대한 인식

(1) 조직 관점

자치경찰 조직·인사제도에 대한 인식 중 조직 관점을 살펴본 결과, “지휘체계 중복 및 혼선”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11.0%, ‘그렇다’는 의견이 63.5%로 나타났다. “시도자치경찰위의 개입 증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9.8%, ‘그렇다’는 의견이 66.5%로 나타났다. “승진/전보 등 인사 혼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7.8%, ‘그렇다’는 의견이 65.6%로 나타났다. “부서 내 자치/국가 사무 혼재로 업무혼선”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8.7%, ‘그렇다’는 의견이 69.0%로 나타났다. “직원들의 자치사무 기피”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9.6%, ‘그렇다’는 의견이 58.6%로 나타났다. “승진/전보 등 직원 출서기 현상 발생”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15.1%, ‘그렇다’는 의견이 51.3%로 나타났다. “지자체의 경찰에 대한 업무 이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8.6%, ‘그렇다’는 의견이 65.3%로 나타났다(<표 4-12> 참조).

자치경찰 조직·인사제도에 대한 인식으로 제시한 조직 관점의 분석항목 모두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조직 관점의 위협요인을 해소하지 못할 경우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앞서 제기된 다양한 위협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체계적인 조직관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표 4-12> 자치경찰 조직·인사제도에 대한 인식(조직 관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① 지휘체계 중복 및 혼선	7	1.2	58	9.8	152	25.6	253	42.6	124	20.9	594	100.0
② 시도자치경찰위의 개입 증가	9	1.5	49	8.3	141	23.8	256	43.2	138	23.3	593	100.0
③ 승진/전보 등 인사 혼란	10	1.7	36	6.1	158	26.6	274	46.1	116	19.5	594	100.0
④ 부서 내 자치/국가 사무 혼재로 업무혼선	8	1.3	44	7.4	132	22.2	262	44.0	149	25.0	595	100.0
⑤ 직원들의 자치사무 기피	10	1.7	47	7.9	190	31.9	237	39.8	112	18.8	596	100.0
⑥ 승진/전보 등 직원 줄서기 현상 발생	17	2.9	73	12.2	200	33.6	204	34.2	102	17.1	596	100.0
⑦ 지자체의 경찰에 대한 업무 이관	7	1.2	44	7.4	156	26.2	245	41.1	144	24.2	596	100.0

(2) 대외적 관계

자치경찰 조직·인사제도에 대한 인식 중 대외적 관계를 살펴본 결과 “국가/자치경찰 간 업무 혼선”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7.5%, ‘그렇다’는 의견이 70.6%로 나타났다. “국가/자치경찰 간 협조 부족”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8.7%, ‘그렇다’는 의견이 70.6%로 나타났다. “지자체장의 개입 증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7.9%, ‘그렇다’는 의견이 69.4%로 나타났다. “국가경찰청장의 자치경찰 개입”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19.5%, ‘그렇다’는 의견이 38.3%로 나타났다(<표 4-13> 참조). 자치경찰 조직·인사제도에 대한 인식 중 대외적 관계와 관련해서는 외부의 간섭과 타 기관과의 협조 부족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대외적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소통과 신뢰의 사회적 자본 형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표 4-13> 자치경찰 조직·인사제도에 대한 인식(대외적 관계)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① 국가/자치경찰 간 업무 혼선	8	1.3	37	6.2	130	21.8	301	50.6	119	20.0	595	100.0
② 국가/자치경찰 간 협조 부족	8	1.3	44	7.4	123	20.7	303	50.9	117	19.7	595	100.0
③ 지자체장의 개입 증가	10	1.7	37	6.2	135	22.7	284	47.7	129	21.7	595	100.0
④ 국가경찰청장의 자치경찰 개입	16	2.7	100	16.8	251	42.2	170	28.6	58	9.7	595	100.0

(3) 치안서비스

자치경찰 조직·인사제도에 대한 인식 중 치안서비스를 살펴본 결과 “지자체간 경찰서비스 불균형”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8.7%, ‘그렇다’는 의견이 62.8%로 나타났다. 즉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들은 지방자치단체 간 치안서비스의 불균형이 존재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표 4-14> 참조). 향후 비수도권의 인구감소 지역의 증가와 광역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는 자치경찰 치안서비스에 대한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어, 치안서비스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중앙정부의 행·재정적 지원 등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표 4-14> 자치경찰 조직·인사제도에 대한 인식(치안서비스)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9	1.5	43	7.2	169	28.5	258	43.4	115	19.4	594	100.0
① 지자체간 경찰서비스 불균형	9	1.5	43	7.2	169	28.5	258	43.4	115	19.4	594	100.0

3. 성과 : 자치경찰제도의 성과 및 만족도 관련 분석결과

1) 조직 관점

자치경찰제도의 성과와 만족도 중 조직 관점을 살펴본 결과 “자치경찰제 업무수행 만족”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음’ 의견이 43.2%, ‘동의함’ 의견이 14.3%로 나타났다. “종합적 성과 높게 인식”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음’ 의견이 44.9%, ‘동의함’ 의견이 15.4%로 나타났다(<표 4-15> 참조). 조직 관점에서 자치경찰제도의 성과와 만족도가 높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물론 이러한 설문분석 결과는 자치경찰제가 아직 시행 초기라는 외부 환경적 여건도 있겠지만, 대다수 일선 경찰관들은 여전히 부정적 시각으로 자치경찰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자치경찰제도의 운영에 따른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표 4-15> 자치경찰제도 성과와 만족도(조직 관점)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보통(%)		동의함(%)		매우 동의함(%)		합계(%)	
	88	14.8	169	28.4	254	42.6	76	12.8	9	1.5	596	100.0
① 자치경찰제 업무수행 만족	88	14.8	169	28.4	254	42.6	76	12.8	9	1.5	596	100.0
② 종합적 성과 높게 인식	95	16.0	172	28.9	236	39.7	83	13.9	9	1.5	595	100.0

2) 대외적 관계

자치경찰제도의 성과와 만족도 중 대외적 관계를 살펴본 결과 “치안서비스 정치적 중립성 향상”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음’ 의견이 41.1%, ‘동의함’ 의견이 17.5%로 나타났다. “시민과의 유대 강화”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음’ 의견이 31.6%, ‘동의함’ 의견이 28.3%로 나타났다(<표 4-16> 참조). 대외적 관계 중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지방자치제하에서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이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관점에서 유지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인 보안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표 4-16> 자치경찰제도 성과와 만족도(대외적 관계)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보통(%)		동의함(%)		매우 동의함(%)		합계(%)	
	76	12.8	168	28.3	245	41.3	88	14.8	16	2.7	593	100.0
① 치안서비스 정치적 중립성 향상	62	10.4	126	21.2	239	40.2	139	23.4	29	4.9	595	100.0
② 시민과의 유대 강화												

3) 치안서비스

자치경찰제도의 성과와 만족도 중 치안서비스를 살펴본 결과 “치안서비스 정합성 향상”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음’ 의견이 34.5%, ‘동의함’ 의견이 16.5%로 나타났다. “치안서비스 능률성 제고”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음’ 의견이 37.4%, ‘동의함’ 의견이 16.6%로 나타났다. “치안서비스 민주성 강화”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음’ 의견이 34.7%, ‘동의함’ 의견이 21.9%로 나타났다. “치안서비스 책임성 향상”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음’ 의견이 37.2%, ‘동의함’ 의견이 23.5%로 나타났다. “치안서비스 신속성 향상”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음’ 의견이 41.0%, ‘동의함’ 의견이 19.5%로 나타났다. “중대/긴급사건 발생 시 대응역량 강화”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음’ 의견이 45.8%, ‘동의함’ 의견이 16.4%로 나타났다. “지역주민의 치안만족도 향상”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음’ 의견이 36.6%, ‘동의함’ 의견이 21.5%로 나타났다(<표 4-17> 참조).

이러한 분석결과는 자치경찰제 도입 후 치안서비스에 대한 성과와 만족도가 낮아진 것인지, 과거에도 유사한 성과와 만족도를 보였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만약 현재의 자치경찰제 운영으로 치안서비스에 대한 성과와 만족도가 낮아진 것이라면, 시급히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표 4-17> 자치경찰제도 성과와 만족도(치안서비스)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보통(%)		동의함(%)		매우 동의함(%)		합계(%)	
① 치안서비스 정합성 향상	51	8.6	154	25.9	292	49.1	88	14.8	10	1.7	595	100.0
② 치안서비스 능률성 제고	60	10.1	163	27.3	274	46.0	92	15.4	7	1.2	596	100.0
③ 치안서비스 민주성 강화	62	10.4	145	24.3	258	43.3	120	20.1	11	1.8	596	100.0
④ 치안서비스 책임성 향상	64	10.8	157	26.4	233	39.2	119	20.0	21	3.5	594	100.0
⑤ 치안서비스 신속성 향상	68	11.4	176	29.6	235	39.5	96	16.1	20	3.4	595	100.0
⑥ 중대/긴급사건 발생 시 대응 역량 강화	93	15.6	180	30.2	225	37.8	83	13.9	15	2.5	596	100.0
⑦ 지역주민의 치안만족도 향상	69	11.6	149	25.0	250	41.9	105	17.6	23	3.9	596	100.0

4. 환류 : 자치경찰제도 발전방향 관련 분석결과

1) 자치경찰제도 정착의 장애요인

조직 관점에서 자치경찰제의 정착을 막는 장애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본 결과, “지방행정사무를 치안행정업무로 전가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7.9%, ‘그렇다’는 의견이 67.4%로 나타났다. “재정적 여건 미흡”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5.1%, ‘그렇다’는 의견이 73.5%로 나타났다. “자치경찰위원회 전문성 부족”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9.5%, ‘그렇다’는 의견이 58.0%로 나타났다. “자치경찰위원회 권한 제한 및 역할 불분명”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5.7%, ‘그렇다’는 의견이 63.0%로 나타났다. “구성원의 인식부족”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7.8%, ‘그렇다’는 의견이 56.8%로 나타났다 (<표 4-18> 참조). 응답자들은 조직 관점에서 제시된 모든 항목이 자치경찰제 정착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조직 관점에서 제시된 장애요인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4-18> 자치경찰제도 정착의 장애요인(조직 관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① 지방행정사무를 치안행정 업무로 전가 가능성	5	.8	42	7.1	146	24.7	245	41.4	154	26.0	592	100.0
② 재정적 여건 미흡	7	1.2	23	3.9	127	21.4	243	41.0	193	32.5	593	100.0
③ 자치경찰위원회 전문성 부족	7	1.2	49	8.3	193	32.5	221	37.3	123	20.7	593	100.0
④ 자치경찰위원회 권한 제한 및 역할 불분명	6	1.0	28	4.7	185	31.3	251	42.4	122	20.6	592	100.0
⑤ 구성원의 인식부족	10	1.7	36	6.1	208	35.4	213	36.2	121	20.6	588	100.0

대외적 관계 측면에서 자치경찰제의 정착을 막는 장애요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본 결과, “국가경찰신분으로 자치경찰사무 수행”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4.0%, ‘그렇다’는 의견이 74.9%로 나타났다. “지방행정과 연계 미흡”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7.4%, ‘그렇다’는 의견이 64.1%로 나타났다.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한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8.0%, ‘그렇다’는 의견이 56.7%로 나타났다. “이전과 변화 없는 현장경찰의 가동시스템”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4.7%, ‘그렇다’는 의견이 67.0%로 나타났다(<표 4-19> 참조). 응답자들은 대외적 관계에서 제시된 모든 항목이 자치경찰제 정착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국가경찰, 연계협력기관 등과의 협력적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대외적 관계에서 제시된 장애요인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4-19> 자치경찰제 정착의 장애요인(대외적 관계)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① 국가경찰신분으로 자치경찰 사무 수행	5	.8	19	3.2	125	21.1	275	46.4	169	28.5	593	100.0
② 지방행정과 연계 미흡	6	1.0	38	6.4	169	28.5	264	44.5	116	19.6	593	100.0
③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한계	10	1.7	37	6.3	209	35.3	218	36.8	118	19.9	592	100.0
④ 이전과 변화 없는 현장경찰 의 가동시스템	6	1.0	22	3.7	168	28.3	240	40.5	157	26.5	593	100.0

2) 자치경찰제 정착의 필요요소

조직의 관점에서 자치경찰제의 정착을 위한 필요요소가 무엇인지를 살펴본 결과,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구성 다양성 강화”에 대해서는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17.3%, ‘필요하다’는 의견이 48.4%로 나타났다. “자치경찰 인사, 평가 및 지휘감독 관계 재정립”에 대해서는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10.6%, ‘필요하다’는 의견이 65.1%로 나타났다. “자치경찰사무 관련 체계화된 교육과정 및 교육기관 신설”에 대해서는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18.9%, ‘필요하다’는 의견이 49.8%로 나타났다. “기초자치단체(경찰서)에도 자치경찰의 도입”에 대해서는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26.2%, ‘필요하다’는 의견이 35.7%로 나타났다.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예산의 지자체 수립”에 대해서는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19.2%, ‘필요하다’는 의견이 47.4%로 나타났다. “자치경찰관의 지방직 공무원으로 전환”에 대해서는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41.7%, ‘필요하다’는 의견이 29.9%로 나타났다(<표 4-20> 참조).

<표 4-20> 자치경찰제 정착의 필요요소(조직 관점)

구분	전혀 필요하지 않음(%)		필요하지 않음(%)		보통(%)		필요함(%)		매우 필요함(%)		합계(%)	
①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구성 다양성 강화	46	7.7	57	9.6	204	34.3	231	38.8	57	9.6	595	100.0
② 자치경찰 인사, 평가 및 지휘감독 관계 재정립	28	4.7	35	5.9	145	24.4	251	42.2	136	22.9	595	100.0
③ 자치경찰사무 관련 체계화된 교육과정 및 교육기관 신설	45	7.6	67	11.3	186	31.3	223	37.5	73	12.3	594	100.0
④ 기초자치단체(경찰서)에도 자치경찰의 도입	81	13.6	75	12.6	227	38.2	161	27.1	51	8.6	595	100.0
⑤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예산의 지자체 수립	54	9.1	60	10.1	199	33.4	195	32.8	87	14.6	595	100.0
⑥ 자치경찰관의 지방직 공무원으로 전환	141	23.7	107	18.0	169	28.4	135	22.7	43	7.2	595	100.0

대외적 관점에서 자치경찰제도의 정착을 위한 필요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본 결과, “자치경찰에 대한 홍보”에 대해서는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19.1%, ‘필요하다’는 의견이 47.5%로 나타났다. “국가/자치경찰의 명확한 업무기준”에 대해서는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8.7%, ‘필요하다’는 의견이 68.4%로 나타났다. “지자체/자치경찰 간 인사교류”에 대해서는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21.8%, ‘필요하다’는 의견이 45.0%로 나타났다(<표 4-21> 참조).

<표 4-21> 자치경찰제 정착의 필요요소(대외적 관계)

구분	전혀 필요하지 않음(%)		필요하지 않음(%)		보통(%)		필요함(%)		매우 필요함(%)		합계(%)	
① 자치경찰에 대한 홍보	46	7.7	68	11.4	199	33.4	214	35.9	69	11.6	596	100.0
② 국가/자치경찰의 명확한 업무기준	22	3.7	30	5.0	136	22.9	230	38.7	177	29.7	595	100.0
③ 지자체/자치경찰 간 인사교류	50	8.4	80	13.4	197	33.1	190	31.9	78	13.1	595	100.0

자치경찰제의 정착을 위해 필요한 요소로 제시된 조직 관점 및 대외적 관계 관련 항목에서 ‘자치경찰관의 지방직 공무원으로 전환’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응답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설문조사에서 제기된 필요요소들의 해결을 위해 자치경찰위원회는 정책개발 및 시책 발굴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제시한 제1호 시책에 대한 인지도, 시책의 적합성, 추진 진행경과에 대한 인지도를 물어본 설문결과 제1호 시책에 대한 인지도는 3.05점¹⁰⁾, 시책의 적합성은 3.15점, 추진 진행경과에 대한 인지 정도는 2.87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향후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시책을 발굴·추진함에 있어, 일선 경찰공무원들에게 정확하게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할 필요성과 당위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3) 자치경찰제 발전방향

자치경찰제도와 관련하여 조직 관점에서의 발전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본 결과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인력 증가 필요”에 대해서는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37.2%, ‘필요하다’는 의견이 28.4%로 나타났다.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경찰 활동 정보 및 자료 충분성”에 대해서는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25.4%, ‘필요하다’는 의견이 34.7%로 나타났다. “자치경찰채용 방식 다양화 필요”에 대해서는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29.7%, ‘필요하다’는 의견이 38.4%로 나타났다. “자치경찰공무원 후생복지 강화 필요”에 대해서는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13.2%, ‘필요하다’는 의견이 61.3%로 나타났다(<표 4-22> 참조).

10) ‘매우 부정’ 1점, ‘부정’ 2점, ‘보통’ 2점, ‘긍정’ 4점, ‘매우 긍정’ 5점 등 리커트 5점 척도로 설문문항을 구성하였다.

<표 4-22> 자치경찰제 발전방향(조직 관점)

구분	전혀 필요하지 않음(%)		필요하지 않음(%)		보통(%)		필요함(%)		매우 필요함(%)		합계(%)	
①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인력 증가 필요	87	14.6	135	22.6	205	34.3	131	21.9	39	6.5	597	100.0
②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경찰활동 정보 및 자료 충분성	64	10.7	88	14.7	238	39.9	167	28.0	40	6.7	597	100.0
③ 자치경찰채용 방식 다양화 필요	76	12.8	101	16.9	190	31.9	198	33.2	31	5.2	596	100.0
④ 자치경찰공무원 후생복지 강화 필요	36	6.0	43	7.2	152	25.5	245	41.0	121	20.3	597	100.0

자치경찰제도와 관련하여 대외적 관계에서의 발전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본 결과 “자치경찰위원회 실무협의회 운영 효과성”에 대해서는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25.6%, ‘필요하다’는 의견이 30.8%로 나타났다. “자치경찰 예산사업까지 참여예산제 범위 확대”에 대해서는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16.9%, ‘필요하다’는 의견이 52.3%로 나타났다(<표 4-23> 참조).

<표 4-23> 자치경찰제 발전방향(대외적 관계)

구분	전혀 필요하지 않음(%)		필요하지 않음(%)		보통(%)		필요함(%)		매우 필요함(%)		합계(%)	
① 자치경찰위원회 실무협의회 운영 효과성	67	11.2	86	14.4	259	43.5	157	26.3	27	4.5	596	100.0
② 자치경찰 예산사업까지 참여예산제 범위 확대	44	7.4	57	9.5	184	30.8	222	37.2	90	15.1	597	100.0

제2절 집단유형별 인식 특성에 대한 분석

1. 집단유형별 인식 특성

1) 제도 : 자치경찰제도 관련 분석결과

(1) 자치경찰의 조직, 인사제도에 대한 인식

집단유형별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인식 중 자치경찰위원회 조직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및 방식의 중립성”에 대해서는 지역(F=7.654, p=.001), 자치경찰 위계(F=12.955, p=.000), 직급(F=11.574, p=.00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의 경우 전라남도가 낮게 나타났으며, 자치경찰 위계에서는 자치경찰위원회가 높게 나타났다.

<표 4-24> 집단유형별 자치경찰위원회 조직에 대한 인식 차이 분석

구분	집단유형		평균	F	유의 확률	집단유형		평균	F	유의 확률
①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및 방식의 중립성	지역	광주광역시	3.12	7.654	.001 ***	연령	40세이하	2.97	.504	.604
		전라북도	3.01				41-50세	2.93		
		전라남도	2.73				51세이상	3.03		
	자치경찰 위계	자치위	3.60	12.955	.000 ***	직급	경위이하	2.87	11.574	.000 ***
		시/도경	2.81				경감/경정	3.11		
		일선경찰서	2.94				일반공무원	3.50		
② 자치경찰 위원회 구성 다양성	지역	광주광역시	3.10	7.088	.001 ***	연령	40세이하	2.93	1.108	.331
		전라북도	2.97				41-50세	2.90		
		전라남도	2.74				51세이상	3.04		
	자치경찰 위계	자치위	3.40	7.199	.001 ***	직급	경위이하	2.86	8.824	.000 ***
		시/도경	2.85				경감/경정	3.09		
		일선경찰서	2.92				일반공무원	3.37		
③ 사회적 약자 대표성	지역	광주광역시	2.94	8.647	.000 ***	연령	40세이하	2.81	1.145	.319
		전라북도	2.89				41-50세	2.74		
		전라남도	2.55				51세이상	2.89		
	자치경찰 위계	자치위	3.15	4.181	.016 **	직급	경위이하	2.75	5.329	.005 **
		시/도경	2.68				경감/경정	2.85		
		일선경찰서	2.80				일반공무원	3.21		
④ 자치경찰 정책 수립 및 평가, 인사, 감사, 국가경찰 과 조정 등 전문성	지역	광주광역시	3.07	7.602	.001 ***	연령	40세이하	2.94	.032	.968
		전라북도	3.03				41-50세	2.95		
		전라남도	2.70				51세이상	2.96		
	자치경찰 위계	자치위	3.37	6.227	.002 **	직급	경위이하	2.89	6.220	.002 **
		시/도경	2.78				경감/경정	2.97		
		일선경찰서	2.95				일반공무원	3.40		

주: *(p < 0.05), **(p < 0.01), ***(p < 0.001)

직급에서는 일반공무원이 높게 나타났다.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다양성”에 대해서는 지역(F=7.088, p=.001), 자치경찰 위계(F=7.199, p=.001), 직급(F=8.824, p=.00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의 경우 전라남도가 낮게 나타났으며, 자치경찰위계에서는 자치경찰위원회가 높게 나타났으며, 직급에서는 일반공무원이 높게 나타났다. “사회적 약자 대표성”에 대해서는 지역(F=8.647, p=.000), 자치경찰 위계(F=4.181, p=.016), 직급(F=5.329, p=.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의 경우 전라남도도 낮게 나타났으며, 자치경찰위계에서는 자치경찰위원회가 높게 나타났다. 직급에서는 일반 공무원이 높게 나타났다. “자치경찰 정책 수립 및 평가, 인사, 감사, 국가경찰과 조정 등 전문성”에 대해서는 지역(F=7.602, p=.001), 자치경찰 위계(F=6.227, p=.002), 직급(F=6.220, p=.002)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의 경우 전라남도도 낮게 나타났으며, 자치경찰위계에서는 자치경찰위원회가 높게 나타났으며, 직급에서는 일반 공무원이 높게 나타났다(<표 4-24> 참조).

<표 4-25> 집단유형별 경찰공무원에 대한 인사권한에 대한 인식 차이 분석

구분	집단유형		평균	F	유의 확률	집단유형		평균	F	유의 확률
	지역	자치경찰 위계				연령	직급			
① 시·도지사의 경찰공무원 인사권 강화	지역	광주광역시	2.53	1.584	.206	연령	40세 이하	2.45	.002	.998
		전라북도	2.47				41-50세	2.45		
		전라남도	2.33				51세 이상	2.45		
	자치경찰 위계	자치위	3.27	19.854	.000 ***	직급	경위이하	2.45	15.063	.000 ***
		시/도경	2.17				경감/경정	2.15		
		일선경찰서	2.43				일반공무원	3.12		
② 시도자치경 찰위원회의 경찰공무원 인사권 강화	지역	광주광역시	2.78	5.693	.004 **	연령	40세 이하	2.58	.499	.608
		전라북도	2.57				41-50세	2.53		
		전라남도	2.38				51세 이상	2.64		
	자치경찰 위계	자치위	3.96	49.867	.000 ***	직급	경위이하	2.52	24.191	.000 ***
		시/도경	2.31				경감/경정	2.38		
		일선경찰서	2.50				일반공무원	3.58		

주: *(p < 0.05), **(p < 0.01), *** (p < 0.001)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인식 중 경찰공무원에 대한 인사권한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 “시·도지사의 경찰공무원 인사권 강화”에 대해서는 자치경찰 위계(F=19.854, p=.000), 직급(F=15.063, p=.00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경찰 위계에서는 자치경찰위원회가 높게 나타났으며, 직급에서는 일반공무원이 높게 나타났다.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경찰공무원 인사권 강화”에 대해서는 지역(F=5.693, p=.004), 자치경찰 위계(F=49.867, p=.000), 직급(F=24.191, p=.00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의 경우 광주광역시가 높게 나타났으며, 자치경찰 위계에서는 자치경찰위원회가 높게 나타났으며, 직급에서는 일반공무원이 높게 나타났다(<표 4-25> 참조). 앞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경찰공무원은 인사권한이 시·도지사나 자치경찰위원회 중심으로 강화되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자치경찰위원회의 경우 시도·지사보다는 자치경찰위원회가 인사권한을 사용하는 것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유형별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인식 중 경찰조직에 대한 통제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 “지방의회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 통제권 강화”에 대해서는 자치경찰 위계(F=4.334, p=.014), 직급(F=6.183, p=.002)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경찰 위계에서는 자치경찰위원회가 높게 나타났으며, 직급에서는 일반공무원이 높게 나타났다. “시민에 대한 통제장치 마련”에 대해서는 지역(F=5.471, p=.004), 자치경찰 위계(F=8.328, p=.000), 직급(F=2.802, p=.062)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의 경우 전라남도가 낮게 나타났으며, 자치경찰 위계에서는 자치경찰위원회가 높게 나타났으며, 직급에서는 일반공무원이 높게 나타났다(<표 4-26> 참조).

<표 4-26> 집단유형별 경찰조직에 대한 통제에 대한 인식 차이 분석

구분	집단유형		평균	F	유의 확률	집단유형		평균	F	유의 확률
① 지방의회의 시도자치경찰 위원회 통제 권 강화	지역	광주광역시	2.42	1.936	.145	연령	40세 이하	2.36	.307	.736
		전라북도	2.50				41-50세	2.44		
		전라남도	2.28				51세 이상	2.43		
	자치경찰 위계	자치위	2.73	4.334	.014 *		직급	경위이하		
		시/도경	2.21			경감/경정		2.15		
		일선경찰서	2.43			일반공무원		2.75		
② 시민에 대한 통제장치 마 련	지역	광주광역시	3.02	5.471	.004 **	연령		40세 이하	2.84	.534
		전라북도	3.00				41-50세	2.94		
		전라남도	2.68				51세 이상	2.95		
	자치경찰 위계	자치위	3.48	8.328	.000 ***		직급	경위이하	2.87	
		시/도경	2.79			경감/경정		2.97		
		일선경찰서	2.88			일반공무원		3.23		

주: *(p < 0.05), **(p < 0.01), *** (p < 0.001)

(2) 자치경찰제 사무수준에 대한 인식

① 자치경찰 사무수준

집단유형별 자치경찰 사무수준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창의/자율적인

치안업무 가능”에 대해서는 지역(F=8.688, p=.000), 자치경찰 위계(F=23.056, p=.000), 직급(F=12.815, p=.00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의 경우 광주광역시가 높게 나타났으며, 자치경찰 위계에서는 자치경찰 위원회가 높게 나타났다. 직급에서는 일반공무원이 높게 나타났다(<표 4-27> 참조).

<표 4-27> 집단유형별 자치경찰 사무수준 차이 분석

구분	집단유형		평균	F	유의 확률	집단유형		평균	F	유의 확률
① 창의/자율적 인 치안업무 가능	지역	광주광역시	2.85	8.688	.000 ***	연령	40세 이하	2.74	1.429	.240
		전라북도	2.60				41-50세	2.61		
		전라남도	2.44				51세 이상	2.57		
	자치경찰 위계	자치위	3.48	23.056	.000 ***	직급	경위이하	2.56	12.815	.000 ***
		시/도경	2.55				경감/경정	2.63		
		일선경찰서	2.56				일반공무원	3.27		
② 자치경찰사 무 범위 적정 성	지역	광주광역시	2.67	4.801	.009 **	연령	40세 이하	2.63	.211	.809
		전라북도	2.67				41-50세	2.60		
		전라남도	2.41				51세 이상	2.57		
	자치경찰 위계	자치위	3.13	10.759	.000 ***	직급	경위이하	2.55	6.457	.002 **
		시/도경	2.59				경감/경정	2.57		
		일선경찰서	2.53				일반공무원	3.02		
③ 지방행정업 무 전가 가능 성	지역	광주광역시	3.33	1.594	.204	연령	40세 이하	3.34	.417	.659
		전라북도	3.33				41-50세	3.27		
		전라남도	3.15				51세 이상	3.24		
	자치경찰 위계	자치위	3.12	4.085	.017 *	직급	경위이하	3.26	2.421	.090
		시/도경	3.53				경감/경정	3.45		
		일선경찰서	3.23				일반공무원	3.08		
④ 국가경찰과 효과적인 연 계	지역	광주광역시	2.72	2.522	.081	연령	40세 이하	2.70	.992	.371
		전라북도	2.62				41-50세	2.61		
		전라남도	2.51				51세 이상	2.56		
	자치경찰 위계	자치위	3.15	10.578	.000 ***	직급	경위이하	2.59	4.428	.012 **
		시/도경	2.66				경감/경정	2.58		
		일선경찰서	2.55				일반공무원	2.98		
⑤ 지방행정과 효과적인 연 계	지역	광주광역시	2.80	5.430	.005 **	연령	40세 이하	2.68	.278	.757
		전라북도	2.61				41-50세	2.61		
		전라남도	2.47				51세 이상	2.61		
	자치경찰 위계	자치위	3.33	17.099	.000 ***	직급	경위이하	2.56	10.061	.000 ***
		시/도경	2.67				경감/경정	2.65		
		일선경찰서	2.53				일반공무원	3.17		

주: *(p < 0.05), **(p < 0.01), ***(p < 0.001)

“자치경찰사무 범위 적정성”에 대해서는 지역(F=4.801, p=.009), 자치경찰 위계(F=10.759, p=.000), 직급(F=6.457, p=.002)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의 경우 전라남도가 낮게 나타났으며, 자치경찰 위계에서는 자치경찰위원회가 높게 나타났으며, 직급에서는 일반공무원이 높게 나타났다. “지방행정업무 전가 가능성”에 대해서는 자치경찰 위계(F=4.085, p=.017)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치경찰 위계에서는 시/도 경찰청이 높게 나타났다. “국가경찰과 효과적인 연계”에 대해서는 자치경찰 위계(F=10.578, p=.000), 직급(F=4.428, p=.012)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경찰 위계에서는 자치경찰위원회가 높게 나타났으며, 직급에서는 일반공무원이 높게 나타났다. “지방행정과 효과적인 연계”에 대해서는 지역(F=5.430, p=.005), 자치경찰 위계(F=17.099, p=.000), 직급(F=10.061, p=.00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의 경우 광주광역시가 높게 나타났으며, 자치경찰 위계에서는 자치경찰위원회가 높게 나타났으며, 직급에서는 일반공무원이 높게 나타났다(<표 4-27> 참조).

② 주요사무

집단유형별 자치경찰 주요사무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생활안전”에 대해서는 자치경찰 위계(F=19.705, p=.000), 직급(F=15.799, p=.00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경찰 위계에서는 자치경찰위원회가 높게 나타났으며, 직급에서는 일반공무원이 높게 나타났다. “교통”에 대해서는 지역(F=4.086, p=.017), 자치경찰 위계(F=21.059, p=.000), 직급(F=11.545, p=.00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의 경우 전라남도가 낮게 나타났으며, 자치경찰 위계에서는 자치경찰위원회가 높게 나타났으며, 직급에서는 일반공무원이 높게 나타났다. “경비”에 대해서는 모든 집단유형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사회적 약자보호”에 대해서는 자치경찰 위계(F=17.007, p=.000), 직급(F=16.915, p=.00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경찰 위계에서는 자치경찰위원회가 높게 나타났으며, 직급에서는 일반공무원이 높게 나타났다(<표 4-28> 참조).

<표 4-28> 집단유형별 자치경찰 주요사무별 중요도 차이 분석

구분	집단유형		평균	F	유의 확률	집단유형		평균	F	유의 확률
① 생활안전	지역	광주광역시	3.59	3.053	.048	연령	40세 이하	3.52	1.333	.264
		전라북도	3.54				41-50세	3.56		
		전라남도	3.35				51세 이상	3.40		
	자치경찰 위계	자치위	4.27	19.705	.000 ***	직급	경위이하	3.39	15.799	.000 ***
		시/도경	3.44				경감/경정	3.64		
		일선경찰서	3.43				일반공무원	4.12		
② 교통	지역	광주광역시	3.64	4.086	.017 **	연령	40세 이하	3.54	3.612	.028 *
		전라북도	3.51				41-50세	3.60		
		전라남도	3.36				51세 이상	3.35		

구분	집단유형		평균	F	유의 확률	집단유형		평균	F	유의 확률
	자치경찰 위계	자치위	4.29	21.059	.000 ***	직급	경위이하	3.40	11.545	.000 ***
		시/도경	3.51				경감/경정	3.69		
		일선경찰서	3.41				일반공무원	3.98		
③ 경비	지역	광주광역시	3.23	1.087	.338	연령	40세 이하	3.28	.610	.544
		전라북도	3.29				41-50세	3.23		
		전라남도	3.15				51세 이상	3.17		
	자치경찰 위계	자치위	3.40	1.719	.180	직급	경위이하	3.22	1.918	.148
		시/도경	3.12				경감/경정	3.16		
		일선경찰서	3.24				일반공무원	3.46		
④ 사회적 약자 보호	지역	광주광역시	3.59	1.070	.344	연령	40세 이하	3.58	.612	.543
		전라북도	3.55				41-50세	3.54		
		전라남도	3.44				51세 이상	3.46		
	자치경찰 위계	자치위	4.27	17.007	.000 ***	직급	경위이하	3.39	16.915	.000 ***
		시/도경	3.51				경감/경정	3.77		
		일선경찰서	3.44				일반공무원	4.10		

주: *(p < 0.05), **(p < 0.01), ***(p < 0.001)

집단유형별 자치경찰 주요 사무간 상대적 중요도 교차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29> 집단유형별 자치경찰 주요사무간 상대적 중요도 차이 분석

구분	생활안전	교통	경비	약자보호	전체	χ^2 검정
지역	광주광역시	54 34.8	58 37.4	6 3.9	37 23.9	155 100.0
	전라북도	78 41.7	37 19.8	13 7.0	59 31.6	187 100.0
		전라남도	47 42.0	21 18.8	6 5.4	38 33.9
	자치 경찰 위계	자치경찰위 원회	19 40.4	10 21.3	0 .0	18 38.3
시/도경		34 37.0	35 38.0	1 1.1	22 23.9	92 100.0
		일선경찰서	126 40.0	71 22.5	24 7.6	94 29.8
연령		40세 이하	60 42.6	35 24.8	2 1.4	44 31.2
	41-50세	78 41.7	55 29.4	12 6.4	42 22.5	187 100.0
		51세 이상	39 31.7	26 21.1	11 8.9	47 38.2
	직급	경위이하	120 39.1	77 25.1	20 6.5	90 29.3
경감/경정		37 37.8	30 30.6	4 4.1	27 27.6	98 100.0
		일반공무원	21 45.7	8 17.4	1 2.2	16 34.8

주: *(p < 0.05), **(p < 0.01), ***(p < 0.001)

집단유형별 자치경찰 주요사무 중 세부사무(생활안전)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생활안전 순찰 및 시설운영”에 대해서는 자치경찰 위계(F=14.215, p=.000), 직급(F=9.411, p=.00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경찰 위계에서는 자치경찰위원회가 높게 나타났으며, 직급에서는 일반공무원이 높게 나타났다. “주민참여 방법활동 지원 및 지도”에 대해서는 자치경찰 위계(F=15.972, p=.000), 직급(F=10.425, p=.00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경찰 위계에서는 자치경찰위원회가 높게 나타났으며, 직급에서는 경위이하가 낮게 나타났다(<표 4-30> 참조).

<표 4-30> 집단유형별 자치경찰 주요사무(생활안전) 차이 분석

구분	집단유형		평균	F	유의 확률	집단유형		평균	F	유의 확률
① 생활안전 순찰 및 시설운영	지역	광주광역시	3.57	1.488	.227	연령	40세 이하	3.48	.465	.628
		전라북도	3.57				41-50세	3.56		
		전라남도	3.44				51세 이상	3.53		
	자치경찰 위계	자치위	4.12	14.215	.000***	직급	경위이하	3.45	9.411	.000***
		시/도경	3.50				경감/경정	3.65		
		일선경찰서	3.47				일반공무원	3.94		
② 주민참여 방법활동 지원 및 지도	지역	광주광역시	3.44	2.163	.116	연령	40세 이하	3.38	.124	.883
		전라북도	3.43				41-50세	3.37		
		전라남도	3.27				51세 이상	3.41		
	자치경찰 위계	자치위	3.96	15.972	.000***	직급	경위이하	3.29	10.425	.000***
		시/도경	3.51				경감/경정	3.56		
		일선경찰서	3.29				일반공무원	3.79		
③ 안전사고 및 재난사고 긴급구조	지역	광주광역시	3.57	2.585	.076	연령	40세 이하	3.57	.930	.395
		전라북도	3.53				41-50세	3.46		
		전라남도	3.36				51세 이상	3.47		
	자치경찰 위계	자치위	3.92	6.687	.001***	직급	경위이하	3.44	5.582	.004**
		시/도경	3.49				경감/경정	3.55		
		일선경찰서	3.45				일반공무원	3.87		
④ 사회질서유지 및 위반행위 지도단속	지역	광주광역시	3.49	6.813	.001***	연령	40세 이하	3.45	1.329	.265
		전라북도	3.39				41-50세	3.35		
		전라남도	3.18				51세 이상	3.30		
	자치경찰 위계	자치위	3.73	5.763	.003**	직급	경위이하	3.32	6.724	.001***
		시/도경	3.38				경감/경정	3.34		
		일선경찰서	3.32				일반공무원	3.77		
⑤ 기타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사무	지역	광주광역시	3.40	7.625	.001***	연령	40세 이하	3.31	.200	.818
		전라북도	3.34				41-50세	3.26		
		전라남도	3.07				51세 이상	3.27		
	자치경찰 위계	자치위	3.71	7.490	.001***	직급	경위이하	3.21	11.176	.000***
		시/도경	3.24				경감/경정	3.33		
		일선경찰서	3.24				일반공무원	3.78		

주: *(p < 0.05), **(p < 0.01), ***(p < 0.001)

“안전사고 및 재난사고 긴급구조”에 대해서는 자치경찰 위계($F=6.687, p=.001$), 직급($F=5.582, p=.004$)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경찰 위계에서는 자치경찰위원회가 높게 나타났으며, 직급에서는 일반공무원이 높게 나타났다. “사회질서유지 및 위반행위 지도단속”에 대해서는 지역($F=6.813, p=.001$), 자치경찰 위계($F=5.763, p=.003$), 직급($F=6.724,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의 경우 전라남도가 낮게 나타났으며, 자치경찰 위계에서는 자치경찰위원회가 높게 나타났으며, 직급에서는 일반공무원이 높게 나타났다.

“기타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사무”에 대해서는 지역($F=7.625, p=.001$), 자치경찰 위계($F=7.490, p=.001$), 직급($F=11.176, p=.00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의 경우 전라남도가 낮게 나타났으며, 자치경찰 위계에서는 자치경찰위원회가 높게 나타났으며, 직급에서는 일반공무원이 높게 나타났다(<표 4-30> 참조).

집단유형별 자치경찰 주요사무 중 세부사무(교통)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교통법규 위반 지도단속”에 대해서는 자치경찰 위계($F=4.246, p=.015$), 연령($F=5.763, p=.003$), 직급($F=3.895, p=.02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경찰 위계에서는 일선경찰서가 낮게 나타났으며, 직급에서는 일반공무원이 높게 나타났다. “교통안전시설, 무인단속 장비 심의 관리”에 대해서는 집단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안전교육 및 홍보”에 대해서는 지역($F=7.163, p=.001$), 자치경찰 위계($F=9.304, p=.000$), 직급($F=8.785, p=.00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의 경우 전라남도가 낮게 나타났으며, 자치경찰위계에서는 자치경찰위원회가 높게 나타났으며, 직급에서는 경위이하가 낮게 나타났다. “주민참여 지역교통 활동 지원 및 지도”에 대해서는 지역($F=8.304, p=.000$), 자치경찰 위계($F=9.283, p=.000$), 직급($F=8.555, p=.00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의 경우 전라남도가 낮게 나타났으며, 자치경찰 위계에서는 자치경찰위원회가 높게 나타났으며, 직급에서는 일반 공무원이 높게 나타났다. “통행허가, 어린이통학 버스, 긴급자동차 등 허가 및 신고사무”에 대해서는 지역($F=6.265, p=.002$), 자치경찰 위계($F=4.759, p=.009$), 직급($F=7.618,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의 경우 전라남도가 낮게 나타났으며, 자치경찰 위계에서는 자치경찰위원회가 높게 나타났으며, 직급에서는 경위이하가 낮게 나타났다(<표 4-31> 참조).

<표 4-31> 집단유형별 자치경찰 주요사무(교통) 차이 분석

구분	집단유형		평균	F	유의 확률	집단유형		평균	F	유의 확률
① 교통법규 위반 지도단속	지역	광주광역시	3.53	2.072	.127	연령	40세이하	3.55	5.763	.003**
		전라북도	3.36				41-50세	3.48		
		전라남도	3.42				51세이상	3.25		
	자치경찰 위계	자치위	3.69	4.246	.015*	직급	경위이하	3.39	3.895	.021*
		시/도경	3.54				경감/경정	3.48		
		일선경찰서	3.37				일반공무원	3.73		
② 교통안전시설, 무인단속 장비 심의 관리	지역	광주광역시	3.68	2.233	.108	연령	40세이하	3.56	.914	.402
		전라북도	3.57				41-50세	3.64		
		전라남도	3.48				51세이상	3.52		
	자치경찰 위계	자치위	3.83	2.254	.106	직급	경위이하	3.53	2.399	.092
		시/도경	3.58				경감/경정	3.70		
		일선경찰서	3.55				일반공무원	3.73		
③ 교통안전교육 및 홍보	지역	광주광역시	3.45	7.163	.001***	연령	40세이하	3.28	.398	.672
		전라북도	3.39				41-50세	3.35		
		전라남도	3.12				51세이상	3.36		
	자치경찰 위계	자치위	3.81	9.304	.000***	직급	경위이하	3.24	8.785	.000***
		시/도경	3.38				경감/경정	3.51		
		일선경찰서	3.26				일반공무원	3.67		
④ 주민참여 지역 교통 활동 지원 및 지도	지역	광주광역시	3.39	8.304	.000***	연령	40세이하	3.27	.571	.565
		전라북도	3.36				41-50세	3.32		
		전라남도	3.05				51세이상	3.23		
	자치경찰 위계	자치위	3.77	9.283	.000***	직급	경위이하	3.20	8.555	.000***
		시/도경	3.31				경감/경정	3.44		
		일선경찰서	3.22				일반공무원	3.65		
⑤ 통행허가, 어린이통학버스, 긴급자동차 등 허가 및 신고 사무	지역	광주광역시	3.38	6.265	.002**	연령	40세이하	3.38	.346	.708
		전라북도	3.45				41-50세	3.30		
		전라남도	3.14				51세이상	3.34		
	자치경찰 위계	자치위	3.69	4.759	.009**	직급	경위이하	3.25	7.618	.001***
		시/도경	3.27				경감/경정	3.52		
		일선경찰서	3.31				일반공무원	3.63		

주: *(p < 0.05), **(p < 0.01), ***(p < 0.001)

집단유형별 자치경찰 주요사무 중 세부사무(약자보호)에 대한 인식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아동, 청소년, 노인, 여성 등 성폭력 예방활동”에 대해서는 자치경찰 위계(F=10.418, p=.000), 직급(F=6.200, p=.002)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자치경찰 위계는 자치경찰위원회가 높았으며, 직급은 경위이하가 낮았다(<표 4-32> 참조).

<표 4-32> 집단유형별 자치경찰 주요사무(약자보호) 차이 분석

구분	집단유형		평균	F	유의 확률	집단유형		평균	F	유의 확률
① 아동, 청소년, 노인, 여성 등 성폭력 예방활동	지역	광주광역시	3.69	1.249	.288	연령	40세이하	3.66	.044	.957
		전라북도	3.72				41-50세	3.68		
		전라남도	3.58				51세이상	3.69		
	자치경찰 위계	자치위	4.24	10.418	.000***	직급	경위이하	3.59	6.200	.002**
		시/도경	3.61				경감/경정	3.85		
		일선경찰서	3.62				일반공무원	3.94		

2) 행위자 :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반응 분석결과

(1) 자치경찰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① 조직 관점

집단유형별 자치경찰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중 조직 관점을 살펴본 결과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새로운 권력기관화”에 대해서는 지역(F=8.269, p=.000), 자치경찰 위계(F=29.944, p=.000), 직급(F=29.944, p=.00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의 경우 광주광역시와 낮게 나타났으며, 자치경찰 위계에서는 자치경찰위원회가 낮게 나타났다. 직급에서는 일반공무원이 낮게 나타났다 (<표 4-33> 참조).

<표 4-33> 집단유형별 자치경찰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조직 관점) 차이분석

구분	집단유형		평균	F	유의 확률	집단유형		평균	F	유의 확률
① 시도자치경찰위의 새로운 권력기관화	지역	광주광역시	3.16	8.269	.000***	연령	40세이하	3.43	.037	.964
		전라북도	3.58				41-50세	3.43		
		전라남도	3.55				51세이상	3.46		
	자치경찰 위계	자치위	2.35	29.944	.000***	직급	경위이하	3.49	13.202	.000***
		시/도경	3.71				경감/경정	3.60		
		일선경찰서	3.50				일반공무원	2.69		
② 지자체 재정 지원 별도 필요	지역	광주광역시	4.12	.303	.739	연령	40세이하	2.48	.884	.414
		전라북도	4.14				41-50세	2.41		
		전라남도	4.06				51세이상	2.52		
	자치경찰 위계	자치위	4.50	5.569	.004**	직급	경위이하	4.03	5.121	.006**
		시/도경	4.16				경감/경정	4.33		
		일선경찰서	4.05				일반공무원	4.23		
③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경찰의 선호도 증가	지역	광주광역시	2.39	1.213	.298	연령	40세이하	2.36	.912	.402
		전라북도	2.24				41-50세	2.24		
		전라남도	2.29				51세이상	2.34		
	자치경찰 위계	자치위	2.90	12.803	.000***	직급	경위이하	2.27	6.245	.002**
		시/도경	2.08				경감/경정	2.19		
		일선경찰서	2.29				일반공무원	2.75		

주: *(p < 0.05), **(p < 0.01), ***(p < 0.001)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별도 필요”에 대해서는 자치경찰 위계(F=5.569, p=.004), 직급(F=5.121, p=.006)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경찰 위계에서는 자치경찰위원회가 높게 나타났다. 직급에서는 경감/경정이 높게

나타났다.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경찰의 선호도 증가”에 대해서는 자치경찰 위계(F=12.803, p=.000), 직급(F=6.245, p=.002)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경찰 위계에서는 자치경찰위원회가 높게 나타났다. 직급에서는 일반공무원이 높게 나타났다(<표 4-33> 참조).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새로운 권력기관화에 대한 인식은 자치경찰위원회와 위원회에 과견된 일반공무원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필요와 관련하여 자치경찰위원회와 경찰조직의 경감/경정 등 관리자의 인식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경찰의 선호도 증가와 관련해서는 자치경찰위원회와 일반공무원이 높게 나타났다. 경찰 및 일반공무원이 현재 참여하고 있는 조직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판단되며, 위원회 조직의 구성원은 민주적 의사결정체계를 구축하여 권력기관화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이며, 경찰조직의 관리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확보하여 보다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기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② 대외적 관계

집단유형별 자치경찰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중 대외적 관계를 살펴본 결과 “경찰권력 분산”에 대해서는 자치경찰 위계(F=5.325, p=.005), 직급(F=3.637, p=.027)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경찰 위계에서는 자치경찰위원회가 높게 나타났다. 직급에서는 경위이하가 낮게 나타났다. “경찰의 정치적 중립 향상”에 대해서는 자치경찰 위계(F=13.364, p=.000), 직급(F=10.522, p=.00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경찰 위계에서는 자치경찰위원회가 높게 나타났다. 직급에서는 일반공무원이 높게 나타났다. “국가/자치경찰 간 원활한 업무협조”에 대해서는 자치경찰 위계(F=4.436, p=.012), 직급(F=3.032, p=.049)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경찰 위계에서는 자치경찰위원회가 높게 나타났다. 직급에서는 일반공무원이 높게 나타났다. “경찰행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에 대해서는 자치경찰 위계(F=27.307, p=.000), 직급(F=13.881, p=.00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경찰 위계에서는 자치경찰위원회가 높게 나타났다. 직급에서는 일반공무원이 높게 나타났다. “지역주민 간 의사소통 증진”에 대해서는 자치경찰 위계(F=12.803, p=.000), 직급(F=6.245, p=.002)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경찰 위계에서는 자치경찰위원회가 높게 나타났다. 직급에서는 일반공무원이 높게 나타났다. “경찰의 투명성 강화”에 대해서는 자치경찰 위계(F=18.374, p=.000), 직급(F=10.148, p=.00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경찰위계에서는 자치경찰위원회가 높게 나타났다. 직급에서는 일반공무원이 높게 나타났다(<표 4-34> 참조).

<표 4-34> 집단유형별 자치경찰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대외적 관계) 차이 분석

구분	집단유형		평균	F	유의 확률	집단유형		평균	F	유의 확률
① 경찰권력 분 산	지역	광주광역시	3.04	.230	.794	연령	40세이하	2.98	.157	.855
		전라북도	2.98				41-50세	2.98		
		전라남도	2.97				51세이상	3.04		
	자치경찰 위계	자치위	3.48	5.325	.005 **	직급	경위이하	2.92	3.637	.027 *
		시/도경	2.95				경감/경정	3.17		
		일선경찰서	2.95				일반공무원	3.23		
② 경찰의 정치 적 중립 향상	지역	광주광역시	2.53	1.056	.348	연령	40세이하	2.48	.688	.503
		전라북도	2.46				41-50세	2.41		
		전라남도	2.37				51세이상	2.52		
	자치경찰 위계	자치위	3.08	13.364	.000 ***	직급	경위이하	2.40	10.522	.000 ***
		시/도경	2.26				경감/경정	2.38		
		일선경찰서	2.44				일반공무원	3.04		
③ 국가/자치경 찰 간 원활한 업무협조	지역	광주광역시	2.68	.516	.597	연령	40세이하	2.63	.007	.993
		전라북도	2.58				41-50세	2.63		
		전라남도	2.64				51세이상	2.62		
	자치경찰 위계	자치위	3.02	4.436	.012 *	직급	경위이하	2.58	3.032	.049 *
		시/도경	2.62				경감/경정	2.60		
		일선경찰서	2.58				일반공무원	2.94		
④ 경찰행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지역	광주광역시	2.81	.644	.526	연령	40세이하	2.86	.673	.511
		전라북도	2.82				41-50세	2.75		
		전라남도	2.71				51세이상	2.77		
	자치경찰 위계	자치위	3.35	9.128	.000 ***	직급	경위이하	2.72	6.206	.002 **
		시/도경	2.78				경감/경정	2.81		
		일선경찰서	2.72				일반공무원	3.23		
⑤ 지역주민 간 의사소통 증 진	지역	광주광역시	2.87	2.328	.098	연령	40세이하	2.77	.150	.861
		전라북도	2.71				41-50세	2.71		
		전라남도	2.63				51세이상	2.75		
	자치경찰 위계	자치위	3.75	27.307	.000 ***	직급	경위이하	2.61	13.881	.000 ***
		시/도경	2.66				경감/경정	2.88		
		일선경찰서	2.64				일반공무원	3.38		
⑥ 경찰의 투명 성 강화	지역	광주광역시	2.72	2.436	.088	연령	40세이하	2.67	1.339	.263
		전라북도	2.54				41-50세	2.52		
		전라남도	2.51				51세이상	2.63		
	자치경찰 위계	자치위	3.38	18.374	.000 ***	직급	경위이하	2.51	10.148	.000 ***
		시/도경	2.53				경감/경정	2.60		
		일선경찰서	2.51				일반공무원	3.17		

주: *(p < 0.05), **(p < 0.01), ***(p < 0.001)

경찰권력 분산, 경찰의 정치적 중립 향상, 국가/자치경찰 간 원활한 업무협조, 경찰행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지역주민 간 의사소통 증진, 경찰의 투명성 강화 등과 관련한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 절대적인 응답의 경향성은 부정적으로 나타났으나, 자치경찰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일반공무원의 경우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③ 치안서비스

집단유형별 자치경찰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중 치안서비스를 살펴본 결과 “지역사회 치안서비스 향상”에 대해서는 지역($F=3.064, p=.047$), 자치경찰 위계($F=26.356, p=.000$), 직급($F=16.287, p=.00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의 경우 전라남도가 낮게 나타났으며, 자치경찰 위계에서는 자치경찰위원회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직급에서는 일반공무원이 높게 나타났다. “지역특색에 맞는 치안정책 제공”에 대해서는 지역($F=3.855, p=.022$), 자치경찰 위계($F=30.015, p=.000$), 직급($F=15.333, p=.00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의 경우 전라남도가 낮게 나타났으며, 자치경찰 위계에서는 자치경찰위원회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직급에서는 일반공무원이 높게 나타났다. “지역 토착비리 근절효과”에 대해서는 지역($F=4.747, p=.009$), 자치경찰 위계($F=13.623, p=.000$), 직급($F=13.528, p=.00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의 경우 전라남도가 낮게 나타났으며, 자치경찰 위계에서는 자치경찰위원회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직급에서는 일반공무원이 높게 나타났다.

“지방행정과 연계된 종합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는 자치경찰 위계($F=20.738, p=.000$), 직급($F=11.559, p=.00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경찰 위계에서는 자치경찰위원회가 높게 나타났다. 직급에서는 일반공무원이 높게 나타났다. “시민의 경찰신뢰 향상”에 대해서는 자치경찰 위계($F=11.826, p=.000$), 직급($F=7.471,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경찰 위계에서는 자치경찰위원회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직급에서는 일반공무원이 높게 나타났다. “기존 국가경찰서비스와 차별화”에 대해서는 자치경찰 위계($F=16.241, p=.000$), 직급($F=8.268, p=.00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경찰 위계에서는 자치경찰위원회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직급에서는 일반공무원이 높게 나타났다(<표 4-35> 참조).

지역사회 치안서비스 향상, 지역특색에 맞는 치안정책 제공, 지방행정과 연계된 종합서비스 제공 등 치안서비스와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경향이 강하였으나, 상대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참여 공무원은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경향을 보였다.

<표 4-35> 집단유형별 자치경찰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치안서비스) 차이 분석

구분	집단유형		평균	F	유의 확률	집단유형		평균	F	유의 확률
① 지역사회 치안서비스 향상	지역	광주광역시	2.96	3.064	.047*	연령	40세이하	2.86	.109	.897
		전라북도	2.83				41-50세	2.82		
		전라남도	2.69				51세이상	2.85		
	자치경찰 위계	자치위	3.81	26.356	.000***	직급	경위이하	2.70	16.287	.000***
		시/도경	2.70				경감/경정	3.02		
		일선경찰서	2.75				일반공무원	3.50		
② 지역특색에 맞는 치안정책 제공	지역	광주광역시	3.06	3.855	.022*	연령	40세이하	2.96	.165	.848
		전라북도	2.97				41-50세	2.91		
		전라남도	2.75				51세이상	2.96		
	자치경찰 위계	자치위	3.96	30.015	.000***	직급	경위이하	2.81	15.333	.000***
		시/도경	2.78				경감/경정	3.09		
		일선경찰서	2.85				일반공무원	3.60		
③ 지역 도착 비리 근절효과	지역	광주광역시	2.38	4.747	.009**	연령	40세이하	2.32	.662	.516
		전라북도	2.35				41-50세	2.23		
		전라남도	2.07				51세이상	2.34		
	자치경찰 위계	자치위	2.92	13.623	.000***	직급	경위이하	2.25	13.528	.000***
		시/도경	2.05				경감/경정	2.09		
		일선경찰서	2.27				일반공무원	2.94		
④ 지방행정과 연계된 종합 서비스 제공	지역	광주광역시	2.92	1.336	.264	연령	40세이하	2.83	.140	.870
		전라북도	2.80				41-50세	2.80		
		전라남도	2.75				51세이상	2.86		
	자치경찰 위계	자치위	3.67	20.738	.000***	직급	경위이하	2.73	11.559	.000***
		시/도경	2.83				경감/경정	2.88		
		일선경찰서	2.72				일반공무원	3.44		
⑤ 시민의 경찰 신뢰 향상	지역	광주광역시	2.70	.783	.458	연령	40세이하	2.68	.279	.757
		전라북도	2.68				41-50세	2.63		
		전라남도	2.58				51세이상	2.69		
	자치경찰 위계	자치위	3.27	11.826	.000***	직급	경위이하	2.61	7.471	.001***
		시/도경	2.53				경감/경정	2.61		
		일선경찰서	2.62				일반공무원	3.15		
⑥ 기존 국가경찰 서비스와 차별화	지역	광주광역시	2.54	2.606	.075	연령	40세이하	2.47	.153	.858
		전라북도	2.48				41-50세	2.43		
		전라남도	2.31				51세이상	2.47		
	자치경찰 위계	자치위	3.15	16.241	.000***	직급	경위이하	2.41	8.268	.000***
		시/도경	2.28				경감/경정	2.34		
		일선경찰서	2.41				일반공무원	2.96		

주: *(p < 0.05), **(p < 0.01), ***(p < 0.001)

(2) 자치경찰 조직·인사제도에 대한 인식

① 조직 관점

집단유형별 자치경찰 조직·인사제도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 조직 관점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 “지휘체계 중복 및 혼선”에 대해서는 지역(F=3.425, p=.033), 자치경찰 위계(F=5.248, p=.006), 직급(F=3.326, p=.037)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의 경우 전라남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자치경찰 위계에서는 시/도경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직급에서는 경위이하가 높게 나타났다. “시도 자치경찰위의 개입 증가”에 대해서는 지역($F=4.877$, $p=.008$), 자치경찰 위계($F=11.046$, $p=.000$), 직급($F=17.344$, $p=.00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의 경우 전라남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자치경찰 위계에서는 자치경찰위원회가 낮게 나타났다. 또한, 직급에서는 일반공무원이 낮게 나타났다. “승진/전보 등 인사 혼란”에 대해서는 자치경찰 위계($F=6.370$, $p=.002$), 직급($F=7.704$, $p=.00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경찰 위계에서는 자치경찰위원회가 낮게 나타났다. 또한, 직급에서는 일반공무원이 낮게 나타났다.

“부서 내 자치/국가 사무 혼재로 업무혼선”에 대해서는 자치경찰 위계($F=3.150$, $p=.044$), 직급($F=4.627$, $p=.01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경찰 위계에서는 자치경찰위원회가 낮게 나타났다. 또한, 직급에서는 일반공무원이 낮게 나타났다. “직원들의 자치사무 기피”에 대해서는 지역($F=4.995$, $p=.007$), 직급($F=3.379$, $p=.03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의 경우 광주광역시 낮게 나타났으며, 직급에서는 일반공무원이 낮게 나타났다. “승진/전보 등 직원 줄서기 현상 발생”에 대해서는 자치경찰 위계($F=13.911$, $p=.000$), 직급($F=9.444$, $p=.00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경찰 위계에서는 자치경찰위원회가 낮게 나타났으며, 직급에서는 일반공무원이 낮게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찰에 대한 업무 이관”에 대해서는 자치경찰 위계($F=16.322$, $p=.000$), 직급($F=15.662$, $p=.00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경찰 위계에서는 자치경찰위원회가 낮게 나타났으며, 직급에서는 일반공무원이 낮게 나타났다(<표 4-36> 참조).

조직관점에서 자치경찰 조직·인사제도에 대한 인식으로 제시된 지휘체계 중복 및 혼선, 승진/전보 등 인사 혼란, 부서 내 자치/국가 사무 혼재로 업무혼선 등 치안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현장의 경찰공무원을 부정적인 인식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제의 정착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일선의 경찰공무원에 비해 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치안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부조리한 문제로 인한 업무의 차질 등으로 치안행정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표 4-36> 집단유형별 자치경찰 조직·인사제도(조직 관점) 차이 분석

구분	집단유형		평균	F	유의 확률	집단유형		평균	F	유의 확률
① 지휘체계 중 복 및 혼선	지역	광주광역시	3.71	3.425	.033 *	연령	40세이하	3.80	1.394	.249
		전라북도	3.62				41-50세	3.73		
		전라남도	3.87				51세이상	3.63		
	자치경찰 위계	자치위	3.47	5.248	.006 **	직급	경위이하	3.77	3.326	.037 *
		시/도경	3.94				경감/경정	3.66		
		일선경찰서	3.69				일반공무원	3.43		
② 시도자치경 찰위의 개입 증가	지역	광주광역시	3.74	4.877	.008 **	연령	40세이하	3.78	.508	.602
		전라북도	3.75				41-50세	3.86		
		전라남도	4.00				51세이상	3.78		
	자치경찰 위계	자치위	3.27	11.046	.000 ***	직급	경위이하	3.90	17.344	.000 ***
		시/도경	3.95				경감/경정	3.67		
		일선경찰서	3.84				일반공무원	3.12		
③ 승진/전보 등 인사 혼란	지역	광주광역시	3.64	2.593	.076	연령	40세이하	3.74	1.197	.303
		전라북도	3.79				41-50세	3.71		
		전라남도	3.84				51세이상	3.85		
	자치경찰 위계	자치위	3.35	6.370	.002 **	직급	경위이하	3.78	7.704	.000 ***
		시/도경	3.84				경감/경정	3.90		
		일선경찰서	3.78				일반공무원	3.33		
④ 부서 내 자 치/국가 사무 혼재로 업무 혼선	지역	광주광역시	3.71	2.835	.060	연령	40세이하	3.81	.919	.400
		전라북도	3.90				41-50세	3.90		
		전라남도	3.91				51세이상	3.78		
	자치경찰 위계	자치위	3.53	3.150	.044 *	직급	경위이하	3.87	4.627	.010 **
		시/도경	3.88				경감/경정	3.91		
		일선경찰서	3.87				일반공무원	3.47		
⑤ 직원들의 자 치사무 기피	지역	광주광역시	3.50	4.995	.007 **	연령	40세이하	3.67	.027	.973
		전라북도	3.70				41-50세	3.67		
		전라남도	3.79				51세이상	3.65		
	자치경찰 위계	자치위	3.38	2.561	.078	직급	경위이하	3.70	3.379	.035 *
		시/도경	3.70				경감/경정	3.68		
		일선경찰서	3.68				일반공무원	3.35		
⑥ 승진/전보 등 직원 출 서기 현상 발 생	지역	광주광역시	3.36	2.882	.057	연령	40세이하	3.51	.055	.947
		전라북도	3.58				41-50세	3.52		
		전라남도	3.57				51세이상	3.49		
	자치경찰 위계	자치위	2.87	13.911	.000 ***	직급	경위이하	3.58	9.444	.000 ***
		시/도경	3.41				경감/경정	3.52		
		일선경찰서	3.61				일반공무원	2.94		
⑦ 지자체의 경 찰에 대한 업 무 이관	지역	광주광역시	3.71	1.266	.283	연령	40세이하	3.82	.067	.935
		전라북도	3.84				41-50세	3.79		
		전라남도	3.83				51세이상	3.80		
	자치경찰 위계	자치위	3.12	16.322	.000 ***	직급	경위이하	3.88	15.662	.000 ***
		시/도경	3.81				경감/경정	3.83		
		일선경찰서	3.88				일반공무원	3.13		

주: *(p < 0.05), **(p < 0.01), ***(p < 0.001)

② 대외적 관계

집단유형별 자치경찰 조직·인사제도에 대한 인식 관련 대외적 관계를 살펴본 결과 “국가/자치경찰 간 업무 혼선”에 대해서는 자치경찰 위계(F=3.107, p=.045), 직급(F=5.182, p=.006)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경찰 위계에서는 자치경찰위원회가 낮게 나타났으며, 직급에서는 일반공무원이 낮게 나타났다. “국가/자치경찰 간 협조 부족”에 대해서는 자치경찰 위계(F=3.087, p=.046), 직급(F=6.623,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경찰 위계에서는 자치경찰위원회가 낮게 나타났으며, 직급에서는 일반공무원이 낮게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개입 증가”에 대해서는 자치경찰 위계(F=24.651, p=.000), 직급(F=17.344, p=.00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경찰 위계에서는 자치경찰위원회가 낮게 나타났으며, 직급에서는 일반공무원이 낮게 나타났다. “국가경찰청장의 자치경찰 개입”에 대해서는 자치경찰 위계(F=15.266, p=.000), 직급(F=7.929, p=.00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경찰 위계에서는 자치경찰위원회가 낮게 나타났다. 또한, 직급에서는 경위이하가 높게 나타났다(<표 4-37> 참조).

<표 4-37> 집단유형별 자치경찰 조직·인사제도(대외적 관계) 차이 분석

구분	집단유형		평균	F	유의 확률	집단유형		평균	F	유의 확률
① 국가/자치경찰 간 업무 혼선	지역	광주광역시	3.78	.548	.579	연령	40세이하	3.82	.014	.987
		전라북도	3.81				41-50세	3.82		
		전라남도	3.87				51세이상	3.80		
	자치경찰 위계	자치위	3.53	3.107	.045*	직급	경위이하	3.86	5.182	.006**
		시/도경	3.86				경감/경정	3.84		
		일선경찰서	3.84				일반공무원	3.45		
② 국가/자치경찰 협조 부족	지역	광주광역시	3.69	2.328	.098	연령	40세이하	3.91	2.659	.071
		전라북도	3.85				41-50세	3.80		
		전라남도	3.86				51세이상	3.69		
	자치경찰 위계	자치위	3.51	3.087	.046*	직급	경위이하	3.87	6.623	.001***
		시/도경	3.85				경감/경정	3.74		
		일선경찰서	3.82				일반공무원	3.41		
③ 지자체장의 개입 증가	지역	광주광역시	3.68	2.282	.103	연령	40세이하	3.80	.387	.679
		전라북도	3.80				41-50세	3.80		
		전라남도	3.89				51세이상	3.73		
	자치경찰 위계	자치위	2.94	24.651	.000***	직급	경위이하	3.90	17.344	.000***
		시/도경	3.78				경감/경정	3.67		
		일선경찰서	3.89				일반공무원	3.12		
④ 국가경찰청장의 자치경찰 개입	지역	광주광역시	3.20	1.197	.303	연령	40세이하	3.32	.533	.587
		전라북도	3.24				41-50세	3.24		
		전라남도	3.35				51세이상	3.22		
	자치경찰 위계	자치위	2.71	15.266	.000***	직급	경위이하	3.36	7.929	.000***
		시/도경	3.07				경감/경정	3.00		
		일선경찰서	3.38				일반공무원	3.06		

주: *(p < 0.05), **(p < 0.01), ***(p < 0.001)

대외적 관계에서 자치경찰 조직·인사제도에 대한 인식으로 제시된 국가/자치경찰 간 업무 혼선, 국가/자치경찰 간 협조 부족, 지방자치단체장의 개입 증가 등 치안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현장의 경찰공무원을 부정적인 인식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제의 정착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일선의 경찰공무원에 비해 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국가 및 자치단체 등 타 기관으로의 불합리한 관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③ 치안서비스

집단유형별 자치경찰 조직·인사제도에 대한 인식 관련 치안서비스를 살펴본 결과 “지방자치단체 간 경찰서비스 불균형”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집단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38> 집단유형별 자치경찰 조직·인사제도(치안서비스) 차이분석

구분	집단유형		평균	F	유의 확률	집단유형		평균	F	유의 확률
	지역	자치경찰 위계				연령	직급			
① 지자체간 경찰서비스 불균형	지역	광주광역시	3.71	.011	.989	연령	40세이하	3.73	.045	.956
		전라북도	3.72				41-50세	3.71		
		전라남도	3.73				51세이상	3.73		
	자치경찰 위계	자치위	3.53	1.329	.266	직급	경위이하	3.75	2.460	.086
		시/도경	3.70				경감/경정	3.74		
		일선경찰서	3.75				일반공무원	3.45		

주: *(p < 0.05), **(p < 0.01), ***(p < 0.001)

3) 성과 : 자치경찰제도의 성과 및 만족도 관련 분석결과

(1) 조직 관점

집단유형별 자치경찰제도의 성과와 만족도에 대한 조직 관점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 “자치경찰제 업무수행 만족”에 대해서는 지역(F=4.962, p=.007), 자치경찰 위계(F=12.152, p=.000), 직급(F=6.692,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의 경우 전라남도가 낮게 나타났으며, 자치경찰 위계에서는 자치경찰위원회가 높게 나타났으며, 직급에서는 일반공무원이 높게 나타났다. “종합적 성과 높게 인식”에 대해서는 지역(F=6.635, p=.001), 자치경찰 위계(F=18.354, p=.000), 직급(F=10.306, p=.00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의 경우 광주광역시가 높게 나타났으며, 자치경찰 위계에서는 자치경찰

위원회가 높게 나타났으며, 직급에서는 일반공무원이 높게 나타났다(<표 4-39> 참조).

자치경찰조직 내부적으로 성과와 만족도가 낮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무 몰입과 직무만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기타의견으로 제시되고 있는 인사상의 불이익 해소, 복리후생의 향상, 직무몰입이 가능하도록 자율적인 근무환경의 조성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표 4-39> 집단유형별 자치경찰제도 성과와 만족도(조직 관점)차이 분석

구분	집단유형		평균	F	유의 확률	집단유형		평균	F	유의 확률
① 자치경찰제 업무수행 만 족	지역	광주광역시	2.68	4.962	.007 **	연령	40세이하	2.63	1.089	.337
		전라북도	2.63				41-50세	2.51		
		전라남도	2.39				51세이상	2.62		
	자치경찰 위계	자치위	3.15	12.152	.000 ***	직급	경위이하	2.55	6.692	.001 ***
		시/도경	2.41				경감/경정	2.48		
		일선경찰서	2.56				일반공무원	3.02		
② 종합적 성과 높게 인식	지역	광주광역시	2.72	6.635	.001 ***	연령	40세이하	2.60	.686	.504
		전라북도	2.58				41-50세	2.51		
		전라남도	2.35				51세이상	2.61		
	자치경찰 위계	자치위	3.31	18.354	.000 ***	직급	경위이하	2.50	10.306	.000 ***
		시/도경	2.42				경감/경정	2.51		
		일선경찰서	2.51				일반공무원	3.13		

주: *(p < 0.05), **(p < 0.01), ***(p < 0.001)

(2) 대외적 관계

집단유형별 자치경찰제도의 성과와 만족도에 대한 대외적 관계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 “치안서비스 정치적 중립성 향상”에 대해서는 지역(F=6.352, p=.002), 자치경찰 위계(F=10.246, p=.000), 연령(F=3.452, p=.032), 직급(F=9.621, p=.00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의 경우 전라남도가 낮게 나타났으며, 자치경찰 위계에서는 자치경찰위원회가 높게 나타났다. 연령의 경우 51세 이상이 높게 나타났으며, 직급에서는 일반공무원이 높게 나타났다. “시민과의 유대 강화”에 대해서는 지역(F=5.166, p=.006), 자치경찰 위계(F=21.722, p=.000), 직급(F=10.866, p=.00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의 경우 전라남도가 낮게 나타났으며, 자치경찰 위계에서는 자치경찰위원회가 높게 나타났으며, 직급에서는 일반공무원이 높게 나타났다(<표 4-40> 참조).

치안서비스 정치적 중립성을 제고하고, 시민과의 유대 강화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과도한 지방자치단체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외부로부터의 정치적 영향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치경찰위원회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표 4-40> 집단유형별 자치경찰제도 성과와 만족도(대외적 관계) 차이 분석

구분	집단유형		평균	F	유의 확률	집단유형		평균	F	유의 확률
① 치안서비스 정치적 중립 성 향상	지역	광주광역시	2.81	6.352	.002 **	연령	40세이하	2.57	3.452	.032 *
		전라북도	2.69				41-50세	2.61		
		전라남도	2.45				51세이상	2.82		
	자치경찰 위계	자치위	3.23	10.246	.000 ***	직급	경위이하	2.59	9.621	.000 ***
		시/도경	2.56				경감/경정	2.65		
		일선경찰서	2.62				일반공무원	3.21		
② 시민과의 유 대 강화	지역	광주광역시	3.05	5.166	.006 **	연령	40세이하	2.92	2.160	.116
		전라북도	2.94				41-50세	2.82		
		전라남도	2.71				51세이상	3.03		
	자치경찰 위계	자치위	3.77	21.722	.000 ***	직급	경위이하	2.79	10.866	.000 ***
		시/도경	2.90				경감/경정	3.11		
		일선경찰서	2.81				일반공무원	3.38		

주: *(p < 0.05), **(p < 0.01), ***(p < 0.001)

(3) 치안서비스

집단유형별 자치경찰제도의 성과와 만족도에 대한 치안서비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 “치안서비스 정합성 향상”에 대해서는 지역(F=3.694, p=.025), 자치경찰 위계(F=23.014, p=.000), 직급(F=14.055, p=.00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지역의 경우 광주광역시가 높게 나타났으며, 자치경찰 위계에서는 자치경찰위원회가 높게 나타났다. 직급에서는 일반공무원이 높게 나타났다. “치안서비스 능률성 제고”에 대해서는 지역(F=7.037, p=.001), 자치경찰 위계(F=7.761, p=.000), 연령(F=3.476, p=.032), 직급(F=9.630, p=.00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지역의 경우 전라남도가 낮게 나타났으며, 자치경찰 위계에서는 자치경찰위원회가 높게 나타났으며, 직급에서는 일반공무원이 높게 나타났다. “치안서비스 민주성 강화”에 대해서는 지역(F=7.316, p=.001), 자치경찰 위계(F=23.860, p=.000), 직급(F=14.111, p=.00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의 경우 광주광역시가 높게 나타났으며, 자치경찰위계에서는 자치경찰위가 높게 나타났다. 직급에서는 일반공무원이 높게 나타났다. “치안서비스 책임성 향상”에 대해서는 지역(F=6.087, p=.002), 자치경찰 위계(F=15.208, p=.000), 직급(F=14.324, p=.00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의 경우 전라남도가 낮게 나타났으며, 자치경찰 위계에서는 자치경찰위원회가 높게 나타났으며, 직급에서는 일반공무원이 높게 나타났다. “치안서비스 신속성 향상”에 대해서는 지역(F=6.230, p=.002), 자치경찰 위계(F=11.275, p=.000), 직급(F=12.662, p=.00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지역의 경우 전라남도가 낮게 나타났으며, 자치경찰 위계에서는 자치경찰위원회가 높게 나타났다. 직급에서는 일반공무원이 높게 나타났다. “중대/긴급사건 발생 시 대응역량 강화”에 대해서는 지역(F=6.148, p=.002),

자치경찰 위계($F=10.912$, $p=.000$), 직급($F=10.696$, $p=.00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의 경우 전라남도가 낮게 나타났으며, 자치경찰 위계에서는 자치경찰위원회가 높게 나타났으며, 직급에서는 일반공무원이 높았다. “지역주민의 치안만족도 향상”에 대해서는 지역($F=3.912$, $p=.021$), 자치경찰 위계($F=15.973$, $p=.000$), 직급($F=10.907$, $p=.00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지역의 경우 광주광역시가 높았고, 자치경찰 위계에서는 자치경찰위원회가 높게 나타났다. 직급에서는 일반공무원이 높았다(<표 4-41> 참조).

<표 4-41> 집단유형별 자치경찰제도 성과와 만족도(치안서비스) 차이 분석

구분	집단유형		평균	F	유의 확률	집단유형		평균	F	유의 확률
① 치안서비스 통합성 향상	지역	광주광역시	2.88	3.694	.025 *	연령	40세이하	2.78	.801	.449
		전라북도	2.74				41-50세	2.69		
		전라남도	2.63				51세이상	2.79		
	자치경찰 위계	자치위	3.50	23.014	.000 ***	직급	경위이하	2.68	14.055	.000 ***
		시/도경	2.62				경감/경정	2.74		
		일선경찰서	2.69				일반공무원	3.35		
② 치안서비스 능률성 제고	지역	광주광역시	2.87	7.037	.001 ***	연령	40세이하	2.72	3.476	.032 *
		전라북도	2.70				41-50세	2.60		
		전라남도	2.52				51세이상	2.83		
	자치경찰 위계	자치위	3.15	7.761	.000 ***	직급	경위이하	2.62	9.630	.000 ***
		시/도경	2.61				경감/경정	2.78		
		일선경찰서	2.67				일반공무원	3.17		
③ 치안서비스 민주성 강화	지역	광주광역시	2.98	7.316	.001 ***	연령	40세이하	2.75	1.757	.173
		전라북도	2.76				41-50세	2.73		
		전라남도	2.61				51세이상	2.90		
	자치경찰 위계	자치위	3.62	23.860	.000 ***	직급	경위이하	2.68	14.111	.000 ***
		시/도경	2.66				경감/경정	2.88		
		일선경찰서	2.72				일반공무원	3.38		
④ 치안서비스 책임성 향상	지역	광주광역시	2.94	6.087	.002 **	연령	40세이하	2.75	1.156	.316
		전라북도	2.82				41-50세	2.75		
		전라남도	2.58				51세이상	2.89		
	자치경찰 위계	자치위	3.50	15.208	.000 ***	직급	경위이하	2.68	14.324	.000 ***
		시/도경	2.77				경감/경정	2.93		
		일선경찰서	2.71				일반공무원	3.40		
⑤ 치안서비스 신속성 향상	지역	광주광역시	2.86	6.230	.002 **	연령	40세이하	2.67	2.743	.065
		전라북도	2.72				41-50세	2.62		
		전라남도	2.50				51세이상	2.85		
	자치경찰 위계	자치위	3.31	11.275	.000 ***	직급	경위이하	2.64	12.662	.000 ***
		시/도경	2.61				경감/경정	2.67		
		일선경찰서	2.66				일반공무원	3.35		
⑥ 중대/긴급사 건 발생 시 대응역량 강 화	지역	광주광역시	2.72	6.148	.002 **	연령	40세이하	2.57	.405	.667
		전라북도	2.61				41-50세	2.54		
		전라남도	2.36				51세이상	2.63		
	자치경찰 위계	자치위	3.15	10.912	.000 ***	직급	경위이하	2.51	10.696	.000 ***
		시/도경	2.41				경감/경정	2.53		
		일선경찰서	2.55				일반공무원	3.17		
⑦ 지역주민의 치안만족도 향상	지역	광주광역시	2.91	3.912	.021 *	연령	40세이하	2.79	1.398	.248
		전라북도	2.76				41-50세	2.69		
		전라남도	2.62				51세이상	2.86		
	자치경찰 위계	자치위	3.50	15.973	.000 ***	직급	경위이하	2.68	10.907	.000 ***
		시/도경	2.70				경감/경정	2.83		
		일선경찰서	2.70				일반공무원	3.35		

주: *(p < 0.05), **(p < 0.01), ***(p < 0.001)

4) 환류 : 자치경찰제도 발전방향 관련 분석결과

(1) 자치경찰제도 정착의 장애요인

조직의 관점에서 집단유형별 자치경찰제 정착의 장애요인에 대한 인식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지방행정사무를 치안행정업무로 전가 가능성”에 대해서는 자치경찰 위계($F=26.309, p=.000$), 직급($F=22.468, p=.00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자치경찰 위계에서는 자치경찰위원회가 낮았으며, 직급에서는 일반공무원이 낮게 나타났다(<표 4-42> 참조). “재정적 여건 미흡”에 대해서는 지역($F=3.189, p=.042$), 직급($F=3.073, p=.047$)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의 경우 전라남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직급에서는 일반공무원이 낮게 나타났다. “자치경찰위원회 전문성 부족”에 대해서는 지역($F=3.905, p=.021$), 자치경찰 위계($F=5.457, p=.004$), 직급($F=3.339, p=.036$)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지역의 경우 전라남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자치경찰 위계에서는 자치경찰위원회가 낮게 나타났으며, 직급에서는 일반공무원이 낮았다. “자치경찰위원회 권한 제한 및 역할 불분명”에 대해서는 집단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성원의 인식부족”에 대해서는 지역($F=3.355, p=.036$), 자치경찰 위계($F=3.116, p=.04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의 경우 광주광역시 낮게 나타났으며, 자치경찰 위계에서는 자치경찰위원회가 낮게 나타났다(<표 4-42> 참조). 이러한 통계분석 결과를 살펴볼 때, 지방행정사무를 치안행정업무로 전가 가능성, 재정적 여건 미흡, 자치경찰위원회 전문성 부족, 자치경찰위원회 권한 제한 및 역할 불분명 등의 장애요인으로 인해 자치경찰제의 정착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향후 자치경찰제의 정착을 위해서는 이러한 장애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법·제도적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표 4-42> 집단유형별 자치경찰제도 정착의 장애요인(조직 관점) 차이 분석

구분	집단유형		평균	F	유의 확률	집단유형		평균	F	유의 확률
① 지방행정사무를 치안행정업무로 전가 가능성	지역	광주광역시	3.81	.409	.664	연령	40세이하	3.82	.197	.822
		전라북도	3.84				41-50세	3.88		
		전라남도	3.90				51세이상	3.84		
	자치경찰 위계	자치위	3.00	26.309	.000***	직급	경위이하	3.91	22.468	.000***
		시/도경	3.85				경감/경정	3.97		
		일선경찰서	3.95				일반공무원	3.06		
② 재정적 여건 미흡	지역	광주광역시	3.92	3.189	.042**	연령	40세이하	3.94	.658	.518
		전라북도	3.96				41-50세	4.02		
		전라남도	4.15				51세이상	4.04		
	자치경찰 위계	자치위	3.83	1.985	.138	직급	경위이하	3.98	3.073	.047*
		시/도경	3.91				경감/경정	4.16		
		일선경찰서	4.04				일반공무원	3.83		
③ 자치경찰위원회 전문성 부족	지역	광주광역시	3.65	3.905	.021*	연령	40세이하	3.58	2.060	.128
		전라북도	3.59				41-50세	3.77		
		전라남도	3.85				51세이상	3.67		
	자치경찰 위계	자치위	3.29	5.457	.004**	직급	경위이하	3.72	3.339	.036*
		시/도경	3.66				경감/경정	3.69		
		일선경찰서	3.74				일반공무원	3.37		
④ 자치경찰위원회 권한 제한 및 역할 불분명	지역	광주광역시	3.73	1.476	.229	연령	40세이하	3.67	1.707	.182
		전라북도	3.73				41-50세	3.83		
		전라남도	3.87				51세이상	3.80		
	자치경찰 위계	자치위	3.75	.622	.537	직급	경위이하	3.74	1.597	.203
		시/도경	3.69				경감/경정	3.90		
		일선경찰서	3.79				일반공무원	3.81		
⑤ 구성원의 인식 부족	지역	광주광역시	3.55	3.355	.036*	연령	40세이하	3.64	.918	.400
		전라북도	3.71				41-50세	3.74		
		전라남도	3.79				51세이상	3.64		
	자치경찰 위계	자치위	3.40	3.116	.045*	직급	경위이하	3.68	2.548	.079
		시/도경	3.62				경감/경정	3.79		
		일선경찰서	3.73				일반공무원	3.44		

주: *(p < 0.05), **(p < 0.01), ***(p < 0.001)

집단유형별 자치경찰제 정착의 장애요인(대외적 관계)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국가경찰신분으로 자치경찰사무 수행”에 대해서는 직급(F=3.105, p=.046)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급에서는 일반공무원이 낮게 나타났다. “지방행정과 연계 미흡”에 대해서는 지역(F=4.769, p=.009), 자치경찰 위계(F=9.869, p=.000), 직급(F=5.084, p=.006)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의 경우 전라남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자치경찰 위계에서는 자치경찰위원회가 낮았으며, 직급에서는 일반공무원이 낮게 나타났다.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한계”에 대해서는 자치경찰 위계(F=15.341, p=.000), 직급(F=6.927,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자치경찰 위계에서는 자치경찰위원회가 낮게 나타났으며, 직급에서는 일반공무원이 낮았다. “이전과 변화 없는 현장경찰의 가동시스템”에 대해서는 집단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4-43> 참조). 국가경찰신분으로 자치경찰사무 수행, 지방행정과 연계 미흡,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한계, 이전과 변화 없는 현장경찰의 가동시스템 등의 문제로 인해 대외적 관계의 형성에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장애요인을 극복하기 위해 자치경찰위원회를 중심으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표 4-43> 집단유형별 자치경찰제도 정착의 장애요인(대외적 관계) 차이 분석

구분	집단유형		평균	F	유의 확률	집단유형		평균	F	유의 확률
① 국가경찰신분으로 자치경찰사무 수행	지역	광주광역시	4.02	1.390	.250	연령	40세이하	3.93	.593	.553
		전라북도	3.91				41-50세	4.01		
		전라남도	4.04				51세이상	4.02		
	자치경찰 위계	자치위	3.90	.330	.719	직급	경위이하	3.98	3.105	.046*
		시/도경	4.02				경감/경정	4.11		
		일선경찰서	3.99				일반공무원	3.77		
② 지방행정과 연계 미흡	지역	광주광역시	3.64	4.769	.009**	연령	40세이하	3.69	.792	.454
		전라북도	3.72				41-50세	3.80		
		전라남도	3.92				51세이상	3.76		
	자치경찰 위계	자치위	3.27	9.869	.000***	직급	경위이하	3.78	5.084	.006**
		시/도경	3.70				경감/경정	3.80		
		일선경찰서	3.83				일반공무원	3.38		
③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한계	지역	광주광역시	3.60	2.978	.052	연령	40세이하	3.60	.820	.441
		전라북도	3.62				41-50세	3.71		
		전라남도	3.82				51세이상	3.70		
	자치경찰 위계	자치위	3.04	15.341	.000***	직급	경위이하	3.69	6.927	.001***
		시/도경	3.62				경감/경정	3.78		
		일선경찰서	3.76				일반공무원	3.23		
④ 이전과 변화 없는 현장경찰의 가동시스템	지역	광주광역시	3.81	1.811	.164	연령	40세이하	3.91	.374	.688
		전라북도	3.86				41-50세	3.89		
		전라남도	3.98				51세이상	3.83		
	자치경찰 위계	자치위	3.96	.264	.768	직급	경위이하	3.85	2.345	.097
		시/도경	3.87				경감/경정	4.03		
		일선경찰서	3.87				일반공무원	3.75		

주: *(p < 0.05), **(p < 0.01), ***(p < 0.001)

집단유형별 성공적인 자치경찰제 정착의 가장 큰 장애요인에 대한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44>과 같다. 지방행정사무를 치안행정업무로 전가할 가능성이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인식되었으며, 다음으로는 국가경찰신분으로 자치경찰사무 수행, 재정적 여건 미흡, 이전과 변화 없는 현장경찰의 가동시스템, 지방행정과 연계 미흡 순으로 나타났다.

<표 4-44> 집단유형별 성공적인 자치경찰제도 정착의 가장 큰 장애요인 차이 분석

구분		지방행정 사무를 치안행정 업무로 전가 가능성	국가 경찰 신분으로 자치경찰 사무 수행	지방 행정과 연계 미흡	재정적 여건 미흡	자치 경찰의 적응 성 한계	자치경찰 위원회 전문성 부족	자치경찰 위원회 권한 제한 및 역할 불분명	이전과 변화 없는 현장 경찰의 가동시 스템	구성원 의 인식 부족	합계	χ^2 검정
지역	광주광역시	50 17.9	58 20.8	22 7.9	54 19.4	12 4.3	27 9.7	19 6.8	26 9.3	11 3.9	279 100.0	$\chi^2=24.370$ p=.143
	전라북도	72 20.5	71 20.2	33 9.4	55 15.7	22 6.3	22 6.3	17 4.8	49 14.0	10 2.8	351 100.0	
	전라남도	44 18.7	45 19.1	20 8.5	53 22.6	15 6.4	23 9.8	14 6.0	16 6.8	5 2.1	235 100.0	
자치 경찰 위계	자치경찰위 원회	5 6.0	22 26.5	7 8.4	15 18.1	1 1.2	7 8.4	13 15.7	11 13.3	2 2.4	83 100.0	$\chi^2=56.924$ p=.000***
	시/도경	27 15.4	32 18.3	14 8.0	37 21.1	8 4.6	24 13.7	11 6.3	16 9.1	6 3.4	175 100.0	
	일선경찰서	134 22.1	120 19.8	54 8.9	110 18.1	40 6.6	41 6.8	26 4.3	64 10.5	18 3.0	607 100.0	
연령	40세이하	48 18.7	39 15.2	29 11.3	49 19.1	14 5.4	21 8.2	18 7.0	32 12.5	7 2.7	257 100.0	$\chi^2=16.914$ p=.529
	41-50세	64 17.9	80 22.3	28 7.8	69 19.3	18 5.0	33 9.2	18 5.0	37 10.3	11 3.1	358 100.0	
	51세이상	52 21.3	53 21.7	17 7.0	44 18.0	17 7.0	18 7.4	13 5.3	22 9.0	8 3.3	244 100.0	
직급	경위이하	112 19.0	117 19.8	53 9.0	113 19.2	36 6.1	51 8.6	31 5.3	62 10.5	15 2.5	590 100.0	$\chi^2=35.081$ p=.009**
	경감/경정	47 24.2	38 19.6	15 7.7	35 18.0	11 5.7	11 5.7	7 3.6	22 11.3	8 4.1	194 100.0	
	일반공무원	6 8.0	19 25.3	6 8.0	13 17.3	2 2.7	9 12.0	11 14.7	6 8.0	3 4.0	75 100.0	

주: *(p < 0.05), **(p < 0.01), ***(p < 0.001)

(2) 자치경찰제도 정착의 필요요소

조직 관점에서 집단유형별 자치경찰제 정착을 위한 필요요소에 대한 인식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구성 다양성 강화”에 대해서는 지역(F=4.136, p=.016), 자치경찰 위계(F=5.512, p=.004), 직급(F=6.308, p=.002)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지역의 경우 전라남도가 낮게 나타났으며, 자치경찰 위계에서는 자치경찰위원회가 높게 나타났으며, 직급에서는 경위이하가 낮게 나타났다. “자치경찰 인사, 평가 및 지휘감독 관계 재정립”에 대해서는 지역(F=3.866, p=.021), 자치경찰 위계(F=12.508, p=.000), 직급(F=4.115, p=.017)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의 경우 전라북도가 높았으며, 자치경찰 위계에서는 자치경찰위원회가 높았고, 직급에서는 일반공무원이 높게 나타났다. “자치경찰사무 관련 체계화된 교육과정 및 교육기관 신설”에 대해서는 지역(F=9.119, p=.000), 자치경찰 위계(F=7.743, p=.000), 직급(F=4.253, p=.01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지역의 경우 전라남도가 낮았으며, 자치경찰 위계에서는 자치경찰위원회가 높게 나타났으며, 직급에서는 일반공무원이 높았다. “기초

자치단체(경찰서)에서도 자치경찰 도입”에 대해서는 지역(F=7.460, p=.001), 자치경찰 위계(F=27.211, p=.000), 직급(F=15.978, p=.00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의 경우 전라남도가 낮게 나타났으며, 자치경찰 위계에서는 자치경찰위가 높게 나타났으며, 직급에서는 일반공무원이 높게 나타났다(<표 4-45> 참조).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예산의 지자체 수립”에 대해서는 지역(F=4.288, p=.014), 자치경찰 위계(F=6.881, p=.001), 연령(F=3.577, p=.029), 직급(F=8.662, p=.00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의 경우 전라남도가 낮게 나타났으며, 자치경찰 위계에서는 자치경찰위원회가 높게 나타났으며, 직급에서는 경위이하가 낮게 나타났다. “자치경찰관의 지방직 공무원으로 전환”에 대해서는 지역(F=5.177, p=.006), 자치경찰 위계(F=20.480, p=.000), 직급(F=12.849, p=.00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의 경우 광주광역시가 높게 나타났으며, 자치경찰 위계에서는 자치경찰위원회가 높게 나타났으며, 직급에서는 일반공무원이 높게 나타났다(<표 4-45> 참조). 이러한 통계분석 결과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구성 다양성 강화, 자치경찰 인사, 평가 및 지휘감독 관계 재정립, 자치경찰사무 관련 체계화된 교육과정 및 교육기관 신설, 기초자치단체(경찰서)에서도 자치경찰제 도입,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예산의 지자체 수립 등 자치경찰제 정착을 위한 다양한 시책의 발권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4-45> 집단유형별 자치경찰제도 정착의 필요요소(조직 관점) 차이 분석

구분	집단유형		평균	F	유의 확률	집단유형		평균	F	유의 확률
① 시도자치경찰 위원회 구성 다양성 강화	지역	광주광역시	3.31	4.136	.016 *	연령	40세이하	3.21	2.224	.109
		전라북도	3.46				41-50세	3.33		
		전라남도	3.16				51세이상	3.44		
	자치경찰 위계	자치위	3.77	5.512	.004 **	직급	경위이하	3.23	6.308	.002 **
		시/도경	3.35				경감/경정	3.56		
		일선경찰서	3.27				일반공무원	3.58		
② 자치경찰 인사, 평가 및 지휘 감독 관계 재 정립	지역	광주광역시	3.66	3.866	.021 *	연령	40세이하	3.68	.821	.441
		전라북도	3.87				41-50세	3.79		
		전라남도	3.60				51세이상	3.67		
	자치경찰 위계	자치위	4.37	12.508	.000 ***	직급	경위이하	3.67	4.115	.017 *
		시/도경	3.54				경감/경정	3.77		
		일선경찰서	3.70				일반공무원	4.10		
③ 자치경찰 사무 관련 체계화 된 교육과정 및 교육기관 신설	지역	광주광역시	3.42	9.119	.000 ***	연령	40세이하	3.39	.641	.527
		전라북도	3.51				41-50세	3.30		
		전라남도	3.06				51세이상	3.41		
	자치경찰 위계	자치위	3.90	7.743	.000 ***	직급	경위이하	3.29	4.253	.015 *
		시/도경	3.25				경감/경정	3.43		
		일선경찰서	3.32				일반공무원	3.73		

구분	집단유형		평균	F	유의 확률	집단유형		평균	F	유의 확률
④ 기초자치단체(경찰서)에도 자치경찰제도 도입	지역	광주광역시	3.24	7.460	.001 ***	연령	40세이하	3.08	.294	.745
		전라북도	3.07				41-50세	3.00		
		전라남도	2.78				51세이상	3.07		
	자치경찰 위계	자치위	4.06	27.211	.000 ***	직급	경위이하	2.97	15.978	.000 ***
		시/도경	2.75				경감/경정	2.91		
		일선경찰서	3.00				일반공무원	3.87		
⑤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예산의 지자체수립	지역	광주광역시	3.37	4.288	.014 *	연령	40세이하	3.18	3.577	.029 *
		전라북도	3.46				41-50세	3.34		
		전라남도	3.13				51세이상	3.50		
	자치경찰 위계	자치위	3.88	6.881	.001 ***	직급	경위이하	3.22	8.662	.000 ***
		시/도경	3.30				경감/경정	3.60		
		일선경찰서	3.28				일반공무원	3.71		
⑥ 자치경찰관의 지방직 공무원으로 전환	지역	광주광역시	2.92	5.177	.006 **	연령	40세이하	2.72	.800	.450
		전라북도	2.70				41-50세	2.65		
		전라남도	2.50				51세이상	2.81		
	자치경찰 위계	자치위	3.73	20.480	.000 ***	직급	경위이하	2.67	12.849	.000 ***
		시/도경	2.51				경감/경정	2.53		
		일선경찰서	2.65				일반공무원	3.52		

주: *(p < 0.05), **(p < 0.01), ***(p < 0.001)

집단유형별 자치경찰제 정착의 필요요소(대외적 관계)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자치경찰에 대한 홍보”에 대해서는 지역(F=5.738, p=.003), 자치경찰 위계(F=12.128, p=.000), 직급(F=13.265, p=.00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의 경우 전라남도가 낮게 나타났으며, 자치경찰 위계에서는 자치경찰위원회가 높게 나타났으며, 직급에서는 경위이하가 낮게 나타났다(<표 4-46> 참조).

<표 4-46> 집단유형별 자치경찰제도 정착의 필요요소(대외적 관계) 차이 분석

구분	집단유형		평균	F	유의 확률	집단유형		평균	F	유의 확률
① 자치경찰에 대한 홍보	지역	광주광역시	3.39	5.738	.003 **	연령	40세이하	3.24	2.110	.122
		전라북도	3.43				41-50세	3.27		
		전라남도	3.09				51세이상	3.46		
	자치경찰 위계	자치위	4.00	12.128	.000 ***	직급	경위이하	3.18	13.265	.000 ***
		시/도경	3.20				경감/경정	3.57		
		일선경찰서	3.27				일반공무원	3.83		
② 국가/자치경찰의 명확한 업무기준	지역	광주광역시	3.75	3.164	.043 *	연령	40세이하	3.84	2.700	.068
		전라북도	3.98				41-50세	3.96		
		전라남도	3.80				51세이상	3.72		
	자치경찰 위계	자치위	4.31	5.646	.004 **	직급	경위이하	3.81	1.453	.235
		시/도경	3.80				경감/경정	3.96		
		일선경찰서	3.82				일반공무원	4.00		
③ 지자체/자치경찰 간 인사 교류	지역	광주광역시	3.35	4.963	.007 **	연령	40세이하	3.39	1.777	.170
		전라북도	3.38				41-50세	3.18		
		전라남도	3.05				51세이상	3.29		
	자치경찰 위계	자치위	4.02	13.452	.000 ***	직급	경위이하	3.27	4.941	.007 **
		시/도경	3.14				경감/경정	3.14		
		일선경찰서	3.23				일반공무원	3.71		

주: *(p < 0.05), **(p < 0.01), ***(p < 0.001)

“국가/자치경찰의 명확한 업무기준”에 대해서는 지역($F=3.164$, $p=.043$), 자치경찰 위계($F=5.646$, $p=.004$)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의 경우 전라북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자치경찰 위계에서는 자치경찰위원회가 높게 나타났으며, 직급에서는 경위이하가 낮게 나타났다. “지자체/자치경찰 간 인사교류”에 대해서는 지역($F=4.963$, $p=.007$), 자치경찰 위계($F=13.452$, $p=.000$), 직급($F=4.941$, $p=.007$)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의 경우 전라남도가 낮게 나타났으며, 자치경찰 위계에서는 자치경찰위원회가 높게 나타났으며, 직급에서는 일반공무원이 높게 나타났다(<표 4-46> 참조).

(3) 자치경찰제도 발전방향

집단유형별 자치경찰제 발전방향(조직 관점)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인력 증가 필요”에 대해서는 지역($F=11.656$, $p=.000$), 자치경찰 위계($F=35.567$, $p=.000$), 직급($F=13.689$, $p=.00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의 경우 전라남도가 낮게 나타났으며, 자치경찰 위계에서는 자치경찰위원회가 높게 나타났으며, 직급에서는 일반공무원이 높게 나타났다.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경찰활동 정보 및 자료 충분성”에 대해서는 지역($F=9.451$, $p=.000$), 자치경찰 위계($F=35.833$, $p=.000$), 직급($F=12.474$, $p=.00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지역의 경우 전라남도가 낮게 나타났으며, 자치경찰 위계에서는 자치경찰위원회가 높게 나타났으며, 직급에서는 일반공무원이 높게 나타났다. “자치경찰채용 방식 다양화 필요”에 대해서는 지역($F=9.149$, $p=.000$), 자치경찰 위계($F=12.071$, $p=.000$), 직급($F=7.278$,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의 경우 전라남도가 낮게 나타났으며, 자치경찰 위계에서는 자치경찰위원회가 높게 나타났으며, 직급에서는 일반공무원이 높게 나타났다. “자치경찰공무원 후생복지 강화 필요”에 대해서는 지역($F=18.530$, $p=.000$), 자치경찰 위계($F=5.702$, $p=.004$), 직급($F=3.271$, $p=.039$)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의 경우 전라남도가 낮게 나타났으며, 자치경찰 위계에서는 자치경찰위원회가 높게 나타났으며, 직급에서는 경위이하가 낮게 나타났다(<표 4-47> 참조). 이러한 통계분석 결과를 살펴볼 때,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인력 증가,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경찰활동 정보 및 자료 충분성, 자치경찰채용 방식 다양화, 자치경찰공무원 후생복지 강화 등 다양한 시책의 발굴을 통해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표 4-47> 집단유형별 자치경찰제도 발전방향(조직 관점) 차이 분석

구분	집단유형		평균	F	유의 확률	집단유형		평균	F	유의 확률
①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인력 증가 필요	지역	광주광역시	3.02	11.656	.000 ***	연령	40세이하	2.92	1.001	.368
		전라북도	2.92				41-50세	2.77		
		전라남도	2.48				51세이상	2.79		
	자치경찰 위계	자치위	4.00	35.567	.000 ***	직급	경위이하	2.76	13.689	.000 ***
		시/도경	2.58				경감/경정	2.70		
		일선경찰서	2.76				일반공무원	3.58		
②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경찰활동 정보 및 자료 충분성	지역	광주광역시	3.18	9.451	.000 ***	연령	40세이하	3.10	.534	.587
		전라북도	3.16				41-50세	3.00		
		전라남도	2.75				51세이상	3.07		
	자치경찰 위계	자치위	4.17	35.833	.000 ***	직급	경위이하	2.97	12.474	.000 ***
		시/도경	2.89				경감/경정	3.02		
		일선경찰서	2.96				일반공무원	3.73		
③ 자치경찰 채용 방식 다양화 필요	지역	광주광역시	3.12	9.149	.000 ***	연령	40세이하	2.97	.453	.636
		전라북도	3.14				41-50세	3.00		
		전라남도	2.70				51세이상	3.08		
	자치경찰 위계	자치위	3.67	12.071	.000 ***	직급	경위이하	2.93	7.278	.001 ***
		시/도경	2.79				경감/경정	3.05		
		일선경찰서	2.99				일반공무원	3.54		
④ 자치경찰공무원 후생복지 강화 필요	지역	광주광역시	3.71	18.530	.000 ***	연령	40세이하	3.58	.246	.782
		전라북도	3.84				41-50세	3.66		
		전라남도	3.21				51세이상	3.61		
	자치경찰 위계	자치위	4.10	5.702	.004 **	직급	경위이하	3.56	3.271	.039 *
		시/도경	3.55				경감/경정	3.77		
		일선경찰서	3.59				일반공무원	3.87		

주: *(p < 0.05), **(p < 0.01), ***(p < 0.001)

집단유형별 자치경찰제 발전방향(대외적 관계)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자치경찰위원회 실무협의회 운영 효과성”에 대해서는 지역(F=9.402, p=.000), 자치경찰위계(F=17.812, p=.000), 직급(F=10.346, p=.00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지역의 경우 전라남도가 낮았으며, 자치경찰 위계에서는 자치경찰위원회가 높게 나타났으며, 직급에서는 일반공무원이 높았다. “자치경찰 예산 사업까지 참여예산제 범위 확대”에 대해서는 지역(F=20.327, p=.000), 자치경찰 위계(F=4.688, p=.01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의 경우 전라남도가 낮게 나타났으며, 자치경찰 위계에서는 자치경찰위원회가 높게 나타났다(<표 4-48> 참조). 자치경찰위원회 실무협의회 운영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이 정립되어야 한다. 또한, 자치경찰 예산 사업까지 참여예산제 범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치경찰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재원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집단유형별 시도 자치경

찰위원회 중점 수행활동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서 교차분석을 수행한 결과 “자치경찰활동 지원 (예산/인사/감사 등)”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서는 사회적 약자보호활동으로 나타났다(<표 4-49>).

<표 4-48> 집단유형별 자치경찰제도 발전방향(대외적 관계) 차이분석

구분	집단유형		평균	F	유의 확률	집단유형		평균	F	유의 확률
① 자치경찰위원회 실무협의회 운영 효과성	지역	광주광역시	3.08	9.402	.000 ***	연령	40세이하	2.99	.296	.744
		전라북도	3.11				41-50세	3.01		
		전라남도	2.70				51세이상	2.93		
	자치경찰 위계	자치위	3.77	17.812	.000 ***	직급	경위이하	2.91	10.346	.000 ***
		시/도경	2.90				경감/경정	3.01		
		일선경찰서	2.91				일반공무원	3.58		
② 자치경찰 예산 사업 까지 참여 예산 제 범위 확대	지역	광주광역시	3.45	20.327	.000 ***	연령	40세이하	3.40	.461	.631
		전라북도	3.70				41-50세	3.40		
		전라남도	3.02				51세이상	3.50		
	자치경찰 위계	자치위	3.81	4.688	.010 **	직급	경위이하	3.39	1.166	.312
		시/도경	3.26				경감/경정	3.55		
		일선경찰서	3.43				일반공무원	3.52		

주: *(p < 0.05), **(p < 0.01), ***(p < 0.001)

<표 4-49> 집단유형별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중점 수행활동 차이 분석

구분		지역 내 생활안전 활동	지역 내 교통안전 활동 관련 시설 확충	사회적 약자 보호 활동	자치경찰 활동 지원 (예산/인사/감사 등)	끊임없는 특수수사책 개발	합계	χ^2 검정
지역	광주광역시	38 14.0	59 21.8	75 27.7	95 35.1	4 1.5	271 100.0	$\chi^2=16.955$ p=.075
	전라북도	72 21.6	55 16.5	84 25.2	114 34.2	8 2.4	333 100.0	
	전라남도	48 20.6	54 23.2	61 26.2	67 28.8	3 1.3	233 100.0	
자치경찰 위 계	자치경찰위 원회	20 21.7	20 21.7	23 25.0	24 26.1	5 5.4	92 100.0	$\chi^2=31.996$ p=.000***
	시/도경	32 19.4	39 23.6	49 29.7	42 25.5	3 1.8	165 100.0	
	일선경찰서	106 18.3	109 18.8	148 25.5	210 36.2	7 1.2	580 100.0	
연령	40세이하	51 21.3	44 18.4	56 23.4	85 35.6	3 1.3	239 100.0	$\chi^2=17.928$ p=.056
	41-50세	69 19.5	84 23.8	91 25.8	103 29.2	6 1.7	353 100.0	
	51세이상	36 15.1	40 16.8	71 29.8	86 36.1	5 2.1	238 100.0	
직급	경위이하	112 19.2	116 19.9	146 25.1	200 34.4	8 1.4	582 100.0	$\chi^2=15.881$ p=.103**
	경감/경정	28 16.6	39 23.1	51 30.2	49 29.0	2 1.2	169 100.0	
	일반공무원	17 21.5	12 15.2	20 25.3	26 32.9	4 5.1	79 100.0	

주: *(p < 0.05), **(p < 0.01), ***(p < 0.001)

2. 분석항목 간 상관성 분석

1) “자치경찰제도”와 “자치경찰 운영 및 조직·인사제도에 대한 인식”간 관계

자치경찰제도가 자치경찰 운영 및 조직·인사제도와 상관성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계수가 0.4이상인 경우를 살펴볼 경우, 자치경찰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중 대외적 관계와 치안서비스에서 자치경찰제도(자치경찰위원회 조직, 경찰공무원에 대한 인사권한) 및 사무(사무수준, 생활안전)와 정(+)의 상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치경찰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중 치안서비스의 경우 경찰조직에 대한 통계와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자치경찰 조직·인사제도 인식의 경우 자치경찰제도 및 사무와 상관관계가 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자치경찰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중 대외적 관계와 치안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경우 자치경찰제도와 사무(사무수준, 생활안전)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경향성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50> “자치경찰제도”와 “자치경찰 운영 및 조직·인사제도에 대한 인식”간 관계

구분			자치경찰 운영에 대한 전반적 인식			자치경찰 조직·인사제도 인식		
			조직관점	대외적 관계	치안 서비스	조직관점	대외적 관계	치안 서비스
자치경찰제도	자치경찰제도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213**	.474**	.503**	-.260**	-.237**	-.151**
		경찰공무원에 대한 인사권한	.114**	.438**	.472**	-.293**	-.253**	-.173**
		경찰조직에 대한 통제	.142**	.394**	.420**	-.223**	-.202**	-.114**
	사무	사무수준	.339**	.677**	.697**	-.371**	-.354**	-.231**
		생활안전	.235**	.410**	.421**	-.114**	-.092*	-.071
		교통	.222**	.351**	.352**	-.127**	-.081*	-.032
		약자보호	.238**	.297**	.292**	-.023	-.006	.058

주: *(p < 0.05), **(p < 0.01), ***(p < 0.001)

2) “성과 및 만족도”와 “자치경찰 운영 및 조직·인사제도에 대한 인식”간 관계

각 분석항목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 분석에 활용된 변수는 각 영역별로 구성된 분석항목의 평균값을 활용하였다. 자치경찰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자치경찰 조직·인사제도에 대한 인식에 따라 자치경찰 운영에 따른 성과와 만족도가 상관성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계수가 0.4 이상인 경우를 살펴볼 경우, 자치경찰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중 대외적 관계와 치안서비스에서 성과 및 만족도와 정(+)의 상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치경찰 조직·인사제도에 대한 인식의 경우 성과 및 만족도와의 상관성은 조직관점에서 부(-)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자치경찰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중 대외적 관계와 치안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경우 자치경찰제도의 운영 성과 및 만족도가 높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자치경찰 조직·인사제도에 대한 인식 중 조직관점의 경우 부정적인 인식이 강할수록 성과 및 만족도가 낮은 경향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1> “성과 및 만족도”와 “자치경찰 운영 및 조직·인사제도에 대한 인식”간 관계

구분		자치경찰 운영에 대한 전반적 인식			자치경찰 조직·인사제도 인식		
		조직관점	대외적 관계	치안 서비스	조직관점	대외적 관계	치안 서비스
성과 및 만족도	조직관점	.318**	.663**	.701**	-.408**	-.360**	-.243**
	대외적 관계	.304**	.681**	.700**	-.398**	-.348**	-.257**
	치안서비스	.323**	.686**	.734**	-.399**	-.353**	-.243**

주: *(p < 0.05), **(p < 0.01), ***(p < 0.001)

3) “자치경찰제도와 성과 및 만족”과 “자치경찰제도 발전방향”간 관계

장애요인은 자치경찰제도 운영에 따른 성과 및 만족도와 상관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치경찰제도와 상관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자치경찰제도의 발전을 위한 필요요소 중 조직관점, 대외적 관계의 경우 자치경찰제도와 상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과 및 만족도와도 상관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치경찰제도의 발전방향에 대한 인식과 성과 및 만족도, 자치경찰제도 중 사무의 경우 생활안전사무, 교통사무, 약자보호사무 제외하고 상관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52> “자치경찰제도 성과 및 만족”과 “자치경찰제도 발전방향”간 관계

구분			장애요인		필요요소		발전방향	
			조직관점	대외적 관계	조직관점	대외적 관계	조직관점	대외적 관계
자치경찰제도	자치경찰제도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154**	-.127**	.400**	.401**	.479**	.453**
		경찰공무원에 대한 인사권한	-.221**	-.219**	.451**	.312**	.497**	.425**
		경찰조직에 대한 통제	-.110**	-.133**	.474**	.406**	.512**	.501**
	사무	사무수준	-.253**	-.244**	.483**	.442**	.541**	.529**
		생활안전	.014	.056	.447**	.493**	.398**	.393**
		교통	.063	.076	.373**	.429**	.360**	.354**
		약자보호	.139**	.194**	.351**	.415**	.317**	.315**
성과 및 만족도	조직관점	-.307**	-.297**	.411**	.363**	.453**	.422**	
	대외적 관계	-.240**	-.247**	.455**	.444**	.488**	.467**	
	치안서비스	-.264**	-.247**	.473**	.455**	.495**	.476**	

주: *(p < 0.05), **(p < 0.01), ***(p < 0.001)

제5장 연구결과 요약 및 정책제안

제1절 연구결과 요약

1. 기초 분석결과 요약

본 연구에서 살펴본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일선 경찰공무원들의 인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직 관점에서 살펴볼 때, 본 연구지역의 많은 조사대상자들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권력기관화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또한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선호도도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전반적으로 자치경찰의 조직구성과 운영에 대해서 부정적 시각이 많았다. 이러한 부정적 인식이 지배적인 가장 큰 이유는 아직 제도 도입 초창기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많은 선행연구들은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경찰 권력의 분산,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향상, 경찰행정의 민주적 통제, 경찰의 투명성 강화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 일선 경찰공무원들은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이러한 기대효과를 체감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치안서비스와 관련하여 지역 토착비리 근절, 시민의 경찰신뢰, 국가경찰 서비스와의 차별화 등의 문제는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경찰에 요구되었던 사항들로 자치경찰제도가 도입된 이후 개선되었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분석결과 이 부분도 경찰공무원들의 인식에서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조직 관점에서 자치경찰제도의 성과와 만족도가 높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치경찰제 하에서 성과와 만족도가 기대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외적 관계 중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본 연구의 조사대상 지역의 일선 경찰공무원들은 조직 관점에서 제시된 자치경찰제 정착의 장애요인으로 “지방행정사무를 치안행정업무로 전가 가능성,” “재정적 여건 미흡,” “자치경찰위원회 전문성 부족,” “자치경찰위원회 권한 제한 및 역할 불분명,” “구성원의 인식부족,” 등을 꼽았다. 특히, 응답자들은 대외적 관계에서 제시된 모든 항목이 자치경찰제 정착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았다.

여섯째, 집단유형별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중점 수행활동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서 교차분석을 수행한 결과 “자치경찰활동 지원(예산/인사/감사 등)”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사회적 약자보호활동으로 나타났다.

2. 집단유형별 인식 특성 분석결과 요약

본 연구에서는 경찰행정의 관행과 치안서비스의 수준 차이가 존재할 것으로 판단하여, 소속 지역을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로 재분류하였으며, 자치경찰 위계는 경찰행정 관련 조직, 사무, 인력, 예산 등에 자치경찰 위계별 차이가 존재할 것으로 판단하여 자치경찰위원회, 시도 경찰청, 일선 경찰서로 재분류하였다. 이에 개인적 특성별 응답차이를 살펴보기 위해서 연령과 직급을 재분류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집단유형별 분석항목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교차분석, 일원배치 분산분석,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얻어진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새로운 권력 기관화에 대한 우려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상과 역할 등에 관해서는 자치경찰위원회에 소속되어 있거나 파견된 일반공무원들은 타 집단에 비해 덜 우려하고 우호적인 성향을 보였다. 그러나 대다수 경찰공무원들은 현재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강했으며,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새로운 권력기관화에 대한 우려가 높았다. 경찰권력 분산, 경찰의 정치적 중립 향상, 국가/자치경찰 간 원활한 업무협조, 경찰행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지역주민 간 의사소통 증진, 경찰의 투명성 강화 등과 관련한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 응답의 경향성은 부정적으로 나타났으나, 자치경찰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일반 공무원의 경우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경향성을 보였다. 또한, 지역사회 치안서비스 향상, 지역특색에 맞는 치안정책 제공, 지방행정과 연계된 종합서비스 제공 등 치안서비스와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경향이 강하였으나, 상대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참여 공무원은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경향을 보였다.

둘째, 자치경찰 조직·인사제도에 대한 인식을 조직 관점에서 살펴본 결과, 지휘 체계 중복 및 혼선, 승진/전보 등 인사 혼란, 부서 내 자치/국가 사무 혼재로 업무

혼선 등 치안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경찰공무원들은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제의 정착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경찰공무원과 달리 부정적인 시각이 다소 약했다. 국가/자치경찰 간 업무 혼선, 국가/자치경찰 간 협조 부족, 지방자치단체장의 개입 증가 등과 같은 대외적 관계에서 위협적인 요인에 대해서도 경찰공무원을 부정적인 인식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치경찰위원회는 부정적인 시각이 다소 약했다.

셋째, 자치경찰 성과와 만족도와 관련하여 조직 관점에서 살펴본 결과, 경찰공무원들은 성과와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자치경찰제도 정착의 장애요인으로서는 국가경찰신분으로 자치경찰사무 수행, 지방행정과 연계 미흡,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한계, 이전과 변화 없는 현장경찰의 가동시스템 등의 문제로 인해 대외적 관계의 형성에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경찰공무원들은 “지방행정사무를 치안행정업무로 전가 가능성”을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국가경찰신분으로 자치경찰사무 수행,” “재정적 여건 미흡,” “이전과 변화 없는 현장경찰의 가동시스템,” “지방행정과 연계 미흡” 등도 중요 장애요인으로 보았다.

다섯째, 자치경찰제 발전방향과 관련하여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인력 증가,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경찰활동 정보 및 자료 충분성, 자치경찰채용 방식 다양화, 자치경찰공무원 후생복지 강화 등 다양한 시책에 대한 긍정적인 경향성을 보였다.

여섯째,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대외적 관계와 치안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경우 자치경찰 운영 성과 및 만족도가 높은 경향성을 보였다. 하지만, 자치경찰 조직·인사제도 중 조직관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할 경우 성과 및 만족도가 낮은 경향성으로 대조를 보였다. 자치경찰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중 대외적 관계와 치안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경우 자치경찰제도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경향성을 보였으며, 자치경찰제도의 발전방향과 관련한 인식(조직관점, 대외적 관계)은 자치경찰제도 중 사무(생활안전사무, 교통사무, 약자보호사무 제외)와 성과 및 만족도에 대한 인식이 상관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2절 정책제안

1. 제도에 대한 정책제안

본 연구의 많은 응답자들은 전반적으로 자치경찰의 조직구성과 운영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며, 또한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선호도도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이러한 인식이 지배적인 것은 아직 자치경찰제도가 도입 초창기라는 것도 어느 정도 작용하고 있겠지만 일선 경찰관들이 자치경찰제를 바라보는 강한 부정적 인식의 탓일 수도 있다. 제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의 구축이 필요하다(Puttnam, 1984). 따라서 자치경찰제의 참여주체 간의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자치경찰 도입 초기 경찰 권력의 분산,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향상, 경찰행정의 민주적 통제, 경찰의 투명성 강화 등을 기대했으나, 실질적으로 일선 현장에서는 그 체감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제에 대한 적극적 홍보와 생활밀착형, 주민중심형 중요 시책 발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또한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적극적인 자세로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일선 경찰관들과 소통체계를 구축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받아드려야 한다. 치안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경찰상(像) 정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자치경찰업무에 종사하는 일선 경찰관 스스로 기존의 치안서비스 문제 해소에 더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치안서비스 시책을 발굴하여 시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2. 행위자들에 대한 정책제안

여전히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한 일선 경찰공무원들의 반응은 냉소적이고 부정적이다. 행위자들의 이러한 부정적 인식은 행위자 자체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제도의 문제이기도 하다. 행위자 내부에서도 인식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제의 정착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경찰공무원과 달리 부정적 인식이 다소 덜했다. 이러한 행위자들 간의 인식의 차이는 본 연구의 설문결과에서 여러 번 찾아볼 수 있었다. 따라서 주요 행위자들 간의 인식의 차이를 수정·조화할 수 있는 상호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국가/자치경찰 간 업무 혼선, 국가/자치경찰 간 협조 부족, 지방자치단체장의 개입 증가 등과 같은 대외적 관계의 위협적인 요인에 대해서도 경찰공무원들은 부정적인 인식이 강해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타 기관과 불합리한 관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치안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부조리한 문제로 인한 업무차질 등으로 치안행정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대외적 관계와 치안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경우 자치경찰 운영 성과와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본 연구 결과에서 나타났다. 반면에 자치경찰 조직·인사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할 경우, 성과 및 만족도는 낮게 나타났다. 역시 대외적 관계와 치안서비스에 대한 인식도 같은 연구결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치경찰제 하에서 성과와 만족도가 기대이하라는 점이다. 따라서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중심으로 성과와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직무몰입과 직무만족 방안을 발굴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외적 관계 중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현재의 지방자치제 하에서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이 정치적이고 중립적인 관점에서 유지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의 설문조사 대상지역에 근무하고 있는 많은 응답자들은 자치경찰 조직의 지휘체계 중복 및 혼선, 승진/전보 등 인사 혼란, 부서 내 자치/국가 사무 혼재 등으로 인한 업무혼선 등 치안행정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표출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적 수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3. 성과와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정책제안

자치경찰제도 도입 목적은 대국민 치안서비스 개선을 위한 것으로 국민들에게 현재보다 더 높은 수준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설문결과를 살펴보면 자치경찰제도의 성과와 만족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치경찰제 하에서 성과와 만족도가 기대 이하라는 것이다. 성과와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경찰공무원의 직무몰입과 직무만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모색과 별도로 인사상의 불이익 해소, 복리후생의 향상, 직무몰입이 가능한 자율적

인 근무환경의 조성 등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과도한 지방자치단체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외부로부터의 정치적 영향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세심한 관리도 필요하다.

4. 자치경찰제 발전방향에 대한 정책제언

본 연구의 조사대상 지역의 경찰공무원들은 조직 관점에서 제시된 자치경찰제 정착의 장애요인들 모두가 현재 작동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따라서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조직 관점에서 제시된 장애요인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시행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응답자들은 대외적 관계에서 제시된 모든 항목이 자치경찰제 정착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향후 지방자치단체, 국가경찰, 연계협력기관 등과의 협력적인 관계형성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대외적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자치경찰제의 도입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내적 기대에 부응하고,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예산상의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 자치경찰 예산사업까지 참여예산제 범위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치경찰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재원확보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인력 증가,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경찰활동 정보 및 자료 충분성, 자치경찰채용 방식 다양화, 자치경찰 공무원 후생복지 강화 등 다양한 시책 마련도 필요하다.

제3절 연구한계

본 연구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자치경찰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을 도출하고자 자치경찰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찰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통해 획득된 자료를 토대로 진행되었다. 바로 여기에 본 연구의 중요한 한계가 존재한다. 즉 본 논문의 가장 큰 한계는 연구에 사용된 모든 자료(data)들이 설문지 조사에 대한 응답자들 개인의 신념이나 지각, 인식 등을 바탕으로 했다는 것이다. 즉 응답자들이 자치경찰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정확하게 기술하였다고 확인할 수가 없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우리나라 최초로 자치경찰제에 대한 인식도를 경험적 연구를 통해 그 결과를 정리·소개했다는 측면에서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자치경찰제의 집행단계의 실무자들인 많은 경찰관과 행정공무원들이 본 연구 설문에 성실히 응답해 주어 현장감 있는 문제점과 현실적인 정책제언을 마련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자료를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과거 이순신 장군은 당시에 벼슬하는 자가 당연히 가진 사상이었던 충(忠)에 대하여 임금을 향한 것이 아닌 백성을 향한 것(愛民)이라고 하였다. 경찰도 자치경찰제의 정착을 위한 논의와 시행을 하면서 제도 중심에는 자치와 분권이 있음을 고려하여 일개 조직이나 개인의 권한 확대 및 유지에 향하지 않고, 국민들에게 향한다면 올바르고 빠른 시일에 자치경찰제도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

□ 참고문헌

1. 국내 문헌

- 강인호 외. (2021). 「비수도권 郡지역의 축소와 실태에 관한 실증적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 자료집.
- 강인호. (2019). “자치경찰제 도입의 기본구상”. 「경기도형 자치경찰 도입방향 토론회 자료집」.
- 강주영. (2013).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의 공법적 검토: 제주특별자치경찰을 중심으로”. 『동아법학』, 60: 29-63.
- 경찰대학(2001). 『경찰학개론』, 경찰대학.
- 김경희(2013). 『의료관광정책의 제도적 변화 분석 : 점진적 제도변화 모형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고문현. (2005). “자치경찰제의 도입방향”. 「공법연구」, 33(5): 431-477.
- 고승희·조성호(2020). ”경찰법 개정에 따른 지방정부의 자치경찰제도 도입과 운영 활성화 방안“, 『한국민간경비학회보』 제19권 제5호.
- 고현환. (2009).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상 자치경찰 규정의 법적 검토”. 「공법학연구」, 10(1): 319-342.
- 곽현근. (2015). “주민자치 개념화를 통한 모형 설계와 제도화 방향”. 「한국행정학보」, 49(3): 279-302.
- _____. (2017), “지방자치 원리로서의 주민자치 재해석을 통한 생활자치 개념화와 제도모형 구성”. 「현대사회와 행정」, 27(2): 1-29.
- 김경희(2013). 『의료관광정책의 제도적 변화 분석 : 점진적 제도변화 모형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면기. (2017). “미국연방정부가 지역경찰에 미치는 영향력의 실제와 그 시사점: 최근의 사례를 중심으로”. 「경찰학연구」, 17(2): 139-164.
- 김민영 외. (2017). ‘전국 범죄피해조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성호. (2012). “국가경찰 재구조화에 관한 실증연구: 자치경찰제 도입을 중심으로”. 『GRI 연구논총』, 14(2): 111-137.
- 김수원. (2002). “한국 자치경찰에 대한 인식과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정치외교사논총』, 24(1): 225-256.
- 김순은. (2018).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안 발표 및 정책토론회 발표자료』.
- 김영식·심재승·홍의표·유주성·최관. (2017). “지역맞춤형 자치경찰 기본운영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 김일봉·백석기. (2011). “제주자치경찰제의 현 실태와 개선점에 대한 본질적 연구”. 『한국정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 김원중(2021) ”소위 일원적 자치경찰제 모델에 대한 자치성 검토“, 『일원적 자치경찰제 모델 검토 및 제주자치경찰 경험의 시사점 세미나』, 서울연구원.
- 김윤권(2005). ”제도와 정책연구: 제도 변화의 통합적 접근“, 『사회복지정책』, 36(3), 1-29.
- 김학경·이성기(2012). ”영국지방자치경찰의 새로운 패러다임 : 2011 경찰개혁 및 사회책임법과 국립범죄청을 중심으로“, 『경찰학연구』 VOL. 12 No 1.
- 김충남. (2001). “자치경찰제의 도입과 경찰의 수사권독립”. 『한국경찰학회보』, 30: 23-37.
- 김학경·이성기. (2012). “영국지방자치경찰의 새로운 패러다임: 2011 경찰개혁 및 사회책임법과 국립범죄청을 중심으로”. 『경찰학연구』, 12(1): 147-174.
- 김현소. (1998). “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논집』, 제10권 제2호, 한국정부학회
- 김홍주·곽현근·임승빈. (2018). “세종형 풀뿌리 주민자치 제도화 방안”. 『세종특별자치시 연구용역보고서』
- 남재성. (2010). “자치경찰제에 대한 일선 경찰관들의 인식태도 연구”.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 _____ (2021). ”바람직한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입법적 보완 방향“, 『한국경찰연구』 제20권 제1호.
- 박준휘 외. (2020). 『한국형 자치경찰제 시행 및 정착에 관한 연구(I,II)』.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박재희·전대욱·최인수(2021). 『성공적인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전략과 과제』, 연구보고서 2021-03,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송영지. (2014). “자치경찰제의 문제점: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례를 중심으로”. 「강원법학」, 43: 339-370.
- 손정수(2021). 『군 정부기구의 경로진화 분석 : 역사적 신제도주의 관점에서 기무사령부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신재현·김상운. (2017). “범죄예방진단팀(CPO)을 활용한 지방자치단체 CPTED 전략 개선방안.” 「한국경찰연구」, 16(3): 179-200.
- 신원부(2021). “자치경찰제 일원화 모델 실행에 따른 사전 진단과 평가 : 3대방향, 7대 과제를 중심으로,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과제와 방향 정책토론회 자료집』.
- 신현기. (2010a). “자치경찰제 도입의 현황과 과제”. 「한국행정학회 Conference자료」. 1-23.
- _____ (2017). “서울시 자치경찰제도 도입을 위한 원칙과 방향”. 「2017 분권포럼: 자치경찰제 추진을 위한 쟁점과 과제 세미나 발표자료」.
- _____ (2021). “초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문제점과 향후 발전 방향”, 『자치경찰연구』 제 14권 제2호.
- _____ (2022). “문재인 정부의 자치경찰제 도입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향후 발전 영향”, 『한국자치경찰논총』 제1권 제1호.
- 심익섭. (1999). “한국과 독일의 자치경찰제도에 관한 연구”. 「한독사회과학논총」, 9: 151-170.
- 안성호. (2018). “왜 분권국가인가”. 서울: 박영사.
- 안성훈(2019). 『주요 국가 자치경찰제 운영현황 비교분석 : 견제·통제 방안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원.
- 안영진. (2014). “자치경찰제 도입논의의 재고”. 「공법학연구」, 15(1): 357-382.
- 안영훈·강기홍. (2008). “자치경찰제 확대 및 강화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 안영훈·임동균·신유호. (2007). “자치경찰 표준운영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행정자치부 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 연구용역보고서」.

- 양영철. (2008). 「자치경찰론」, 서울: 대명문화사.
- _____ (2013). “박근혜 정부의 자치경찰 도입모델에 관한 연구: 제주자치경찰 운영 쟁점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5(2): 109-132.
- _____ (2020). “바람직한 자치경찰 조직운영 방안에 관한 소고”, 『서울시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성공을 위한 과제와 제언 토론회 자료집』, 서울연구원.
- _____ (2021). 「新지방자치경찰론」, 온누리디앤피
- 유영현. (2008), “합리적인 자치경찰법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31: 475-495.
- 육동한·박상헌·김주현. (2017). “최근 자치경찰제 논의와 합리적 도입방안”. 「강원연구원 정책메모」 59.
- 이상열·한형서·김은정·박영만·신동선. (2015). “서울시민 안전확보를 위한 광역단위자치경찰제 도입방안”. 「서울특별시의회 연구용역보고서」.
- 이상훈(2022). “자치경찰제의 발전을 위한 입법적 개선 과제 : 경찰권의 효율적 분산과 통제를 중심으로”, 『한국경찰학회보』 vol.24 no.2 통권 93호.
- 이승준. (2015). “박근혜 정부의 자치경찰 도입방안 검토: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기초로”. 「강원법학」. 44: 503-534.
- 이재란·신연수·조계표(2021). “자치경찰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법적·제도적 연구”, 『토지공법연구』 제96집.
- 이현우·이미애. (2010). “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정책연구」, 10(2): 247-272.
- 이환범·이지영. (2015). “우리나라 자치경찰 사무배분 및 경찰청 조직개편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조직학회보」, 12(1): 1-23.
- 임병연. (2003). “한국 자치경찰제 도입의 쟁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10(1): 134-161.
- 임승빈·손재영·이환범·원소연. (2014).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 연구보고서」.
- 임창호. (2018). “세종시 자치경찰 모델의 도입방안”.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세종, 학술토론회 발표자료」.

- 조성호 외. (2018). “자치경찰제 시행 대비 경기도 도입방안 연구”. 경기도연구원.
- _____ 외. (2020). “경기도형 자치경찰제의 도입 기본구상 연구”. 경기도연구원.
- _____ 외. (2020). “자치경찰 분야의 치안 행정수요 분석에 관한 시론적 연구”. 충북연구원.
- _____ 외. (2021). 「경기도 자치경찰제의 비전과 전략」. 경기도연구원.
- 정웅. (2011). “협력치안의 제도화와 민경 협력의 과제”. 「치안정책연구」, 25(2): 55-85.
- 최길수(2019). 『대전광역시 자치경찰제 도입 및 시행 방안에 관한 연구』, 정책연구 2019-14, 대전세종연구원.
- 최종술. (1999). “바람직한 자치경찰제의 모형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33(2): 141-161.
- _____ (2001). “자치경찰제에 대한 논의의 중단과 원인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보 제12호, 한국공안행정학회.
- _____ (2002). “우리나라 자치경찰제 도입의 갈등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학술 발표논문집」.
- _____ (2004). “한국적 자치경찰제도 방안 모색”. 「한국행정학회 학술대회발표논문집」.
- _____ (2006). “자치경찰제 관련 법(안)의 비교연구”.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 _____ (2010). “역대정부의 자치경찰제 도입방안과 비교연구”. 「지방정부연구」, 13(4): 61-81.
- 최준호. (2008). “자치경찰 기능의 효율성 제고방안”. 「한국정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 최천근. (2014).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의 합리적 사무배분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6(2): 275-296.
- 한상암·조호대. (2007).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의 운영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 종합학술대회논문집」.
- 허경미. (2003a). “경찰청 자치경찰제 안의 문제점 및 대안”,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16권
- _____ (2003b). “지방자치경찰제도의 도입모형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정부학회 2003년도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_____ (2021). “지방자치행정 관점의 일원형 자치경찰제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한국공안행정학회보』, 한국공안행정학회.

- 홍의표 외. (2012). “한국적 자치경찰제 실시방안 연구”. 근린자치분과위원회
- 황문규. (2017a). “경찰을 경찰답게 만들기 위한 경찰조직 재설계”. 『법학논총』, 39: 293-324.
- _____ (2017b). “문재인 정부의 광역단위 자치경찰에 대한 고찰”.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9(4): 23-54.
- _____ (2017c). “이른바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2017 분권포럼: 자치경찰제추진을 위한 쟁점과 과제 세미나 발표자료』.
- _____ (2018a). “자치경찰제 도입의 방향과 과제”. 『자치경찰제 도입 토론회 발표자료』.
- _____ (2018b). “자치경찰제 특위안의 의의와 발전방향”.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안 발표 및 정책토론회 발표자료』.
- _____ (2019). “광역단위 자치경찰제의 기대역할과 한계 및 과제”, 『한국공안행정학회보』
- _____ (2020a). “소위 일원적 자치경찰제 모델에서의 분권성 검토”, 『서울연구원·한국경찰학회 공동세미나자료집』
- _____ (2020b). “자치경찰제 도입 모델(정부안)의 지방분권성 검토”, 『한국지방자치학회 2020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 _____ (2020c). “자치경찰제의 도입 추진상의 문제점과 대응전략”, 『경찰법연구』, 한국경찰법학회.
- _____ (2020d). “(국가경찰 중심의) 일원적 자치경찰제에 관한 고찰 : 김영배 의원안의 경찰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한국경찰연구』 제19권 제4호.
- 홍성삼(2021). “자치경찰 법제도의 문제점 및 시사점 연구”, 『가천법학』 제14권 제3호.
- 경찰개혁위원회 권고안. (2017). “경찰개혁위원회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권고안 발표: 시도 단위 자치경찰제 세부도입방안 제시”. 『경찰청 브리핑』, 2017년 11월 8일자.
-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2018). “문재인정부 자치경찰제 도입초안 공개”: 자치분권위원회 정책토론회 개최. 『국민의견수렴 나서,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보도자료』, 2018년 11월 13일자.
- 조선PUB. (2018). “지방자치 경찰의 출발점이 파출소와 주민센터 통·폐합에서 시작돼야 하는 이유”. 『조선pub』, 2018년 2월 1일자

프레스존. (2020). “전국지방분권협의회 공동성명, 자치경찰제 일원화는 자치분권 역행 반발”,
2020년 11월 26일자

2. 국외 문헌

Cobb. Roger W. and Marc H. Elder.(1983). *Participation in American Politics: The Dynamics of Agenda-Building*, 2nd ed.」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Henstra. Daniel, “Evaluating Local Government Emergency Management Programs: What Framework Should Public Managers Adopt?”.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March/April: 243.

Kim. Sangmook and W. Vandenabeele, “A Strategy for Building Public Service Motivation Research Internationally.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71(5): 703.

Smith et. Kemin B.(2008). *Governing*(3rd edition). CQ Press.

Stenberg. Carl W. “An ACIR Perspective on Intergovernmental Institutional Development”.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March/April: 169.

Wallce. Harvey, Cliff. Roverson, Craig. Stechler.(1995). *Fundamentals of Public Administration*. N.J: Prentice Hall.

<부록>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인식도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2021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자치경찰제도와 관련해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들을 자치경찰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찰관 및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행정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인식도를 살펴보기 위한 것입니다. 귀하의 응답 내용은 제 박사학위논문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거 본 조사에서 개인정보에 속하는 사항은 엄격히 보호됩니다. 응답해 주신 내용과 분석결과는 연구목적 이외에는 결코 사용되지 않습니다. 성실히 응답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2022년 4월

설문조사자 : 장명본(조선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과정)

I. 현행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전반적 인식

1.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자치경찰제도에 대하여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응답에 표시해 주십시오.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1	지역사회에서 경찰의 치안서비스를 향상시킬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2	지역적 특색에 맞는 치안정책과 서비스 제공이 촉진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3	지역 토착비리 근절에 효과적일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4	경찰의 권력이 분산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5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새로운 권력기관이 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6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향상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7	자치경찰에 대한 지자체의 재정지원이 별도로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1-8	지방행정과 연계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9	국가/자치경찰 간 원활한 업무상 협조가 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10	경찰행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강화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1	전반적으로 시민의 경찰신뢰가 향상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2	자치경찰사무는 기존 국가경찰서비스와 차별화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3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경찰관들의 선호도가 높아질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14	경찰과 지역주민 간의 협업 및 의사소통이 더욱 증진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15	자치경찰제도 도입으로 경찰의 투명성이 강화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우려사항에 대하여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응답에 √ 표시해 주십시오.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1	국가 - 자치경찰 간 업무상 혼선 야기	①	②	③	④	⑤
2-2	국가 - 자치경찰 간 협조 부족 또는 상호 사무의 기피	①	②	③	④	⑤
2-3	지휘체계 중복 및 혼선으로 인한 관서장의 업무 가중	①	②	③	④	⑤
2-4	지자체 또는 시도지사의 자치경찰에 대한 개입 증가	①	②	③	④	⑤
2-5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개입 증가	①	②	③	④	⑤
2-6	자치단체 간 경찰서비스의 불균형 야기	①	②	③	④	⑤
2-7	국가경찰청장의 자치경찰에 대한 개입	①	②	③	④	⑤
2-8	승진, 전보 등 인사상 혼란 야기	①	②	③	④	⑤
2-9	같은 부서/과 안에서도 자치경찰 사무와 국가경찰 사무가 분리되어 있어 현장에서의 업무 혼선	①	②	③	④	⑤
2-10	직원들의 자치사무 기피	①	②	③	④	⑤
2-11	승진, 전보 등과 관련하여 직원들의 출서 기 현상 야기	①	②	③	④	⑤
2-12	지방자치단체의 경찰에 대한 번거로운 업무 이관	①	②	③	④	⑤

3 귀하가 소속되어 있는 지역의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제1호 시책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 ① 전혀 모른다 ② 잘 모른다 ③ 관심 없다 ④ 어느 정도 알고 있다 ⑤ 아주 잘 알고 있다

3-1 귀하께서 지역의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제1호 시책을 알고 계신다면 이 시책이 지역의 자치경찰치안실정에 적합한 시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아니다 ② 아니다 ③ 그저그런 시책이다 ④ 적합한 편이다 ⑤ 아주 적합한 시책이다

3-2 귀하께서는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제1호 시책 추진진행경과를 알고 계신가요?

- ① 전혀 모른다 ② 모른다 ③ 관심 없다 ④ 어느정도 알고 있다 ⑤ 아주 잘 알고 있다

4. 귀하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우선 시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II. 자치경찰제의 성과와 만족도 조사(평가)

5. 다음은 자치경찰제의 성과와 만족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아래항목에 √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목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보통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5-1) 치안서비스의 종합성 향상	①	②	③	④	⑤
5-2) 치안서비스의 능률성 제고	①	②	③	④	⑤
5-3) 치안서비스의 민주성 강화	①	②	③	④	⑤
5-4) 치안서비스의 정치적 중립성 향상	①	②	③	④	⑤
5-5) 치안서비스의 책임성 향상	①	②	③	④	⑤
5-6) 치안서비스의 신속성 향상	①	②	③	④	⑤
5-7) 중대/긴급사건 발생 시 대응역량 강화	①	②	③	④	⑤
5-8) 시민과의 유대 강화	①	②	③	④	⑤
5-9) 지역주민의 자치경찰제에 대한 치안만족도 향상(이전과 비교해)	①	②	③	④	⑤
5-10) 자치경찰제 업무수행에 만족	①	②	③	④	⑤
5-11) 종합적 성과 높다고 인식함	①	②	③	④	⑤

6. 다음은 자치경찰제의 사무를 중심으로 한 질문입니다. 아래항목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목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6-1)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치안업무 가능	①	②	③	④	⑤
6-2) 자치경찰사무 범위의 적정성	①	②	③	④	⑤
6-3) 지방행정업무의 전가 가능성	①	②	③	④	⑤
6-4)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효과적 연계	①	②	③	④	⑤
6-5) 자치경찰과 지방행정의 효과적 연계	①	②	③	④	⑤

7. 다음은 자치경찰사무의 중요도에 대한 인식을 묻는 질문입니다. 아래항목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목	매우중요하지않음	중요하지않음	보통	중요함	매우중요함
7-1) 지역 내 생활안전 활동사무(생활안전)	①	②	③	④	⑤
7-2) 지역 내 교통활동 사무(교통)	①	②	③	④	⑤
7-3) 지역 내 다중운집행사 관련 혼잡질서유지, 안전 관리(경비)	①	②	③	④	⑤
7-4) 여성, 청소년 등 약자보호 활동	①	②	③	④	⑤

8. 위 7번에서 제시된 표를 참고해 귀하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무의 우선순위를 1개 골라주세요()

9. 자치경찰사무(세부사무) 항목별 중요도 인식을 묻는 질문입니다. 아래의 항목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목		매우중요하지않음	중요하지않음	보통	중요함	매우중요함
생활 안전	9-1) 생활안전 순찰 및 시설운영	①	②	③	④	⑤
	9-2) 주민참여 방법활동 지원 및 지도	①	②	③	④	⑤
	9-3) 안전사고 및 재난사고 긴급구조	①	②	③	④	⑤
	9-4) 사회질서유지 및 위반행위 지도단속	①	②	③	④	⑤

	9-5) 기타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사무	①	②	③	④	⑤
교통	9-6) 교통법규 위반 지도단속	①	②	③	④	⑤
	9-7) 교통안전시설, 무인단속 장비 심의 관리	①	②	③	④	⑤
	9-8) 교통안전교육 및 홍보	①	②	③	④	⑤
	9-9) 주민참여 지역교통활동의 지원, 지도	①	②	③	④	⑤
	9-10) 통행허가, 어린이 통학버스, 긴급 자동차등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무	①	②	③	④	⑤
여성 청소 년	9-11) 아동, 청소년, 노인 여성 장애인 등 보호 및 가정, 학교, 성폭력 예방활동	①	②	③	④	⑤

10. 다음은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조직)과 관련한 인식(평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래 항목에 √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목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0-1)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및 방식의 중립성	①	②	③	④	⑤
10-2) 자치경찰위원회 구성다양성 (성별, 연령 등)	①	②	③	④	⑤
10-3) 사회적 약자 대표성	①	②	③	④	⑤
10-4) 자치경찰 정책 수립 및 평가, 인사, 감사, 국가경찰과 협의 및 조정 등의 전문성	①	②	③	④	⑤

11. 다음은 성공적 자치경찰제 정착과 관련한 장애요인들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래 항목에 √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목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 다	매우 그렇다
11-1) 지방행정 사무를 치안행정업무로 전가할 가능성	①	②	③	④	⑤
11-2) 국가경찰신분으로 자치경찰사무 수행 (모호한 업무경계)	①	②	③	④	⑤
11-3) 지방행정과 연계 미흡	①	②	③	④	⑤
11-4) 재정적 여건의 미흡	①	②	③	④	⑤
11-5)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한계	①	②	③	④	⑤
11-6) 자치경찰위원회의 전문성 부족	①	②	③	④	⑤
11-7) 자치경찰위원회의 권한 제한 및 역할 불분명	①	②	③	④	⑤

11-8) 이전과 변화 없는 현장 경찰의 가동 시스템	①	②	③	④	⑤
11-9) 구성원의 인식부족	①	②	③	④	⑤
11-10) 기타 ()	①	②	③	④	⑤

12. 위 11번에서 제시된 표를 참고하여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장애요인의 우선순위 2개만 기술(번호)해 주십시오 ()

13. 다음은 자치경찰의 인사에 대한 인식(평가) 질문입니다. 아래항목에 √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목	매우 필요 하지않음	필요하지 않음	보통	필요함	매우 필요함
13-1) 시·도지사의 경찰공무원 인사권 강화	①	②	③	④	⑤
13-2)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경찰공무원 인사권 강화	①	②	③	④	⑤
13-3) 지방의회의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통제권 강화	①	②	③	④	⑤
13-4) 시민에 의한 통제장치 마련	①	②	③	④	⑤

14. 기타사항과 관련한 질문들입니다. 아래항목에 √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목	매우 필요 하지않음	필요하지 않음	보통	필요함	매우 필요함
14-1)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인력 증가 필요	①	②	③	④	⑤
14-2)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의 경찰활동 정보 및 자료 충분성	①	②	③	④	⑤
14-3) 자치경찰위원회 실무협의회 운영 효과성	①	②	③	④	⑤
14-4) 자치경찰채용 방식의 다양화 필요	①	②	③	④	⑤
14-5) 자치경찰공무원의 후생복지 강화 필요	①	②	③	④	⑤
14-6) 자치경찰 예산사업까지 참여 예산제 범위확대	①	②	③	④	⑤

III. 개선 방안 관련

15. 다음은 자치경찰제의 정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항목입니다. 아래항목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 목	전혀 필요치 않다	필요치 않다	보통 이다	필요 하다	매우 필요 하다
15-1	자치경찰에 대한 홍보	①	②	③	④	⑤
15-2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구성에 자치경찰 관련 다양한 직업군, 성별 균형 임명	①	②	③	④	⑤
15-3	국가/자치경찰에 대한 중복사무 조정 매뉴얼 등 명확한 업무 기준 (사무)	①	②	③	④	⑤
15-4	자치경찰에 대한 인사, 평가 및 지휘· 감독 관계의 재정립(인사)	①	②	③	④	⑤
15-5	지자체/자치경찰 간 인사교류(인사)	①	②	③	④	⑤
15-6	자치경찰사무 관련 체계화된 교육과 정 및 교육기관 신설(인사)	①	②	③	④	⑤
15-7	기초자치단체(경찰서)에서도 자치경 찰 도입(제도)	①	②	③	④	⑤
15-8	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예산은 지자체 에서 수립(재정)	①	②	③	④	⑤
15-9	자치경찰은 지방직 공무원으로 전환 (인사)	①	②	③	④	⑤

16. 귀하께서 근무하시는 지역에서 범죄와 사고 예방을 위해 가장 효과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2가지 선택 가능)

- ① 순찰차, 파출소, 지구대 등 경찰관 예방순찰활동
- ② CCTV, 가로등, 안심비상벨 등 (사건사고) 범죄예방 안전장치 설치
- ③ 안전한 교통신호와 명확한 도로교통 표지판
- ④ 자치경찰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인력 추가 확충
- ⑤ 끊임없는 특수시책 개발

17. 귀하께서 근무하시는 지역에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피해자에 대해 행정기관과 협력해서 자치경찰이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

- ② 피해자에 대한 심리상담, 가해자와의 격리 등 빠른 보호조치와 후속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 ③ 행정기관과 협력해서 범죄 발생환경을 적극 개선해야 한다.
- ④ 자치경찰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인력을 더 확충해야 한다.

18. 귀하께서는 지역사회안전, 범죄예방 등을 위해서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중점적으로 해야 할 자치경찰 활동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가지 선택 가능)

- ① 지역 내 생활안전 활동
- ② 지역 내 교통안전활동을 위한 시설 확충
- ③ 가정폭력, 학교폭력 피해아동, 여성 지원 등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
- ④ 효과적인 자치경찰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 인사, 감사·평가 등 관리·지원
- ⑤ 끊임없는 특수시책 개발

19. 귀하께서는 지역 치안안전을 위하여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효과적이고 책임 있는 시책 추진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가지 선택 가능)

- ① 자치경찰위원회의 독립적 자치경찰 재정 확보
- ② 효과적인 자치경찰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 인사, 감사·평가 등 관리·지원
- ③ 자치경찰위원회의 자치경찰업무 경찰관에 대한 승진, 보직 인사권 확보
- ④ 시도경찰청의 자치경찰사무 관련 정례적인 자치경찰위원회 보고
- ⑤ 자치단체장으로부터 정치적 독립 확보

20. 자치경찰제가 제대로 정착하려면 무엇이 우선적으로 필요한지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이유와 필요성 제시).

IV.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21. 귀하의 현재 직업(신분)은 무엇입니까?

- ① 시·도 경찰청 경찰관 ② 자치단체 공무원

▶ 자치단체 공무원의 경우 25번 설문으로 이동

22. 귀하께서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는 어떤 것입니까?

- ① 시·도 경찰청 본청 자치경찰사무
 ② 일선 경찰서 자치경찰사무
 ③ 경찰서 소속 지구대, 파출소 현장 업무
 ④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사무 업무

23. 귀하께서는 현재 어디서 근무하십니까?

- ① 시·도 경찰청 본청
 ② 일선경찰서 본서
 ③ 경찰서 소속 지구대, 파출소
 ④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24. 귀하께서 그 동안 가장 오랜 기간 수행했던 업무는 무엇입니까?

- ① 생활안전활동 ② 교통안전활동 ③ 다중행사 및 혼잡질서유지 등 경비
 ④ 여성,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보호활동 ⑤ 기타 업무 ()

25. 귀하의 근무 경력은?

- ① 5년 이하 ② 10년 이하 ③ 15년 이하 ④ 20년 이하 ⑤ 25년 이하 ⑥ 30년 이하

26. 귀하의 연령은?

- ① 30살 이하 ② 31~35살 ③ 36~40살 ④ 41~45살 ⑤ 46~50살 ⑥ 51~55살 ⑦ 56살 이상

27. 귀하의 학력은?

- ① 고졸 ② 전문대졸 ③ 대졸 ④ 대학원졸

28. 귀하의 직급은?

- ① 경위 이하 ② 경감 ③ 경정 ④ 총경 ⑤ 사무관 이하 ⑥ 서기관 이상

성실한 응답에 깊이 감사드립니다.